

**2022년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

장안대학교

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1.1 대학발전계획과 교육품질

1.1.1 대학발전계획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공표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대학사명과 교육목표 공표 확인 b) 대학사명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확인 c)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장안대학교 헌장, 제1조(건학이념), 제2조(교육목표) 2. 장안대학교 학칙, 제2조(교육목표) 3.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JUMP PLUS 2025 대내외 공표자료(홈페이지, 비전선포식, 대학요람 등) 4. 대학요람(2021, 2022학년도) 5.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심의 관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17.6.20.) 6.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의결 관련 이사회 회의록(2017.6.22.) 7. 장안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JUMP PLUS 2025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대학사명과 교육목표 공표 - (설립목적)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을 건학이념으로 하고 있음 (입증자료 1) - (대학사명) 대학의 사명인 ‘창의적 전문직업인 양성’은 장안대학교 헌장 전문 및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Vision House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공표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 (교육목표) 1979년 설립된 장안대학교는 자아실현의 교훈 아래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의 소양과 유능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목표로 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 대학의 설립목적 및 건학이념과 연계된 교육목표를 장안대학교 헌장 제1조(건학이념), 제2조(교육목표), 학칙 제2조(교육목표) 등 대학 제규정에 반영하여 교내 구성원에게 공표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는 대학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표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대학요람 등을 통해서도 명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3, 4) b) 대학사명과 교육목표의 연계성 - 대학의 사명인 ‘창의적 전문직업인 양성’과 교육목표인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 양성과 유능한 전문직업인 양성’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서로 연계되어 있음 (입증자료 1, 2) c)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는 1979년 대학 설립 이후 변경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확인 b) 대학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확인 c) 대학발전계획 공표 및 추진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관련 기안 2.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JUMP PLUS 2025 통권 3.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심의 관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17.6.20.) 4.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의결 관련 이사회 회의록(2017.6.22.) 5.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자료 6.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JUMP PLUS 2025 대내외 공표자료(홈페이지, 비전선포식, 대학요람 등) 7.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서(2021, 2022학년도) 8.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JUMP PLUS 2025는 기획실(현 기획처)에서 주관해서 수립했으며,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연차별 추진내용, 재정운영계획, 성과지표, 달성수준 등을 포함하여 수립함 (입증자료 1, 2) -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수립한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JUMP PLUS 2025는 2017년 6월 20일 대학평의원회, 2017년 6월 22일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2017년 하반기부터 실행 중에 있음 (입증자료 3, 4) b) 대학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확인 - 중장기발전계획 JUMP PLUS 2025 수립 시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반영함 (입증자료 5) - 또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교직원 워크숍, 학생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입증자료 5) c) 대학발전계획 공표 및 추진실적 - 중장기 발전계획 JUMP PLUS 2025는 비전선포식, 학칙, 대학요람, 대학홈페이지, 교내 게시판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입증자료 6) - 중장기 발전계획 JUMP PLUS 2025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과제를 부서 및 학과 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전략과제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전략과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음 (입증자료 7) - 또한,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은 매 학년도 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항, 예산집행 실적, 성과목표 달성 현황, 환류 사항 등을 도출하고 이를 차년도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8) |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은 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대학발전계획 평가체제 확인 b) 대학발전계획 평가내용 확인 c) 대학발전계획 평가결과 반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규정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대학의 교육목표) 2. 특성화 및 발전계획 관리 규정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특성화 및 발전계획의 평가) 3. 자체평가규정 제3조(평가대상), 제4조(평가영역),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4.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5.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2021, 2022학년도) 6. 중장기발전계획 재수립 승인 제청 및 학교법인 승인 문서 6. RENEWAL 2030 수립 관련 문서(TFT,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회의록 등) 7. RENEWAL 2030 보고서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대학발전계획 평가체제 - 우리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규정 및 특성화 및 발전계획 관리 규정, 자체평가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이 반영된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 자체성과평가를 기획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발전계획 개선활동을 실시함 (입증자료 1, 2, 3)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는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의 성과달성 여부 및 환류사항을 심의하여 차년도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2, 3, 4, 5) b) 대학발전계획 평가내용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이 반영된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은 매년 학년도 시작 전 예산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학년도 종료 시점에 전략과제 월별 진행 경과, 과제별 성과 달성실적, 환류사항들에 대해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년도 발전계획에 환류하고 있음 (입증자료 4,5) - 우리 대학은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달성이 어려워진 기존 중장기 발전계획인 JUMP PLUS 2025를 폐기하고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23학년도부터 실행 중에 있으며,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인 Renewal 2030은 환류체계 및 모니터링체계를 보완하여 2023학년도 이후의 중장기발전계획 성과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입증자료 6, 7, 8) c) 대학발전계획 평가결과 반영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이 반영된 부서 및 학과발전계획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환류사항을 반영하여 차년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입증자료 4, 5) |

1.1 대학발전계획과 교육품질

1.1.2 교육품질 개선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자체평가 추진조직 확인 c) 자체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자체평가규정(2009.6.1. 제정) 제3조(평가대상), 제4조(평가영역),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2. 자체평가 실시 기안 및 협조문 3.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관련 규정 및 준수 - 우리대학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거 자체평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입증자료 1) - 자체평가규정 제12조(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b) 자체평가 추진조직 - 자체평가는 기획처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입증자료 2) -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보고서의 심사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처는 자체평가의 기획, 운영,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c) 자체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 우리대학의 자체평가는 대학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입증자료 3) - 2021학년도 이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 시기에 맞추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자체평가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 및 대학 자체평가규정 제5조(항목별 평가) 제2항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로 같음할 수 있으므로 2023학년도 3월부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자체평가 시행 실적 확인 b)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실적 확인 c) 자체평가 결과의 공유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자체평가규정 2. 자체평가 실시 기안 및 협조문 3.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4. 자체평가보고서 (2021, 2022학년도) 5. 대학홈페이지 자체평가 공개 화면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자체평가 시행 실적 - 우리대학은 자체평가규정 제12조(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 2021학년도 이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 시기에 맞추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자체평가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 및 대학 자체평가규정 제5조(항목별 평가) 제2항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2023학년도 3월부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입증자료 2) - 2021학년도 자체평가는 2021학년도 00월에 실시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후 자체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22학년도 자체평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 및 대학 자체평가규정 제5조(항목별 평가) 제2항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로 갈음함 (입증자료 2, 3, 4) - 자체평가규정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및 제9조(회의록)에 의거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음 (입증자료 3, 4) b)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실적 확인 - 우리대학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자체평가 결과가 전부 충족으로 판단됨 (입증자료 4) - 2021학년도에 실시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보완 사항에 대해 2021, 2022학년도에 개선을 완료했으며, 그 사항은 2021학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심사에서 보완 판정된 항목인 기준 1, 5, 6의 개선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음 c) 자체평가 결과의 공유 실적 확인 - 2021학년도 대상 자체평가결과 요약보고서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 자체평가규정 제18조(평가결과 공시 및 활용)에 의거하여 대학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입증자료 5) |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은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조사체계 확인 b) 조사실적 확인 c) 조사결과의 반영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자체평가규정(제정 2009.6.1., 개정 2020.3.23.),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2.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1.21.) 3.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3.23.) 4.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1.21.) 5.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21, 2022년) 6. 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21, 2022년) 7.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21, 2022년) 8.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안내 공지문 9. 장안대학교 대학요람 교육과정 소개(2021, 2022년) 10.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 회의록 중 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내용(2021, 2022년) 11. 실험·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현황 자료(관리대장 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교육만족도 조사체계 - 교육만족도 조사 관련 규정(또는 지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거 자체평가규정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및 교육만족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교육만족도 규정을 근거로 매년 교육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본 규정에는 교육만족도 조사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조직 및 업무분장, 만족도 조사의 계획수립, 조사방법, 결과보고, 결과 개선 등의 세부사항이 정의되어 있음 (입증자료 1, 2) -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의 개선 및 환류를 위하여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규정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3, 4) - 교육만족도 조사체계(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내용 등) - 우리대학은 교육만족도규정에 의거 부서 간 역할분담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 체계적으로 진행함 · 총장 : 교육만족도 조사 계획 승인 및 조사결과 검토 승인 · 관련 위원회 : 평가 범위 항목 및 조사결과 환류 계획 자문 · 주관부서(기획처) : 교육만족도조사 계획 수립 및 시스템관리, 조사결과 통계처리 · 관리부서 : 평가 실시, 자료수집, 결과평가,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기타 교육만족도에 필요한 사항 · 행정부서 및 학과 : 평가 계획 의견 수립, 조사자료 제출, 평가 결과 반영 - 교육만족도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말하며 그 종류와 시기,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음 · 재학생 대학 생활 실태조사는 연 1회 학기 초에 학생상담센터에서 수행 · 강의평가는 연 4회 학기 중, 학기 말에 교무처에서 수행 · (재학생, 졸업생)교육만족도 조사는 연 1회 교무처에서 수행 · (산업체)교육만족도 조사는 연 1회 학년말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 (교수, 학생, 산업체)현장실습 만족도 조사는 수시로 학기 말에 현장지원센터에서 수행 · 기타 학과, 행정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조사는 수시로 사업 종료 시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지역사회만족도 조사는 연 1회 학년 말에 평생교육원에서 수행 ·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연 1회 학년 말에 교무처에서 수행 - 우리대학은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

조사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함

- 재학생, 졸업생 만족도 조사는 2021년, 2022년 동일하게 전반적 만족도, 교육지원, 진로취업지원, 학사행정지원, 교육시설, 캠퍼스 환경 등 6개 항목 43개 문항으로 시행하였으며,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의 경우 인구통계적 변인 2개 문항 별도로 구성되었고, 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에는 직무관련 1개 문항이 별도로 구성되었음 (입증자료 5, 6)

-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는 우리대학 재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만족도 관련 4개 항목 17개 문항, 만족도 6개 문항, 개방형 2개 문항, 인구 통계 2개 문항을 별도로 구성하였음 (입증자료 7)

b) 교육만족도 조사실적

- 재학생, 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는 온라인(장안포털 및 모바일) 설문 조사로 시행하였으며,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는 학부모 설문지 배포 후 직접 기입법으로 작성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조사 진행하였음

-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62.20->60.64로, 교육지원은 64.27->63.90으로, 진로취업지원은 62.62->62.50으로, 학사행정지원은 61.80->61.80으로, 교육시설은 62.58->60.50으로, 캠퍼스 환경은 61.29->61.70으로 조사됨

- 2021년 대비 2022년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캠퍼스 환경 부분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음

· 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72.39->70.76으로, 교육지원은 72.48->71.46으로, 진로취업지원은 71.89->70.73으로, 학사행정지원은 73.51->69.61으로, 교육시설은 73.12->72.81로, 캠퍼스 환경은 71.04->69.69로 조사됨

·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60.55->59.64로, 전공/학과 인식은 67.85->66.42로, 교육과정은 60.94->61.22로, 교육환경/학생활동은 62.02->61.43으로, 대학인지도는 59.11->55.37로 조사됨

- 2021년 대비 2022년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교육과정 부분의 만족도는 코로나펜데믹 종료로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약간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c)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의 반영실적

- 만족도 조사결과의 검토 및 공유

· 만족도 조사는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며, 관련 부서 및 전문가의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 및 만족도 제고 방안을 도출함. 최종 결과는 대학 구성원들의 개선방안 등을 반영한 후 보고서로 제작되어 대학구성원에게 공유되며, 교육서비스 개선에 활용됨

· 교육만족도 조사는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며, 각 학과의 학과장, 학부장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하여 결과를 열람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학과별로 학과 불만족 이유 등 정보 제공을 통해 학과 운영 및 개선방안 수립에 참고함 (입증자료 8)

- 만족도조사 결과의 교육서비스 개선 사례

· 만족도조사 결과는 대학 구성원들의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단계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함

· 2021학년도 재학생 만족도 조사결과 교양 교과목 운영 개선 요구가 있어 2022년 교육과정 개편 시 수요자적 관점에서 운영하고, 학생의 설문 조사, 요구도 조사를 통해 희망 교과목을 선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개선함 (입증자료 9)

· 2022년도 교양교육의 전략을 「J-CONNECT」로 수립하고, 대학 수준 핵심역량과의 매칭을 통해 많은 교양 교육과정 교과목이 개설되었지만, 특정 핵심역량에 편중되어있다는 문제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목 신설을 통해 기존 교과목과의 균형적 역량 매트릭스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적용함 (입증자료 10)

· 2021년, 2022년 교육시설 부문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13여 종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수리하여 활용하였고 2021년~2022년 120종 772점 약 683백만원의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하였음 (입증자료 11)

1.2.1 조직과 운영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조직구성 관련 규정 준수 확인 b)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일치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정관 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2. 학칙 제2장 직제, 제10조(조직), 제18장 부속 및 부설기관 3. 직제규정 4. 사무관리규정 5. 위임전결규정 6. 각종 위원회 규정 7. 대학 조직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조직구성 관련 규정 준수 - 우리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정관, 학칙, 직제규정, 사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각종 위원회 규정에 행정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에 관련된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 직제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업무분장 및 인력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의 조직도를 최신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5) - 학교법인 서림학원 이사회에서 예결산, 대학발전계획, 기타 학교 경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등의 대학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6) - 인사발령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b)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일치 - 장안대학교는 대학본부, 부속기관 그리고 부설기관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과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7) · 대학본부(6개처) : 기획처, 교무처, 입학처, 학생지원처, 총무처, 산학협력처 · 부속기관(13개 기관) : 학술정보관, 학보사, 교육혁신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취·창업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예비군대대, 정보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인권·성평등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 부설기관(3개 기관) : 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국제교류원 |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문서관리체계를 갖추고 준수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대학의 규정체계 확인 b) 규정 제·개정 절차 준수 확인 c) 문서관리체계 및 규정 준수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제규정류관리규정 2. 제규정류관리규정 시행규칙 2. 대학 규정의 제·개정, 폐지 현황 및 규정 준수 입증 자료 3. 규정 제·개정, 폐지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자료 4. 문서관리 규정 5. 수신 및 발신 문서관리대장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대학의 규정체계 확인 - 대학 학칙 및 규정집 · 우리대학은 대학의 학사를 운영하기 위해 학칙 등 규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규정을 공개하고 있음 - 대학의 규정 관리 또는 제·개정, 폐지에 관한 규정 (입증자료 1, 2) · 또한 규정을 관리하기 위해 제규정류관리규정 및 제규정류관리규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음 b) 규정 제·개정 절차 준수 확인 - 대학 규정의 제·개정, 폐지 현황 및 규정 준수 입증 자료 (입증자료 3) · 우리대학은 규정류의 제·개정, 폐지 시 제규정류관리규정 제7조(제정 및 폐기)에 의거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포함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대학홈페이지에 공포하고 있음 (입증자료 4) - 규정 제·개정, 폐지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자료 ·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 과정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7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 받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포함하여 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구성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하고 있음 (입증자료 4) c) 문서관리체계 및 규정 준수 - 문서관리 규정 · 우리대학은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서규정에 의거하여 문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서의 일련번호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여되며,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음 (입증자료 4, 5) |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는 보장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규정 확인 b)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확인 c) 학사구조 개편 규정준수와 후속조치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2.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3.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4. 교무위원회규정 5. 각 위원회 회의록 6. 대학홈페이지 회의록 공개 화면 7. 학과구조조정위원회규정 8. 학과평가 및 학과구조조정 규정 9. 학사구조 개편 시행 문서 10. 학사구조 개편 관련 구성원 의견수렴 자료 11. 학사구조 개편 관련 위원회 회의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규정 - 우리 대학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갖추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전임교원 5인, 직원 3인, 학생 1인, 조교 1인, 산업체인사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교직원 4인(법인이 추천하는 인사 1인 포함), 학생대표 3인, 관련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재학생,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등 총 8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무위원회는 교무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총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술정보관장, 평생교육원장, 교수평의회 추천 1인, 직원 총회 추천 1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b)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 각 위원회는 회의 실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 (입증자료 5)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9항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입증자료 6) -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6항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c) 학사구조 개편 규정준수와 후속 조치 (입증자료 7, 8) - 우리대학은 2021학년도 기준 4개 계열, 32개 학과, 입학정원 2,367명에서 2022학년도 기준 4개 계열, 37개 학과, 입학정원 2,130명으로 5개의 학과가 증가, 237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함 - 2021학년도에 시행한 학사구조 개편은 학과구조조정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했으며, 신설 학과의 제안서를 제출받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수립으로 정원을 감축 계획을 수용하는 형태의 학사구조 개편을 진행함 (입증자료 10, 11) - 2021학년도 학사구조 개편 시 학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했으며, 학과구조조정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등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2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마련함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학년도에는 2023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실적이 없음- 학과의 폐과 및 모집정지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교원운영계획 및 학생피해방지방안은 해당사항 없음 |
|--|---|

1.2.2 재정 운용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집행, 변경 및 결산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p>a) 예산 편성 시 대학발전계획 연계 및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 확인</p> <p>b) 예산편성, 집행, 변경, 결산 관련 법령 준수 확인</p> <p>※ 평가자 체크리스트의 별첨(법령에 의한 예산편성과 결산 절차)자료 참조</p> <p>c) 재정운영의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p>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안대학교 발전계획 JUMP PLUS 2025 ‘재정운용계획’ p.275~278 2.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회의록(교비 예결산)(2021, 2022학년도) 3. 대학평의원회 회의록(교비 예결산)(2021, 2022학년도) 4. 서림학원 이사회 회의록(교비 예결산)(2021, 2022학년도) 5. 부서별, 학과별 사업계획서(2021, 2022학년도) 6. 장안대학교 예산 편성 관련 문서(2021, 2022회계년도) 7. 장안대학교 예산편성지침(2021,2022 회계연도) 8. 장안대학교 본예산서 및 추가경정예산서(2021, 2022회계연도) 9. 장안대학교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2021, 2022회계연도) 10. 외부 회계감사(결산) 감사보고서(2021, 2022회계연도) 11. 통합정보시스템 예산 편성 화면 캡처(2021, 2022회계연도) 12. 2023회계연도 예산 현황 및 집행 실적 캡처 화면 13. 기금운용위원회 규정 및 회의록(2021, 2022학년도) 14. 장안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예·결산공고 15. 장안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소개 > 정보공개 > 대학평의원회 16. 장안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소개 > 정보공개 > 등록금심의위원회 17. 장안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소개 > 학교법인 > 이사회 회의록 18. 대학정보공시 8-라. 예·결산(합산재무재표) 현황,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 회계 예·결산 현황, 대학정보공시 9-가. 등록금 산정근거 19. 장안대학교 사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20. 부서별 학과별 성과평가보고서 및 예산 대비 집행 실적 현황표(2021, 2022학년도) 21. 장안대 축구부 학생 현황 자료 22. 국제교류원 2022회계연도 수입 현황 및 2023학년도 수입 예산 편성 자료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예산 편성 시 대학발전계획 연계 및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부서와 집행부서의 분리 확인 · 우리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 JUMP PLUS 2025와 기관인증평가에 체계적으로 연계된 사업부서별 예산 편성하여 추진 및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1) · 예산은 매 학년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제14조 및 연도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서림학원 이사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대학의 대학 실정에 맞는 지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있음 (입증자료 2, 3, 4) · 사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에 따라 예산 편성 부서와 집행부서를 기획처와 재무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19) ·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사업(예산)계획서에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학생, 직원, 교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서림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예산 최종 확정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입증자료 5, 6, 7, 8) |

b) 예산편성, 집행, 변경, 결산 관련 법령 준수

－ 법령에 의한 예산편성 절차 준수 (입증자료 5, 6, 7, 8)

· 우리 대학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을 시행하고 있음
·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결산은 대학평의원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함

·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적법한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의거하여 예산서(부속명세서 포함)가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대학홈페이지 예·결산공고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확정된 예산을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 법령에 의한 결산 절차 준수 (입증자료 9, 10)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의거하여 결산서(부속명세서, 감사보고서 포함)가 확정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 예·결산공고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확정된 결산을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14, 15, 16, 17, 18)

·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대학평의회 자문, 서립학원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재정운영이 평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예산집행

· 우리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내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정운영을 관리하고 있음 (입증자료 11)

· 예산 통제 강화를 위하여 2022회계연도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정보화시스템(U-ERP)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예산신청을 시작하였고, 2023회계연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음 (입증자료 11, 12)

·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직전 연도 잉여금처리원칙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또한 의결된 잉여금처리원칙에 의하여 등록금회계에서 직접교육비 지출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하여 이월금의 활용계획을 적절하고 타당하게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13)

－ 적립금, 이월금 법령준수

·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에 따라 적립금의 목적에 맞게 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상의 수입지출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임의퇴직기금, 임의건축기금, 임의장학기금, 특정목적 기금으로 구분하여 적립 목적에 맞게 관리·사용하고 있음

· 이월금은 사립학교법 제32조 4에 따라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사립(전문)대학 이월금 처리 기준에 따라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타 이월 항목으로 적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c) 재정운영의 평가 및 개선 실적

－ 재정운영의 평가 및 개선 실적

· 우리 대학은 대학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대학 예산을 편성, 집행, 결산하고 있으며, 매년 결산 회계감사 및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 및 자문, 대학 발전계획 성과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당해연도 추진사업의 비용 집행에 대한 예산 대비 집행 실적 등 재정 운영 결과를 취합하고, 이는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환류하고 있음 (입증자료 20)

· 등록금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2022학년도에는 대학 운영 재원 확대를 위하여 장안대학교 축구부 및 국제교류원 신설하여 기존 학과 특성을 반영한 신입생 유치 및 한국어교육원의 학생 유치하였음. 그 결과 2022학년도 축구부 20명에서 2023학년도 축구부 46명으로 증가하였고, 2022회계연도 국제교류원 수입 424,650,675원에서 2023학년도 예상 수입 810,120,000원으로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입증자료 21, 22)

| | |
|--------------------------------|---|
| 세부평가요소 | (2) 교육비 환원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충족 : 100.0% 이상 b) 미충족 :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붙임2) 정량지표 현황 양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 우리대학의 교육비환원율은 2020회계연도 119.6%, 2021회계연도 144.9%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100.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등록금 외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다양한 재원 확보 실적 확인 b) 재원 확보 노력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대학정보공시 8-차. 등록금 현황 2. 학교법인 서림학원 전입금 관련 문서(2021, 2022학년도) 3. 장안대학교 2023회계연도 본예산서 4. 학교 시설물 대여 및 사용 관련 문서 5. 국제교류원 2022회계연도 수입 현황 및 2023학년도 수입 예산 편성 자료 6. 평생교육원 수요조사 관련 문서 7. 평생교육원 개설 프로그램 관련 문서 8. 생활관 운영 관련 문서 9. 장안대학교 홈페이지 > 메인 > 팝업 10. 대학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수 시행 관련 문서 11. 기부금 관련 문서 12. 장안대학교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2021, 2022회계연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다양한 재원 확보 실적 - 재정자원의 다양성 · 우리 대학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재정 강화를 목적으로 수입 측면에서는 등록금 수입 외에 기부금, 법인 전입금, 국제교류원 한국어교육원 수입, 평생교육원 수입, 학교 부대시설 활용한 기타교육부대수입 등 다양한 수익증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출 측면에서도 예산 절감 노력 등으로 경상비용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5, 6, 7, 8, 12) · 우리 대학은 등록금에 대해 2017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전문대학 등록금 인하정책(수업료 동결 및 입학금 단계적 인하)에 동참하였고, 2023학년도에 입학금 전면 폐지하여 수입 예산이 축소되었고, 감소된 수입을 대체 하기 위한 재원 확보 원천을 다양화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학교법인 서림학원으로부터 2021학년도에 법정부담전입금 1,000,000원, 2022학년도에 경상비전입금 3,000,000원 및 법인법정부담금 1,2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23학년도에 총 5,000만원 지원을 예정하고 있음. 추후에도 법인 적립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 · 운동장, 체육관, 강의실 등 학교 부대시설 대여 및 식당 운영, 생활관 임대보증금 수입 등을 통한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2021학년도 1,357,783,462원, 2022학년도 1,584,748,219원의 수익을, 국제교류원 신설로 2022학년도 424,650,675원의 수익을, 평생교육원의 강좌 개설로 2021학년도 351,924,575원, 2022학년도 420,861,673원의 수익 등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발전기금 및 장학기부금 등 기부금 수입으로 2021학년도 93,536,631원, 2022학년도 63,808,000원의 수익을, 발전기금 등 기금적립을 통한 정기에금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교육외수입으로 2021학년도 210,062,063원, 2022학년도 501,672,805원의 수입이 발생함 ·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소득이 없어 대학 운영 필요 경비를 충당할 수 없었음 b) 재원 확보 노력 - 대학 교육재원 확보 노력 · 우리 대학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재정 강화를 목적으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전기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의 강좌 홍보, 국제교류원 학생 모집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입증자료 9, 10, 11) - 법정부담금 확보 노력 · 우리 대학은 학교법인 서림학원으로부터 2021학년도에 법정부담전입금 1,000,000원, 2022학 |

| | |
|--|---|
| | 년도에 법인법정부담금 1,200만원을 지원받았고, 수익사업 확보를 통하여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을 높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

1.2.3 감사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감사를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감사 관련 규정 준수 확인 b) 감사 관련 담당부서 확인 c)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규정 확인 d) 감사결과 공개 및 개선실적 확인 ※ 감사제도(법인감사, 외부회계감사, 행정감사)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및 내부감사 규정 2. 감사 실시 문서 3.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규정 관련자료 4. 감사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5.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및 대내외 공고 자료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감사 관련 규정 준수 확인 - 감사 관련 규정 · 우리 대학은 대학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정관 및 내부감사규정을 준수하여 법인감사, 외부회계감사,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1) - 감사제도 관련 법령 준수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1조, 제31조, 제31조의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 우리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제1항,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25조, 내부감사규정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년도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2) b) 감사 관련 담당부서 확인 - 감사 관련 담당자 및 업무분장 · 감사는 내부감사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처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감사팀은 감사명령자인 총장이 행정직 중 상위직급자를 위주로 위촉하여 서로 다른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입증자료 2) c)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규정 확인 -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규정 관련자료 · 또한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내부신고 절차, 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입증자료 3) d) 감사결과 공개 및 개선실적 확인 (입증자료 4, 5) - 예·결산공고자료(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를 감사명령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보고도 공문으로 보고하고 있음 · 회계감사의 경우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대학홈페이지 및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여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음 - 대학정보공시자료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교육부의 2013, 2017년도 학교법인 서림학원(장안대학교) 회계부분감사 처분 미이행 건으로 해당 건의 삭제를 위해 사학감사담당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음 |

1.2.4 대학의 책무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준수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윤리 규정 확인 b)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c) 윤리적 책무 준수 노력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윤리적 책무를 위한 규정 2.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2021, 2022) 3. 대학홈페이지 회계결산 공고 화면 캡처(2021, 2022) 4. 대학정보공시 10-가.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5. 교육부 행정제제 확정 통지 공문 6. 학교법인의 처분 미이행건 처리를 위한 노력 입증자료 7. 입학정원 5% 모집정지 행정제제 이행 완료 입증자료 8. 교원소청자료(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 재임용 내부 기안문서) 9. 소송자료(2021, 2022) 10. 교원징계위원회 자료 11.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부정청탁금지교육, 직무윤리, 청렴교육 등 실시자료(2021, 2022)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윤리 규정 확인 - 우리대학은 구성원들의 윤리적 책무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장안대학교 현장, 윤리적 책무 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성 관련 위법행위자 징계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연구윤리규정, 교원복무규정, 직원복무규정 등에 포함하여 직무수행에 관련한 윤리 준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입증자료 1) - 2020~2021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고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산안을 승인 후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2, 3) b)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 대학정보공시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입증자료 4) · 학교법인은 2013, 2017년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처분 미이행 건의 처리에 대해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대학정보공시 10-가(위반내용 및 조치결과)의 삭제를 위해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과 진행 중인 상황을 입증자료로 제시함 (입증자료 6) · 2013, 2017년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처분 미이행으로 2023학년도 총입학정원의 5% 모집정지 행정제제를 받았으며, 이행을 완료함 (입증자료 5, 7)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관련 자료 · 2021~2022학년도 내 교원소청은 3건 발생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건은 재임용, 2023학년도에 결정문이 도달한 1건은 재임용 심사 예정, 1건은 청구인의 청구 각하로 결정문이 도달함 -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관련 자료 (입증자료 8) · 2021~2022학년도 학교법인 서림학원의 소송 건은 민사소송 7건, 행정소송 2건이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이행을 완료함 (입증자료 9) c) 윤리적 책무 준수 노력 확인 - 교직원 및 학생 징계위원회 회의록 · 기간 내 교원 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에서 3회가 개최되었으며, 검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1명, 불문경고 1명의 징계처분을 통지함 (입증자료 10) |

-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 자료 (교직원 및 학생)

· 2021학년도에는 윤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성폭력예방교육 2,993명(재학생), 성희롱예방교육 524명(교직원), 부정청탁 금지 교육 442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65명, 아동학대 예방교육 530명,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532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2022학년도에는 성폭력 예방교육 2,217명(재학생), 성희롱예방교육 392명(교직원), 부정청탁 금지 교육 391명,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46명, 아동학대 예방교육 457명,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469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457명, 보안교육 457명이 교육을 이수함 (입증자료 11)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지역사회 봉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지역사회 봉사계획 확인 b) 지역사회 봉사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장안대학교 사회적 책무 규정 제6조(사회봉사 활동) 2. 장안대학교 장안사회봉사단규정 제2장(기구) 3. 사회봉사프로그램 실시 기안문 및 결과보고(2021, 2022학년도) 4. 사회봉사프로그램 예산집행내역(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지역사회 봉사계획 - 우리 대학은 장안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자아실현정신을 구현하여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의 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장안사회봉사단규정」을 제도화하였으며, 매년 사회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힘쓰고 있음 (입증자료 1, 2) - 「장안대학교 장안사회봉사단규정」 제1장 2조에 의거 본 봉사단은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과 서울, 경기지역의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매 학년도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과 및 행정부서로부터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필요 예산을 지원해 봉사활동을 운영함 · 2021학년도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기본지원금 외에 봉사 횟수 등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함 b) 지역사회 봉사실적 - 2021학년도에는 폐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의 재능을 기부하여 제로웨이스트 장바구니를 직접 제작하여 지역사회 시민들 약 200명에게 배포함 (입증자료 3, 4) - 2021학년도에 지역사회의 영유아들에게 즐거움과 교육적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아동문학, 율동을 포함한 공연을 지역사회 어린이집 4곳, 총 180여 명의 영유아에게 시행함 - 2022학년도에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어르신 90여 명에게 메이크업, 네일아트, 분장, 특수분장과 심리적 안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뷰티 테라피 등의 봉사활동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이웃을 배려하고 온정을 전달 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2022학년도에 여러 참가자와 함께 경기옛길을 걸으면서 환경정화를 하는 친환경 봉사 프로그램 '경기옛길과 함께하는 줍깅데이'를 시행함. 줍깅은 조깅을 하는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임 - 2022학년도에 장안대학교 인근의 복지기관 3곳에서 밀반찬 포장 및 배부를 비롯한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제과제빵, 주야간보호센터, 원예, 하늘소풍 등)의 보조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3개월 간 총 30회(122.5시간)의 봉사활동을 총 58명이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함 |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발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의 전공교육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여부 확인 c) 교육과정 개발(개편) 실적(관련 위원회 활동 포함) 확인 |
| 충족 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제정 2001.9.17., 개정 2022.2.17.) 제1장 제2조(교육목표), 제8장 제34조(교육과정) 2. 학칙 시행규칙(제정 2011.2.1., 개정 2022.4.15.) 제2장 제3조(교육과정 운영)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1.1.4.) 제1조(목적),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4.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22.8.30.) 제1장 제4조(업무) 5. NCS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14.9.1.,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부칙 2022년 8월 폐지) 제2장 제7조(조직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6.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제정 2002.3.1., 개정 2013.1.1.) 제2조(구성), 제5조(임무) 7. 대학평의회 운영규정(제정 2008.3.1., 개정 2016.12.1.) 제3조(기능) 8. 지속적 교육품질개선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1.2.)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5조(교육품질개선 프로세스) 9.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1.2.) 제9조(관련규정) 10. 학생생활연구(2021년, 2022년) 11. 교육만족도 조사(2021년, 2022년 작성 기준) 12. NCS지원센터,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21년, 2022년) 13. 대학평의회 회의록(2021년, 2022년) 14.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2021년, 2022년) 15.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편보고서-외식비즈니스과(예시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회의록 포함) 16.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6조 프로세스 그림 17. 교육과정 개발·개편 참여학과 리스트 및 관련 문서(2021년, 2022년) 18. 학과별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개편 재정지원 내역(2021년, 2022년) 19.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관련 자료(2021년, 2022년) 20.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작성 관련 기안 및 협조문 21.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2021년, 2022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하여 다음의 규정들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8장 제2조(교육목표), 제34조(교육과정), 학칙 시행규칙 제2장 제3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장 제4조(업무), NCS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장 제7조(조직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제5조(임무),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5조(교육품질 개선 프로세스),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제9조(관련 규정) - 학칙 제2조(교육목표)에 의하면 우리대학 교육목표는 자아실현의 교훈 아래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의 소양과 유능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5조에서 교육과정 수립 시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고려하 |

고, 대학의 교육이면, 교육목적,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학부와 학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실행 목표를 둬

- 학칙 34조(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전공교과의 경우 학과의 특성에 따라 일반 선택교과와 교직교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과는 필수, 선택으로 나누며 각 전공별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음
- 현장실습 의무대상 학과의 산업체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의 필수로 함
- 모집 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하고 있음

-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포함한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입증자료 3, 21)

·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며 매년 대내외 환경 및 수요 분석, 기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차년도 교육과정을 개발 및 심의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를 거쳐 개발된 교육과정에 대해 총장이 최종 승인함

· 교육과정 개발 절차: 대내외 환경분석 및 교육수요자 요구분석,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역량(핵심역량 및 직무역량) 설정 및 검증, 역량별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 지식기술 태도 도출, 교과목 도출,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역량평가지표 작성 순으로 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과정 개발 주기: 교육과정 개발 주기는 2년제 학과는 2년, 3년제 학과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환경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함

· 교육과정 편성 시 고려사항: 사회변화 추세, 학문의 발전과 변화,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대학의 사명/교육목표/인재상/핵심역량 및 직무역량, 기편성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학생과 수요자 요구사항, 산업체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함

b)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여부 (입증자료 3, 21)

- 우리대학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6조의 개발 절차에 산업체의 요구분석, 기개발된 NCS 능력단위 분석, 필요직무 및 능력을 분석하여 개발하도록 명시, 수행하고 있음

- 만족도 조사 (입증자료 9, 10, 11)

· 교무처 주관으로 교육과정 개선과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만족도 조사를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함

· 산학협력처 주관으로 산업체 만족도와 요구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우리대학 졸업생이 재직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포함시켜 교육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상담센터 주관으로 학과의 강점과 약점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학생들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학생생활연구'를 발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포함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진로에 대한 요구들이 분석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음

· 각 학과에서는 전공에 필요한 산업체 요구조사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도 함

c) 교육과정 개발(개편) 실적

- 우리대학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입증자료 3, 4, 6, 7, 12, 13, 14, 19)

· 우리대학은 교무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교육혁신지원센터운영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제2조(구성)에 따라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1인 이내, 간사 1명으로 구성되고 제5조(임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개편, 개발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내용을 심의·의결함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은 학과 단위로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임교수와 산업체 인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수행됨

-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업무)에 따라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개발(개편) 지원을 위한 연구 및 환류 업무를 수행함

-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개최 :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 J-CESS 안내,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 CQI 입력 방법 등 설명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에 따라 평의위원회는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함
- 우리대학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음 (입증자료 4, 5, 6, 7, 12, 13, 14, 19)
 - 교육과정 개발(개편)의 타당성 및 개선을 위하여 NCS지원센터, 교육혁신지원센터 위원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개발과정 계획
 -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함
 - 대학평의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규정 및 교육과정 개발 개선을 위한 자문을 함
- 우리대학은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의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환류를 하고 있음. 이 외에 만족도조사 지원, 전산시스템(J-CESS)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입증자료 3, 4, 9, 11, 20, 21)
 - 2021년에 실시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으로 37개 학과가 참여하여 6개학과 개발하고 24개 학과는 개편하였음. 이에 보고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재정적 지원도 시행하였음
 - 2022년에 실시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으로 16개 학과가 참여하여 7개 학과가 개편, 9개 학과가 개발하였음. 개발 및 개편보고서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재정적 지원도 시행하였음
 - 신규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각 학과의 교수들과 산업체 인사가 포함된 교육과정 개발위원 회의를 통하여 산업전문가 현장 인터뷰 결과 공유, 신규학과 인재양성유형, 직무도출,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개편 및 편성비율 적절성 검토 등 개발 절차별 도출 사항을 공유하였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함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의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대학 및 학과의 인재양성 목표와 직업기초 및 교양역량 설정의 연계성 확인 c)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확인 d) 교육과정 개발(개편) 실적(관련 위원회 활동 포함)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학칙(제정 2001.9.17., 개정 2022.2.17.) 제1장 제2조(교육목표), 제8장 제34조(교육과정) 2. 학칙 시행규칙(제정 2011.2.1., 개정 2022.4.15.) 제2장 제4조(교과 이수)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1.1.4.) 제1조 (목적),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 4.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22.8.30.) 제1장 제4조(업무) 5. NCS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14.9.1.,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부칙 2022년 8월 폐지) 제4조(업무)(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부칙 2022년 8월 폐지) 6.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제정 2002.3.1., 개정 2013.1.1.) 제2조(구성), 제5조(임무) 7.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 2008.3.1., 개정 2016.12.1.) 제3조(기능) 8.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1.2.)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5조(교육품질 개선 프로세스) 9.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1.2.) 제9조(관련규정) 10. 학생생활연구(2021년, 2022년) 11. 교육만족도 조사(2021년, 2022년 작성 기준) 12. NCS지원센터,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21년, 2022년) 13.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4.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15. 교육과정 개발 개편보고서(직업기초교양 포함,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회의록 포함) 16.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6조 프로세스 그림 17. 역량중심 지속적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보고서(2021년, 2022년 작성 기준) 18. 일반교양 고도화 방안 연구진 회의록 19. 직업기초교양 교육과정 운영지침(2016년 작성 후 현재까지 운영) 20.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진단결과 보고서(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2021년) 21.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집합형) 사전진단보고서(2023년 제출) 22. J-CESS 내 교육과정 개발 순서 캡처 그림 23. 핵심역량과 교양 교육 연계성(교양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발췌) 24. 교육혁신지원센터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개발 및 작성 관련 기안 및 협조문 25.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관련 자료 26. 학과별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개편 재정지원 내역 27. 2022년 교양 이수교과와 구성 체계도 그림 28. 강의평가운영지침 29. 교양 교육과정 개발보고서(2021년, 2022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교육과정 개발(개편) 관련 규정 및 준수 - 우리대학은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함 (입증자료 3, 4, 5, 6, 7) · 학칙 제8장 제2조(교육목표)와 34조(교육과정), 학칙 시행규칙 제2장 제3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업무), NCS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업무),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제5조(임무),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와 제5조(교육 |

품질 개선 프로세스),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제9조(관련 규정), 교무위원회 규정

- 관련 위원회: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을 위해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NCS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기능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3, 4, 5, 6, 7, 12, 13, 14)
- 학칙 제8장 제34조(교육과정), 학칙 시행규칙 제2장 제4조(교과이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규정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함
- 학칙 제1장 제2조(교육목표)에 따르면 자아실현의 교훈 아래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의 소양과 유능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5조에서 교육과정 수립 시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고려하고, 대학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학부와 학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실행 목표를 둬
- 일반교양 개발 연구원은 교육목적 및 발전계획, 인재상을 토대로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교육목표를 수립하였고, 2022학년도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 교육과정의 정체성 확립 및 교육목표 명확화를 위해 한국 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 진단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교양과 교양 영역별 교육목표를 설정함 (입증자료 17, 18)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에 따라 계획, 실시, 개선함
- 교양 및 직업기초교육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인성과 교양 함양에 부합한 교양 교육과정 운영 정책을 수립함
- 학과별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은 교육과정개발위원회가 대내외 환경 및 수요 분석, 기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차년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함
- 우리대학은 대학공통 일반 교양교육과정과 직업기초능력이 연계된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은 각 학과에서, 일반 교양교육과정은 교육혁신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 개발함 (입증자료 18)
- 직업기초 교양교과목 편성은 학과별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통해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의 만족도 및 필요 직무 및 역량을 분석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학과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으로 2개 교과목을 도출함. 편성은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입증자료 3)
- 일반교양은 NCS지원센터와 교육혁신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연구진을 구성하고 개발·운영·평가·개선 및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음 (입증자료 5, 17)
- 직업기초 및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 주기는 직업기초의 경우 각 학과의 주기에 따르고, 일반교양의 경우 각 학과의 개발(개편) 환류와 만족도 조사의 요구분석을 반영하여 1년 주기로 개발하고 있음 (입증자료 3, 19)
- 직업기초 및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의 범위와 영역으로 직업기초는 NCS기반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포함한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으로 하고, 일반교양은 인간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 교양교육에 알맞은 소양교육, 기초교육, 교양교육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
-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 운영지침 (입증자료 19)
- 우리대학은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을 위한 운영지침을 두고 수업 설계, 운영, 평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음
 - 수업설계: 강의계획서, 프로파일, 평가계획서
 - 수업운영: 자가진단평가, 사전 사후 진단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 수업평가: 능력평가 의무 2회 이상과 출석점수로 평가계획서에 따른 성취도 판정

b) 대학 및 학과의 인재양성 목표와 직업기초 및 교양역량 설정의 연계성 (입증자료 1, 3, 17, 19, 23)

- 우리대학은 2021년 기획처 주관으로 구성원이 선정한 핵심역량 키워드와 K-CESA 역량 영역을 반영하여 인재상과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6대 핵심역량으로 선정함. 대학수준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의사소통역량, 정보역량, 창의역량, 융합역량, 공동체역량, 도전역량 총 6개

로 선정되었으며 그 연계성은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보고서에 제시함

- 우리대학의 2023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보고서를 보면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시한 표준안을 참고로 기초교양, 핵심교양, 자율교양 영역 3개 분야로 분류하고, 기초교양은 다시 필수교양과 소양교양으로 분류함
- 대학의 핵심역량과 교양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역량의 방향성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우리 대학만의 차별화된 「J-CONNECT」 교양교육과정의 전략을 수립함
- 핵심역량과 「J-CONNECT」 로드맵을 활용하여 우리대학 학생들이 역량별로 균형된 교양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함

c)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관련 외부환경 분석 및 의견 수렴 확인

- 직업기초교양은 각 학과에서 산업체 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운영함 (입증자료 29, 예시: 외식비즈니스과 교육과정 개편보고서 p18, p28)
- 일반교양 고도화 방안 연구 (입증자료 17, 18)
 - NCS지원센터, 교육혁신지원센터 주관으로 연구진을 별도 구성하여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을 연구, 개발함
 - 2021년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결과에 따라 교양교육의 개선을 노력함 (2019, 2020년 자료로 컨설팅받음)
 - 개선·환류하여 운영한 교양 교육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을 받음
 -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에 근거한 교과목CQI 분석, 강의평가 운영지침에 근거한 강의평가 분석, 이 외 학생들의 요구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를 신설함

d) 교육과정 개발(개편) 실적 (입증자료 6, 7, 12, 13, 14, 15, 18)

- 우리대학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 우리대학은 교무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우리대학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및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음 (회의록)
 - 우리대학은 교육과정 개발(개편)의 타당성 및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NCS지원센터,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들의 연구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발(개편) 양식을 개발
 - 별도로 구성된 일반교양 고도화 개발 연구원들은 우리대학 핵심역량과 연계된 보편적 교양교육과정 개발
 - 우리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한 심의·의결함
 - 우리대학 평의위원회는 교육과정 규정 및 교육과정 개발 개선을 위해 자문함
- 직업기초 교양 및 일반교양 개발 (입증자료 27)
 - 우리대학 직업기초교양은 학과 단위에서 산업체 요구조사에 의하여 개발
 - 우리대학 일반교양은 학교 단위에서 연구진을 구성하여 매년 개발
 -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에는 교무처 주관으로 하는 재학생, 졸업생 만족도 조사, 산학협력처 주관 산업체 만족도 조사, 교양 교과를 듣는 재학생들의 만족도와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함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 2021년도에 실시한 장안대학교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 교과목 18개와 직업기초능력 교과목 10개로 총 28개 교과목임
 - 2022년도에 실시한 장안대학교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 교과목 20개와 직업기초능력 교과목 10개로 총 30개 교과목임

2.2 교육운영 및 질관리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 규정에 따라 전공 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전공교과 편성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학생이 달성해야 할 직무능력 수준의 제시 및 공지 확인 c)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및 공지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학칙(제정 2001. 9. 17., 개정 2023. 2. 23.) 제34조(교육과정), 제35조(교과이수단위) 2. 학칙시행규칙(제정 2011. 3. 1., 개정 2022. 2. 17.) 제3조(교육과정운영), 제4조(교과이수)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제정 2011. 7. 1., 개정 2020. 1. 21.) 4. 장안대학교 요람 교육과정 소개(2021년, 2022년) 5.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간담회 관련 자료 6. 학과별 전공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2021년, 2022년) 7. 강의계획서 작성 협조문(2021년, 2022년) 8. 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2021년, 2022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전공교과 편성 관련 규정 및 준수 - 우리대학은 학칙 제34조(교육과정), 학칙 시행규칙 제3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에 기반하여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개편) 및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 교육과정 개발(개편) 주기는 2년(3년제 학과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환경변화와 대학 정책 방향에 따라 개발(개편)을 실시함 (입증자료 3) - 우리대학은 대학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갖도록 학부, 학과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목표를 두어 실행도를 높이고 있음 - 전공교육과정은 학과별 직무 관련 지역산업을 고려하여 학교·학과의 인재양성 목표 설정과 연계하며, 개발(개편) 과정에서 산업체 인사가 참여하여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강화함 - 우리대학의 전공교과목 편성은 학칙(제34조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제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장 중심 전공교육을 위해 각 학과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제9조)을 준수하고 학과의 교육목표와 전공교과의 연계성과 성취 수준 달성을 위하여 실습 및 이론 과목을 적절하게 편성함 (입증자료 4) - 2021년 우리대학의 전공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이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지원 시스템(J-CESS)’를 통하여 전산화됨에 따라, J-CESS 활용법을 주제로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입증자료 5) - 2021학년도 전공교과 중 실습과목(A)은 1,599시수, 이론과목은 1,637시수로 실습 평균 비율은 $(A/(A+B)*100\%)$ 49.4%, 2022학년도 실습과목은 3,288시수, 이론과목은 3,368시수로 실습 평균 비율은 49.4%를 차지함 (입증자료 4) b) 학생이 달성해야 할 직무능력 수준의 제시 및 공지 - 우리대학은 강의계획서에 학생이 달성해야 할 직무능력 수준과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을 통해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교육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강의계획서에 학습목표, 교수-학습내용, 학습성취 수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세부평가 기준 내 주차별 자가진단 및 역량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교과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교과목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작성하므로 교육과정 운영목표와 유기적이며 통일성 있게 연계됨 (입증자료 7) - 학칙 시행규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제9조), 수업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교수자가 매 학 |

기 시작 4주 전까지 강의계획서를 장안 역량중심 교육지원시스템(J-CESS)에 입력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교과목의 학습목표 및 평가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함

- NCS기반 교과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 수준과 직무수행평가계획을 명시한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를 학기 시작 4주 전까지 강의계획서와 함께 장안 역량중심 교육지원시스템(J-CESS)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입증자료 7)

- 장안 역량중심 교육지원시스템(J-CESS)에 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진단평가, 성적 입력, 교과목 CQI 등을 작성하여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함 (입증자료 8)

c)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공지

- 신입생은 입학 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강의계획서 열람 방법을 별도로 공지하고 있으며, 신입생 및 재학생은 매 학기 초 학습자에게 강의계획서를 인지하도록 하며 교수자는 강의계획을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안내함 (입증자료 7)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 지원 관련 규정을 갖추고 준수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기자재 수요조사 및 지원 실적 c)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인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험·실습운영위원회규정(제정 2002. 3. 1., 개정 2013. 1. 1.) 2.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수요(개선) 요구조사, 반영(지원) 실적 자료(회의록) 3. 물품구매규정(제정 2005. 9. 1., 개정 2019. 3. 1.) 4. 물품관리규정(제정 2005. 9. 1., 개정 2021. 7. 1.) 5. 물품관리위원회규정(제정 2011. 5. 1., 개정 2015. 9. 1.) 6. 교육시설 및 물적자원 관리규정(제정 2011. 7. 1., 개정 2016. 1. 1.) 7.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정(제정 2002. 3. 1., 개정 2022. 4. 15.) 8. 실험/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현황 자료(관리대장 등) 9. 학생·교직원 실험·실습 안전관리 교육 현황(2021, 2022년) 10. 대학정보공시 자료(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2021, 2022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관련 규정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학생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실험·실습운영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 실험·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실험·실습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 (인증자료 1) · 실험·실습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보직교수 및 평교수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함 · 실험·실습운영위원회는 실험·실습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실습기자재 확충·보안·관리 등 전반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적의 실험·실습 여건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인증자료 2) - 우리대학은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관리, 처분 등에 필요한 관련 규정, 운영위원회 등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실험·실습 기자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철저히 관리·유지하고 있음 (인증자료 3, 4, 5, 6, 7) · 우리대학은 물품구매규정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의 신청, 지원, 배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절차에 따라 신청과 구매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 이관, 불용폐기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물품에 관한 재물조사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손·망실, 불용품 등을 파악하고 있음 · 우리대학은 실험·실습 기자재 개선계획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p>b) 기자재 수요조사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학과에서 발전계획서에 의거하여 실험·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를 요청하며, 요청사항은 실험·실습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총장 승인 후 구매담당자가 필요 물품을 구매하여 학과에 제공함 (인증자료 2) - 우리대학은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관리·유지·개선을 위해 물품관리규정과 교육시설 및 물적자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과별 물품관리책임자를 두고(학과장 및 학과조교) 물품 표찰을 만들어 물품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함 · 실험·실습용 기자재 사용 결과를 실습일지에 기록하며, 물품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심의 후 회의록 기록 및 관리대장에 정리 및 작성함 - 우리대학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함 (인증자료 8) · 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실험·실습 기자재 수리 현황을 실시간 조회 및 확인하고 관련된 사안을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충분한 실험·실습의 기회를 제공함 |

- c)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
- 우리대학은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험·실습실 및 실험준비실(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입증자료 7)
 -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우리대학에서는 온라인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 학과의 교수자와 학생이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실험·실습 교과목이 개설되어있는 학과에 대해 연 2차례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함 (입증자료 9, 10)
 - 2021년도 1학기 이수자 1,221명(참여학과 9개)
 - 2021년도 2학기 이수자 1,310명(참여학과 9개)
 - 2022년도 1학기 이수자 1,489명(참여학과 9개)
 - 2022년도 2학기 이수자 1,010명(참여학과 9개)

| | |
|--------------------------------|--|
| 세부평가요소 | (3) 실험실습비 지원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충족 : 평가기간 내 평균 157천원 이상 b) 보완 :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c) 미충족 : 보완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붙임2) 정량지표 현황 양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 우리대학의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2020회계연도 217.6천 원, 2021회계연도 274.2천 원으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157천 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 | |
|--------------------------------|--|
| 세부평가요소 | (4) 전공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충족 : 학년도별 전공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가 평균 33명 이하이거나 모든 전공 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가 40명 이하인 경우 * 간호학과 단설대학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 적용 b) 보완 :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c) 미충족 : 보완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강좌 당 학생 수 산출에서 원격강좌는 제외함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붙임2) 정량지표 현황 양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 우리대학의 전공 강좌당 학생 수는 2021학년도 18.7명, 2022학년도 18.0명으로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 기준인 33명 이하를 충족하고 있음 |

| | |
|--------------------------------|---|
| 세부평가요소 | (5)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환류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 확인 c) 평가 및 환류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제정 2001.9.17., 개정 2022.2.17.) 제82조 4(평의원회 기능) 2.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1.2.)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3.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22.8.30.) 제4조(업무) 4. NCS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14.9.1.,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부칙 2022년 8월 폐지) 제4조(업무)(22년8월 폐지) 5.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1.1.4.)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6.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1.2.) 7.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제정 2002.3.1., 개정 2013.1.1.) 제5조(임무) 8. 강의평가 운영지침(내부지침으로 강의평가 시행 협조문 첨부 문서) 제7조(결과 활용) 9. 강의평가 시행 협조문 10. 강의개선계획 관련 기안 및 협조문 11. 장안대 교육과정 환류체계 및 PCDA 그림 12.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자료 13.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지출 증빙 14. 만족도 결과보고서_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2021, 2022년) 15. 학생생활연구 16. 교육과정 품질 관리 개선보고서 제출 안내(협조문) 17. 교과목 CQI-J-CESS 캡처 18. 사전 사후 진단평가 협조문 19.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보고서-교과 CQI(협조문) 20. CQI 관련 NCS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21. 학과별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보고서(2021, 2022년) 22. 대학수준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보고서(2021, 2022년) 23.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보고서 샘플 (환류 포함) 24. 신설 교과 개수와 예시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관련 규정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고 있음 · 학칙 제82조4(평의원회 기능)에서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 자문 (입증자료 1) ·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에 전체 교육품질의 개선활동에 대한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입증자료 2) · 역량기반 교육과정 전담센터인 교육혁신지원센터(NCS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업무)에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를 규정하고, 제7조(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인 센터장을 포함 5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환류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함 (입증자료 3, 4)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입증자료 5) - 학과는 강의평가 결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개선·환류함 (입증자료 6) - 교무처 교무팀은 각 교육과정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하고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환류함 (입증자료 7) - 편성된 교육과정은 교육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학과별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환류함 |

- 기획처는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의 주관부서로 교육만족도 계획, 조사, 결과 분석과 결과에 따른 개선·환류를 실시함
- 강의평가운영지침에 따라 우리대학은 학기당 2회의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70점 이하의 경우 강의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수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함 (입증자료 8, 9)
- b)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
 - 전공 교육과정 평가·환류를 위하여 교무처, 교육혁신지원센터, 산학협력처, 학생상담센터 등이 조직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대학은 교과목 CQI, 학과 CQI, 학교 CQI 체제를 구축하여 전공교육을 분석하고 차년도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적용하는 환류 체계를 갖추
 - 지속적 품질관리 (CQI) (입증자료 10, 11, 12, 13)
 - J-CESS에서 실시한 교과 CQI를 종합하여 학과 차원에서 학과별 지속적 품질관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서비스 전반의 개선·환류에 반영함 (입증자료 17)
 - 교육혁신지원센터는 학과의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보고서를 점검하여 대학수준 지속적 교육 품질 개선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교육과정(전공, 교양) 운영계획을 수립함
 -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를 위한 장안대학교 J-CE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환류 방법과 J-CESS 프로그램 사용 안내를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설명회를 매년 개최함 (입증자료 17)
 - 전공교육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위하여 교무처와 산학협력처 주관으로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의 만족도 조사와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구성원에게 공유함 (입증자료 14)
 - 학습자 역량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 학기 사전 사후 진단평가 실시 (입증자료 18)
 - 학생상담센터는 대학생학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과내용, 진로 및 희망 취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학생생활연구집을 매년 발간함 (입증자료 15)
- c) 평가 및 환류 실적 (입증자료 16, 19, 20, 21, 22, 23, 24)
 - 학습자 강의평가, 교과목 CQI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운영에 반영하여 환류하고 있음
 - 교육과정의 성취 효과를 위하여 교과에 따라 사전, 사후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효과를 확인하고 개선·환류하고 있음
 - 사전, 사후 진단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수준을 조절함
 - 사후 진단평가는 직무의 성취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함
 - 사전, 사후 진단평가와 함께 재학생들의 성적으로 알 수 있는 직무 성취도를 분석하여 차년도 교육과정과 교수법 개선·환류함
 - 전공에 따른 산업 트렌드 조사, 만족도조사 결과를 환류하여 학과 명칭의 개선과 신설학과 설립 등 학과 구조조정에 반영함
 - 2021년: 32개 학과가 개편(개발)에 참여, 403개의 교과가 개정됨
 - 77개 과목명 변경, 33개 학기 이동, 20개 시수변경, 176개 신설, 81개 폐지
 - 2022년: 16개 학과가 개편 및 개발에 참여, 607개의 교과가 개정됨
 - 100개 과목명 변경, 52개 학기 이동, 95개 시수변경, 288개 신설, 104개 폐지
 - 학과명의 변경, 신설학과의 교육과정 개발로 많은 수의 교과가 신설되었으며, 대내외적 요구에 따라 시수와 교과목 명칭이 변경됨

| | |
|--------------------------------|---|
| 세부평가요소 | (6)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학사제도 관련 규정 확인 b) 학사제도의 도입 및 개선 노력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제정 2001. 9. 17., 개정 2023. 2. 23.) 2. 장안대학교 학칙 시행규칙(제정 2011. 3. 1., 개정 2022. 2. 17.) 3.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규정(제정 1998.2.28., 개정 2015.9.1.) 4.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제정 2007.11.19., 개정 2015.9.1.) 5. 장안대학교 요람 교육과정 소개 (2021, 2022학년도) 6.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7.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8.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2021, 2022학년도) 9. 재학생 교육 만족도 조사(2021, 2022학년도) 10. 졸업생 교육 만족도 조사(2021, 2022학년도) 11. 학부모 교육 만족도 조사(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학사제도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품질 개선 및 수요자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학사제도의 도입 운영(입증자료 1. 학칙, 2. 장안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3.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규정, 4.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2022년 4월 현재 12개 학과 운영 중), 전과, 현장실습 운영,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 등 학과·학제 관련제도 이외에 협약에 의한 학과 운영 등 학과운영 관련 학사제도의 도입과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특히 학칙의 경우 다양한 학점 인정 사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p>b) 학사제도의 도입 및 개선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의 모든 학과는 대학의 사명과 비전,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양성목표를 수립하여 규정된 교육과정 개발(개편) 절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학생들이 학습목표 및 직무능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함 - 우리대학의 전공교과목 편성은 ‘학칙 제34조(교육과정)’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9조(현장중심 전공교육)’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장중심 전공교육을 위해 각 학과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9조(현장중심 전공교육)’을 준수하고 학과의 교육목표와 전공교과의 연계성과 성취수준 달성을 위하여 실습 및 이론과목을 적절하게 편성함 - 학과별 교육과정의 실습 및 이론 교과목 편성 내용을 보면, 2021, 2022학년도 전공교과 중 실습 평균 비율은 49.4%를 차지함 (입증자료 5. 장안대학교 요람 교육과정 소개) - 교육과정상의 각 교과목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수자의 의도와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강의계획서에 의해 운영됨. 강의계획서에는 학습목표와 교수-학습내용, 학습성취 수준 및 평가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교과목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작성하므로 교육과정 운영목표와 유기적이며 통일성 있게 연계되고 있음 - 우리대학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규정(또는 지침)을 갖추어 시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6.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7.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

- 2년 주기(3년제 학과는 3년 주기)로 전공별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핵심역량 기반 및 NCS 기반 및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절차와 방법은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 및 회의록에서 절차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입증자료 8.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
- 매년 교과목별 지속적 품질 개선(CQI)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과별 지속적 품질 개선 보고서(CQI)를 작성하고 있으며 대학 수준의 지속적 품질 개선 보고서(CQI)를 작성하여 이를 차년도 교육과정 개발(개편)에 활용하고 있음
- 교과목별 강의평가와 학생상담센터의 학생생활연구,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산업체, 재학생, 졸업생)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 전공 교육과정 개선사항을 도출함. 학과는 운영계획 수립 시 산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직무능력을 설정하며 이를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최종 점검하고 자체수행능력평가와 강의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함
- 2020학년도부터는 장안 역량중심 교육지원시스템(J-CESS)에 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진단평가, 성적 입력, 교과목 CQI 작성 등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함
-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에 대하여 교육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입증자료 9.재학생 교육 만족도 조사, 10.졸업생 교육 만족도 조사, 11.학부모 교육 만족도 조사)
 - 재학생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 2021년 대비 2022년 만족도지수(SI) 결과, 전반적 만족도(-1.68), 교육지원(-0.37), 진로취업지원(-0.12), 교육시설(-2.08)과 관련된 지수 등은 모두 하락하였으나 캠퍼스 환경(0.41)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향상된 결과를 보임
 - 졸업생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 2021년 대비 2022년 만족도지수(SI) 결과, 전반적 만족도(-1.63), 교육지원(-1.02), 진로·취업지원(-1.16), 학사행정지원(-3.9), 교육시설(-0.31), 캠퍼스환경(-1.35) 등 모든 부문에서 지수 하락하였음
 -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 2021년 대비 2022년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0.28)를 제외한 전반적 만족도(-0.91), 전공/학과 인식(-1.43), 교육환경/학생활동(-0.59), 대학인지도(-3.74) 관련된 지수 등 모든 부문에서 하락하였음

2.2.2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평가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을 운영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추진체계 확인 c) 운영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 제8장 교과 및 이수, 제9장 성적평가 및 졸업 2. 학칙시행 규칙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 4.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장 제4조(업무) 5. NCS 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4.9.1.,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부칙 2022년 8월 폐지) 제4조(업무), (2022년 8월 폐지) 6.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제2조(구성), 제5조(임무) 7.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8. 직업기초교양 교육과정 운영지침 (내부 사업 지침으로 2016년 작성 후 현재까지 운영) 9. NCS지원센터, 교육혁신지원센터운영위원회 회의록 (2021년, 2022년 작성) 10. 대학 평의회 회의록 11.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12.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 개편 보고서 (직업기초 교양 포함,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회의록 포함) 13. 역량중심 지속적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2021년, 2022년 작성) 14. 일반교양 고도화 방안 연구진 회의록 15.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관련 자료 16. 학과별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개편 재정지원 내역 17. 교육과정 개발 개편 보고서 개발 및 작성 관련 기안 협조문 18. 교양 교과 목록(2021. 2022학년도) 19.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진단결과 보고서(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2021년) 20. 전문대학_기초교양교육_컨설팅(집합형)_사전진단보고서(21년 22년 내용으로 제출한 서류)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관련 규정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운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8장 교과 및 이수, 제9장 성적평가 및 졸업, 학칙 시행규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의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제7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제5조(임무),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지침 - 교육과정 운영 (입증자료 1, 2) ·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며 학기당 15학점 이상 24학점 이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학점 인정에 대한 규정 명시 · 주간, 야간, 계절학기, 현장실습 원격 수업 등 운영 방법이 있고 세부 운영 방법에 대해 총장이 정할 수 있음 · 학생은 결석일수가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 F로 처리하며, 단 규정에서 정하는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학업 평가는 중간, 기말, 수시시험 외에 1회의 추가시험을 인정할 수 있으며, 100점 만점으로 교과목 성적이 D° 즉 60점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의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교양은 일 |

반교양과 직업기초능력으로 분류하여 운영

-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은 각 학과에서 운영되고, 일반 교양교육과정은 교육혁신지원센터 주관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개발하고 교무처에서 운영함
- 일반교양은 NCS지원센터와 교육혁신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여 개발·운영·평가·개선·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음 (입증자료 4, 13)
-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교육과정의 운영도 이 지침의 프로세스를 따름
- 수업설계: 강의계획서, 프로파일, 평가계획서
- 수업운영: 자가진단평가, 사전 사후 진단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 수업평가: 능력평가 의무 2회 이상과 출석점수로 평가계획서에 따른 성취도 판정

b) 추진체계 (입증자료 3, 4, 5, 6, 7, 8, 10, 12)

- 우리대학에서는 교무처의 교무팀, 교육혁신지원센터(NCS지원센터)의 교육혁신지원운영위원회를 통해 직업기초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운영·평가·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체계화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하며,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문함
- 교육혁신지원센터(NCS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걸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
-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양 교육과정 편성, 개정 등에 대한 심의
- 대학평의원회: 교육과정 운영 자문
-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직업기초 교양) (입증자료 8, 12)
- 각 학과는 전공 교육과정 외에 전년도 교육과정을 환류하고 산업체 요구조사에 따라 학과별 직무에 적합한 직업기초 교과를 선정하고 운영
- 역량중심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입증자료 13)
- 교육혁신지원센터(NCS지원센터)는 일반교양 고도화 방안 연구진을 선정하여 보편적 교양의 소양에 맞는 일반교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함
- 우리대학은 일반교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1년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양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인지하여 차년도 일반교양 교육과정을 개발에 반영하였으며, 다시 2021년, 2022년에 운영한 교양교육 컨설팅을 신청하여 개선·환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입증자료 19, 20)

c) 운영 실적 (입증자료 12)

- 직업기초 교양은 NCS기반의 교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교양 교과는 우리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시대적 변화와 인문학적 기반의 보편적 교양 교과가 다수 개발되어 운영됨
- 직업기초 교양 편성 현황(총 10개 교과 운영)
- 2021년: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2022년: 창의적 글쓰기와 말하기, 수리능력, 문제해결 프로젝트, 자기개발능력, 인적물적 자원 관리, 셀프리더쉽과 대인관계, 컴퓨터 기초, 협업과 경영, 현대사회와 민주시민
- 직업기초 교양은 NCS기반의 교과로 운영하였으나 2021년 기초교양 컨설팅 후 시대적 변화와 교양 교과에 적합한 교과목으로 변경되어 운영됨
- 일반교양 편성 현황(입증자료 13, 18)
- 2021년 : 26개 교과 개설됨
- 2022년 : 33개 교과 개설됨
- 직업기초 및 일반 교양교육 운영을 위한 지원 내용
- 우리대학은 직업기초 교과의 전공 연계를 위해 각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운영을 위한 J-CESS 프로그램 지원,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개최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평가·환류 체계 확인 b) 평가·환류를 통한 개선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 제82조의4(평의원회 기능) 2.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3. 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 제4조(업무) 4. NCS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4.9.1.,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규정 부칙 2022년 8월 폐지) 제4조(업무)(22년8월 폐지) 5.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6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6.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7.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 8. 강의평가 운영 지침(내부 지침으로 강의평가 시행 협조문의 별첨 문서) 제7조 (결과 활용) 9. 강의평가 시행 협조문 10. 강의개선계획 관련 기안 및 협조문 11. 장안대 교육과정 환류체계 및 PCDA 그림 12.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관련 자료 13.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관련 지출 증빙 14. 만족도 결과 보고서_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15. 교육과정 품질 관리 개선 보고서 제출 안내(협조문) 16. 사전 사후 진단평가 협조문 17. 지속적 품질관리 개선 보고서_교과 CQI (협조문) 18. NCS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교육혁신 운영위원회 회의록 19. 일반교양 고도화 방안 연구진 회의록 20. 학과별 지속적 품질관리 개선 보고서 21. 대학_수준_지속적_교육_품질_관리_보고서 22.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보고서 샘플 (직업기초 교양 환류 포함) 23. 역량중심 지속적 일반 교양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24. 교육과정심의 위원회 회의록 25. 교육과정 품질관리 개선 보고서 제출 안내 협조문 26. 학과별 지속적 품질관리 개선 보고서 (직업기초 교양 포함) 27. 기초교양 교육 컨설팅 진단 결과 보고서 28.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사전 진단 보고서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평가·환류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5, 11, 22, 23) · 학칙 제82조4(평의원회 기능)에서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 자문 ·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규정에서 전체 교육품질의 개선 활동에 대한 조직 및 업무 분장을 정하고 있음 · 역량기반 교육과정 전담센터인 교육혁신지원센터(NCS지원센터)의 운영규정 제4조(업무)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의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제7조(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센터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하고 교육혁신센터의 환류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규정 제6조(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제11조(교양 및 직업기초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는 강의평가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개선·환류 - 교무팀은 직업기초 및 일반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하여 교 |

육과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환류

- 편성된 교육과정은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과별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 반영

·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교육만족도 계획, 조사, 결과 분석, 개선·환류 조치를 관리하고 있음 (입증자료 2, 6, 14)

- 교육만족도는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교무처, 산업체 만족도조사는 산학협력처에서 실시함

- 강의평가 운영지침 제7조(결과 활용) (입증자료 8, 9, 10)

· 강의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학습자가 학기당 2회의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70점 이하의 경우 강의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수법을 개선하도록 하는 지침에 명시하고 있음

b)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 (입증자료 10, 19, 20, 21, 25, 26, 27, 28)

-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

· 교과목 CQI, 학과 CQI, 학교 CQI의 체제로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을 분석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개선과 교육서비스 전반의 개선에 적용하여 환류하고 있음

·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환류의 방법과 이를 위한 J-CESS 프로그램 사용 안내를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설명회를 매년 개최함

- 교육 만족도조사

· 교양 교육과정의 평가와 환류를 위하여 교무처와 산학협력처 주관으로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의 만족도 조사와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유함

· 직업기초 교양은 각 학과에서 산업체 요구를 별도로 실시하여 개선·환류함

· 일반 교양은 일반교양 개발보고서를 통하여 별도로 교과 만족도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환류하며, 학생들의 교양교과목에 대한 요구조사도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환류함

-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를 위한 장안대학교 J-CESS 시스템 운영

· 학습자 역량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 학기 사전 사후 진단평가 실시

· J-CESS 시스템을 통해 교양 교과의 과목별 CQI를 작성하여 자체평가 및 개선에 반영

- 직업기초 및 일반 교양교육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교무처, 교육혁신지원센터, 산학협력처 등이 조직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c) 평가 및 환류 실적 (입증자료 19, 20, 21, 27, 28)

- 우리대학은 객관적인 교양교육 운영의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환류하고자 2021년도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2년도 일반 교양교육 개발을 실시하였음

· 시대적 변화와 교양교과에 적합한 교과목명으로 변경하여 운영함

· 2021년 : 보편적 일반교양의 취지에 맞도록 교과목명 변경과 직업기초 직무와 유사한 일반교양은 폐지(기초 통계 실무 등)

· 2022년 : 사회적 트렌드에 맞춘 과목명 개편 (세계 미식여행 등)

· 특이 사항으로 2학기에 화성시 지역학 교과가 한시적으로 화성시의 지원에 의하여 운영

· 직업기초 교양은 NCS기반의 교과로 운영하고, 일반교양 교과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시대적 변화와 인문학적 기반의 보편적 교양교과로 개발되어 운영됨

- 교과 CQI와 강의평가에 의한 환류로 70점 미만의 교수자는 교수법 개선 노력을 권고하여 강의 개선을 실시함 (입증자료 8, 9, 10)

- 학과의 특성에 따른 직업기초 교양 선택을 위하여 산업체의 요구조사를 반영한 직업기초 교양을 개편,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과 교육과정 개발보고서에서 환류되고 있음 (입증자료 2, 5, 22)

- 일반 교양교과는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발보고서에서 환류하고 있음 (입증자료 23)

· 시대상을 반영한 보편적 일반 교양교과의 개발 개편이 이뤄짐(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 만족도 조사와 요구조사가 반영된 교과 개발 개편이 이뤄짐(생활 속의 레포즈 등)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3.1 학사관리

3.1.1 학생선발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공정한 학생선발 기준을 공지하고 입학전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학생선발 기준 공시 및 대학 정보 제공 확인 b) 관련위원회 규정 준수 확인 c) 학생선발에 대한 차별 방지 입학정책 및 준수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신입생 모집요강(2021, 2022학년도) 2.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개정 2020.8.1.) 3. 입학공정관리위원회규정(시행 2011.5.1.) 4.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5. 입학공정관리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6. 대학 홈페이지 모집요강 게시 자료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학생선발 기준 공시 및 대학 정보 제공 - 우리대학은 입학전형 시행에 있어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의 ③항, ④항 및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일체를 준수하고 수립된 신입생 모집계획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경우 변경기간(교육부로부터 공문수령) 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의 심의 및 승인결과에 따라 해당 내용을 모집요강에 반영하고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 · 신입생 모집요강에 우리대학의 장점(기숙사, 취업프로그램, 장학금 등)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입증자료 1) b) 관련위원회 규정 준수 - 우리대학은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입증자료 2), 입학공정관리위원회(입증자료 3), 입학전형사정위원회,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입학공정관리위원회가 있음 · 입시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과 입학공정관리위원은 중복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당연직으로 입학공정관리위원에 입학전형 책임 부서장이 위촉되지 않음(입증자료 4, 5) c) 학생선발에 대한 차별 방지 입학정책 및 준수 - 우리대학은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특정학생 입학에 배제하지 않으며, 대학 교육 목표 및 모집요강(입학정책)에 의거한 전형을 운영함(입증자료 1) |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p>a) 충족 : 매년 신입생 충원율 평균(유동성 기준)*의 90% 이상 충족 *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하여 적용 * 다만 평가대상기간부터 평가 당해연도까지 모집정원(정원내)의 3%이상 정원감축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판정함</p> <p>b) 보완 :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정원감축 노력(3%미만) 또는 해당 지역의 고3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사유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p> <p>c) 미충족 : 보완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p>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2. 신입생 모집요강(2020, 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58.4%, 2022년 49.0%으로 충족기준(90%)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모집정원(정원내)의 3% 이상 정원감축의 실적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충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학년도 : $(1,383\text{명} / 2,367\text{명}) \times 100(\%) = 58.4\%$ 2022학년도 : $(1,043\text{명} / 2,130\text{명}) \times 100(\%) = 49.0\%$ · 정원 감축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학년도 : $(2,444\text{명} - 2,367\text{명}) / 2,444\text{명} \times 100(\%) = 3.25\%$ 2022학년도 : $(2,367\text{명} - 2,130\text{명}) / 2,367\text{명} \times 100(\%) = 10.0\%$ |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은 신입생 선발(모집)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확인 b) 신입생 모집 전형 평가 결과의 개선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제정 2001.9.17., 개정 2023.2.23.), 제5장 입학 2. 입학공정관리위원회규정(시행 2011.5.1.) 3.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시행 2011.5.1., 개정 2020.8.1.) 4.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규정(시행 2015.9.1., 개정 2020.8.1.) 5.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6. 입학공정관리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7. 입학전형사정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8.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9. 신입생 모집에 대한 학과의견 조사 기안문(2021, 2022학년도) 2021학년도 - 협조문 입학 제21호(2020.3.9.) 2022학년도 - 협조문 입학 제272호(2021.4.19.) 10. 입시결과 분석자료집(2021, 2022학년도) 11. 입학전형세부시행계획서(2021, 2022학년도) 12. 대학 홈페이지 입학전형영향평가결과 게시 자료(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 학생입학 관리 및 운영은 ‘학칙 제5장 입학’ 및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 규정에 의거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사정위원회,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학생모집 과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입증자료 1, 2, 3, 4) - 학생선발 과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평가는 입학공정관리위원회가 입학전형 자체 감사반 역할을 담당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사전, 중간, 사후 자체감사를 실시함(입증자료 2, 6) · 입시결과분석자료는 신입생 모집에 관한 학과 의견을 조사하고, 학과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차년도 입시정책에 환류됨(입증자료 5, 7, 9, 10, 11) - 신입생 충원을 제고 관련 계획 및 분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매년 입시결과 분석자료집을 작성,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입시홍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신입생 충원 활동을 함(입증자료 10) <p>b) 신입생 모집 전형 평가 결과의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전형평가 결과는 각 위원회별 위원과 학과, 입학팀이 모집 시기별 사정회의 등을 통해 공유되며, 입시결과 분석자료는 학과장 회의 시 회의 안건에 포함되어 각 학과 구성원들이 공감하게 한 후, 학과의견 반영 등을 통해 차년도 입시정책에 환류됨(입증자료 5, 6, 7, 9, 10) - 매 학년도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환류하고(입증자료 8),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입증자료 12), 이를 다음 학년도 입시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등 신입생 선발 활동 개선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입생 충원율을 향상 시키고자 함 |

3.1.2 학사 및 수업관리

| | |
|--------------------------------|--|
| 세부평가요소 | (1) 수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준수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학점 당 수업기간(시수) 준수 확인 b) 학생 출결관리 및 출석평가 기준 준수 확인 c) 휴·보강 관리 체계 및 규정 준수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 제16조(수업일수),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44조(출석의무), 제45조(출석인정) 2. 학칙 시행규칙 제4조(교과이수), 제10조(수업), 제14조(출석), 제15조(출석인정), 제16조(출석부 기재) 3. 교원복무규정 제7조(강의충실), 제10조(시험기풍 확립) 4. 수업운영규정 제8조(휴·보강), 제9조(수업운영 확인) 5. 교수업적평가규정 제4조(평가의 영역),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6.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제6조(강의부문) 7.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6조(출석관리) 8. 비대면수업 운영지침 제4조(교육방법) 9. 학기별 휴강 및 보강 허가원 (2021학년도 2022학년도) 10.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결과보고서(2021학년도) 11. 학기별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예시(2021학년도, 2022학년도) 12. J-CESS(역량기반 교육지원시스템) 출석점수 20% 연동화면 캡처 13. 장기결석자 및 출결 고위험군 학생상담 실시 관련 협조문 14. 강의평가 문항별 점수(2021학년도, 2022학년도) 15. 모바일 전자출결앱 학생사용 설명서(2021학년도, 2022학년도) 16. 학업성적처리규정 제4조(응시자격), 제11조(군입대휴학자의 성적인정)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학점당 수업시간 시수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생의 엄격한 출석관리 및 양질의 수업진행을 위하여 휴보강 관리, 수업 일수 준수 동수업을 관리운영하는 「학칙」 등을 갖추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입증자료 1, 2, 3, 4, 5, 6) -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있으며, 수업일수는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있음(입증자료 1, 2, 4) -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업이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비대면 수업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1학점당 온라인 콘텐츠 구성에 대해 안내하고 학기 종료시마다 과목별로 비대면 수업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음(입증자료 7, 8, 10) <p>b) 학생 출결관리 및 출석평가 기준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학칙 제44조(출석의무), 학칙 제45조(출석인정), 학칙 시행규칙 제14조(출석), 제15조(출석인정), 제16조(출석부 기재)에서 출결 관련 규정을 명시함 -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에 출결에 대한 제한, 출석점수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며 출결관리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도입한 모바일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교수가 매 교시마다 출결을 체크하도록 하고 모든 출결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음(입증자료 11) - 모바일 전자출결 시스템의 출석, 결석 회수에 따라 출석점수가 환산되고, 자동으로 J-CESS(역량기반 교육지원시스템)에 교과목성적 중 출석점수 20%가 연동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음(입증자료 12) - 모바일 전자출결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통해 학기마다 3주 단위로 고위험군 학생현황을 협조문을 통해 학과에 안내하고 있으며, 장기결석자 및 출결 고위험군 학생들을 담당 교과목 교수 |

및 지도교수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13)

- 매 학기마다 2회 실시하는 강의평가 항목에 출결관리 준수 관련 문항을 포함시켜 학생들을 통해서도 출결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함 (입증자료 14)

-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을 초과하여 출석한 학생에 한해 시험 실시 자격이 주어지며,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 수시고사를 응시한 자로서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할 자의 기말 성적은 휴학자 성적인정원을 제출하면 그 학기 내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을 100% 인정할 수 있음 (입증자료 16)

c) 휴·보강 관리 체계 및 규정 준수 확인

- 우리대학은 수업 기간 준수(휴·보강 관리 포함)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전체교수회의 및 협조문을 통해 매학기 시작 전 학사일정, 강의계획서 입력 안내, 수업 기간 및 휴·보강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휴·보강시에는 사전에 통합정보시스템(학사시스템)의 인사관리(휴·보강신청)에 담당교수가 휴·보강신청서를 작성하고, 교무팀에 휴강 및 보강허가원을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서 휴·보강을 진행함(입증자료 4, 9)

- 지정 보강 주간과 공휴일, 임시휴무 등의 경우 사전에 휴·보강 관련 협조문을 발송하여 다시 한번 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각 학과에서는 학과 게시판, 학과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강시간표를 게시함. 교수의 갑작스러운 휴강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가능한 지양하고 휴강 시 바로 조교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즉시 보강 계획을 잡아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함

- 모바일 전자출결시스템에서는 휴·보강이 이루어지면 담당교강사와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휴·보강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출결시스템 내에서 휴보강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입증자료 15)

- 보강 수업진행 상황은 교무처 담당자가 실시간 확인하고 있음. 또한 보강 후 전체 보강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함 (입증자료 9)

| | |
|---------------------------------|--|
| 세부평가요 소 | (2) 대학은 교원의 강의시수에 관한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강의시수 관련 규정 확인 b) 강의시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 교원의 범위 (전임, 강사, 비전임 포함)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 가 입증자료 | 1. 학칙 (제정 2001.9.17., 개정 2023.2.23.), 제42조(교수시간) 2. 수업운영규정(제정 1979.3.1., 개정 2020.3.23.), 제4조(수업시간 배정기준) 3. 강의시간표 편성지침(제정 2011.7.1., 개정 2022.8.29.), 제1조(주당 책임시수 등) 4. 교원복무규정 (제정 2011.5.1., 개정 2020.1.1.), 제9조(책임시간) 5.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6.3.1., 개정 2022.10.7.), 제3조(평가영역별 점수 배분) 6. 강사료지급기안 (2021학년도,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 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강의시수 관련 규정 - 우리대학은 교원의 수업시간 보장을 위해 주당 책임시간 및 강의료 관련 규정을 학칙 제42조(교수시간), 수업운영규정 제4조(수업시간 배정기준), 강의시간표 편성지침 제1조(주당 책임시수 등), 교원복무규정 제9조(책임시간)에 명시하고 있으며, 강의 시수 미달에 대하여는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제3조(평가영역별 점수 배분)에 의하여 감점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5) b) 강의시수 관련 규정 준수 - 학칙 제42조(교수시간)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만, 보직교원·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음 - 강의시간표 편성지침 제1조(주당 책임시수 등)에 의거하여 행정보직 및 학부장 및 학과장을 맡은 전임 교원에 한하여 3, 5, 7시간 시수로 책임시수를 경감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임교수의 경우 최대 18시간을 상한시수로 하나, 야간, 전공심화과정 또는 산업체위탁교육 별도학급 강의를 있을 경우 최대 21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음 · 겸임(초빙)교원의 경우 최대 9시간을 상한시수로 하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음 · 강사의 경우 최대 6시간을 상한시수로 하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9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음 · 전임교원의 경우 책임시수를 9시간으로 하나, 정년퇴직 전 마지막 학기(안식학기 제외)에는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6시간까지 책임시수를 조정하여 운영함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학기마다 주당 수업시간을 배정 및 확인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경우 주당 책임시수 초과분, 겸·초빙교원 및 강사의 경우는 시수당 강사료를 책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입증자료 6) |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은 학생의 수강 신청 지도와 학사경고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수강신청(재수강, 정정 포함)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수강 신청 지도 체계 확인 c) 학사경고 관리 체계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학칙 (제정 2001.9.17., 개정2023.2.23.), 2. 학칙 시행규칙 (제정 2011.3., 개정 2022.2.17.), 제9조(수강신청), 제31조(재수강) 3. 재수강규정(제정 2015.8.1., 개정 2015.9.1.) 제1조(목적), 제2조(수강신청), 제3조(신청교과목), 제4조(취득성적의 제한), 제5조(신청학점), 제6조(성적처리), 제7조(보칙) 4. 대학홈페이지 수강신청 안내 공지화면(2021학년도, 2022학년도) 5. 웹지원시스템 수강신청 예시 화면 6. 재수강신청안내 협조문 예시 7. 수강신청 확인원 예시 8. 학사경고자 관리지침(제정 2017.9.1.), 제2조(학사경고 대상), 제3조(학사경고자 명단통보), 제4조(지도관리) 9.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수강신청(재수강, 정정 포함) 관련 규정 및 준수 - 우리대학은 학칙 제43조(수강신청), 학칙 시행규칙 제9조(수강신청), 제31조(재수강), 재수강 규정으로 수강신청 관련 규정을 명시함 -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지 못함(입증자료 1. 학칙 제43조(수강신청), 2. 학칙 시행규칙 제31조(재수강)) - 이미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수강할 수 있음(입증자료 1. 학칙 제43조(수강신청)) - 재수강 신청과목에 대한 성적은 B+등급까지 인정함(입증자료 1. 학칙 제43조(수강신청), 3. 재수강규정 제4조(취득성적의 제한)) - 재수강하는 교과목의 신청학점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입증자료 3. 재수강규정 제5조(신청학점)) b) 수강 신청 지도 체계 - 수강신청 기간 및 절차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과 협조문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수강신청기간내에 웹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모든 수강신청 내역은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입증자료 4, 5) - 수강신청 기간내에는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이하 등급인 교과목은 재수강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및 지도하고 있고, 수강신청 완료 후에는 수강신청확인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이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고 있음(입증자료 6, 7) c) 학사경고 관리체계 - 학사경고 대상 :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자로서 매학기 평점평균이 1.0미만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하고 있음(입증자료 1. 학칙 제60조(학사경고), 2. 학칙 시행규칙 제35조(학사경고), 8. 학사경고자 관리지침 제2조(학사경고 대상)) - 교무팀에서는 당해학기 성적처리가 마감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각 학과 및 관련부서에 학사경고자 명단을 통보하여 지도관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함(입증자료 8. 학사경고자 관리지침 제3조(학사경고자 명단통보)) - 지도관리 : 학사경고자 관리를 위해 교무팀에서는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학과에 학사경고자 명단을 통보하며, 학사경고대상자에게 학업성적표를 우편발송함(입증자료 8) |

-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수강신청 및 강의내용, 학습방법, 수업태도 등 학생과의 상담을 통하여 특별지도를 함
- 각 학과에서는 학사경고자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학사경고자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매 학기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학습태도, 학습동기 강화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대학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함(입증자료 9)
- 2021년 학사경고자 대상 밀착관리 프로그램인 전화상담은 총 233건 진행되었으며(1학기 121명, 2학기 112명), 1학기 전화상담 후 2학기 등록율은 36.4%, 경고 탈출 비율은 48%임
- 2022년 학사경고자 전화상담은 총 462건 진행되었으며(1학기 119명, 2학기 155명). 1학기 전화상담 후 2학기 등록율은 41.2%, 경고탈출 비율은 47%로 비슷한 양상을 보임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의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충족 : 80.0% 이상 b) 미충족 :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2. 대학정보공시 4-라-재학생 충원율 3. 장안대학교 모집요강(2019, 2020, 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우리대학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2021년 86.5%, 2022년 99.2%, 이며, 이는 정량지표 기준인 80.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2021년 : (3,694명/4,269명)×100% = 86.5% - 2022년 : (2,910명/2,933명)×100% = 99.2% |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해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재학생 관리 체계 확인 b)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평가 확인 c)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개선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정보공시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2. 대학정보공시 4-라. 재학생 충원율 3. 장안대학교 모집요강(2019, 2020, 2021, 2022학년도) 4. J-CAP 지도교수 학생상담실적(2021, 2022) 5. 대학생활 적응진단검사 결과보고서(2021, 2022) 6. 자퇴상담일지(2021, 2022) 7. 학사경고자 대상 전화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2021, 2022) 8. 부서발전계획서 9. 학과장회의자료 10. 학습컨설팅 11. 학생 등록 유지율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 자료 12. 학생 등록 유지율 제고 협의회 학생상담센터 보고 자료 13. [협조문]2021년도 교수업적평가 평가자료 제출 14. [협조문]2022년도 교수업적평가 평가자료 제출 15. (학생상담센터) 2021 교수업적평가 학생상담 및 진로상담 실적 16. (학생상담센터) 2022 교수업적평가 학생상담 및 진로상담 실적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재학생 관리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2021년 86.5%, 2022년 99.2%이며, 이는 정량지표 기준인 80.0% 이상을 충족함 (입증자료 1, 2, 3) - 우리대학은 'J-CAP 지도교수 학생상담실적' 도입을 통해 중도탈락 위험이 높은 학생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지도교수는 대학생활적응진단 검사 결과를 토대로 1차 기초상담을 진행하여 학생 니즈를 파악하고, 2차 전문상담에서는 학생상담센터, 경력개발지원팀, 학과 진로지도사 자격취득자 등이 진로지도, 진로상담, 및 심리상담등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대학생활의 적응을 지원함. 또한 지도교수의 J-CAP 학생상담실적은 교수 업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도교수의 학생 상담의 효율 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입증자료 4, 5) - '자퇴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상담센터에서 자퇴문제로 고민하는 재학생에게 진로상담을 제공하여, 자퇴의 원인을 분석하여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프로그램임 (입증자료 6) - '학사경고자 밀착관리 전화상담 프로그램'은 교무팀-학생상담센터-교수학습개발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되며, 전화상담 이후 다음 학기 등록을 한 학생에 대해 학과로 연계함으로써 학사경고자의 대학생활 전념 및 졸업의지를 강화하고 학과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이 상과 같은 프로그램의 결과로 재학생 충원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입증자료 7) <p>b)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 충원율 향상을 지원하는 주관부서는 학생지원처이며 산하기관인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자퇴생 감소와 재학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인 J-CAP (지도교수 학생상담실적) 적용검사, 지도교수 학생상담, 및 학사경고자 밀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 · 'J-CAP (지도교수 학생상담실적)'은 신학기에 3회에 걸쳐(3월, 5월, 9월) 실시되는 대학생활 적응 검사(1차: 학교에 대한 기대감 분석, 2차: 학교에 대한 만족도 분석, 3차: 진로 및 희망 분석)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한 후 지도교수가 1대1 개인 맞춤형으로 상담을 시행하여 재학생의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입증자료 4, 5) · '자퇴상담 프로그램'은 학과와 연계하여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을 학생상담센터 방문하여, 필요시 |

전문 상담자가 진로 상담을 제공함. 자퇴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자퇴원인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퇴 상담 절차를 통해 해당 학생에게 진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퇴율 감소를 위해 매달 학과 장 회의 시 자퇴 현황 및 자퇴상담 내역(타대학 진학, 전공불일치, 통학문제 등)을 공유 후 평가·개선 함 (입증자료6, 9)

· 학사경고자 밀착관리 프로그램은 교무팀, 학생상담센터, 및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 하는 프로그램임. 매 학기 교무팀에서는 학사경고 대상자를 학생상담센터로 연계하고, 학생상담센터에 서는 전문 상담자가 전화상담을 통해 학사경고자의 고충을 파악하여 졸업의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임 (입증자료 7)

· 아울러,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습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학사경고자들을 교수학습개발센터로 연계하 여 맞춤형 학습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학사경고자의 중도탈락 예방을지원함(입증자료 10)

- 다양한 재학생 충원을 향상 프로그램의 평가·개선을 통해 향후 학생역량개발시스템 등으로의 확장 기반을 마련하고, 학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 우리대학의 사명인 '창의적 전문직업인 양성'을 실 현함

c)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개선 실적 (입증자료 11, 12)

- 우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입학 자원의 부족현상 등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관리가 필수 적인 것을 감안하여 학생유지율(재학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1년 1학기 부터 'J-CAP'을 운영하며, 고도화하고 있음 (입증자료 8)

- 'J-CAP'은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요인별 대처방안의 수립을 통해 학생 중도탈락 방지 및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재학생에 대한 진단, 위험 요인별 분 류, 해당 요인에 맞는 효과적 개입을 위해 2014년 3,200천 원을 투자(장안케어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 약)하고 2015년 95,000천원을 투자, 2018년 15,000천 원을 투자(J-CAP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하여 학생유지율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상담관리, 경력관리, 취업관리, 현장실습 등 효과적인 상담관리 체 계를 구축함. 2021년에는 9,695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총 3,520건 시행, 2022년에는 7,371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총 2,932건을 시행하였음 (입증자료 5)

- 'J-CAP(지도교수 학생상담실적)'은 지도교수가 학생의 수요에 맞추어 개인상담, 자퇴상담, 진로상 담, 취업상담, 학업상담, 휴·복학상담 등 유형별로 1차 기초 상담을 진행하여 차후에 전담부서로 연계 하는 프로그램이며, 지도교수의 학생상담 실적은 교원의 업적평가에 반영하여 관리함. 지도교수 학생 상담실적으로 2021년은 총 12,261건(개인:2,578건, 자퇴:276건, 진로:2,695건, 취업:1,428건, 학 업:3,954건, 휴·복학:738건, 비대면:592)이며, 2022년은 총 10,971건(개인:2,107건, 자퇴:400건, 진 로:2,401건, 취업:1,172건, 학업:3,250건, 휴·복학:1,482건, 비대면:159)임 (입증자료 4, 13, 14, 15, 16)

· 2021년 J-CAP프로그램 상담건수 12,261건

· 2022년 J-CAP프로그램 상담건수 10,971건

- '학사경고자 밀착관리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신설하여 현재까지 고도화하고 있으며, 학사경고자 의 대학 졸업의지를 강화하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생상 담센터의 전문 상담자가 전화 상담을 통해 밀착 가이드함. 2021년 1,500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총 233명, 2022년에는 1,472천원을 집행하여 총 203명을 관리함 (입증자료 7)

3.1.4 학업 성취도 평가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학업 성취도 평가의 타당성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학칙(제정 2001.9.17., 2023.2.23.) 제9장 (성적평가 및 졸업) 2. 학칙 시행규칙(제정 2011.3., 개정 2022.2.17.) 제4장 (시험과 성적평가) 3. 학업성적처리규정(제정 2002.3.1., 개정 2022.8.30.) 4.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제정 2005.3.1., 개정 2020.3.23.) 제6조(이의신청 및 처리) 5. 수업운영규정(제정 1971.3.1., 개정 2020.3.23) 6.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1.21.) 7. 대학요람 중 교육과정표 (2021, 2022학년도) 8. 강의계획서 예시화면 9. J-CESS시스템 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예시화면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관련규정> - 우리대학의 학업성취도평가 기준을 학칙 제9장 (성적평가 및 졸업), 학칙시행규칙 제4장 (시험성적과 평가) 및 학업성적처리규정,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고, '수업 운영규정' 및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강의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5, 6) - 학생에게 사전 공지된 교육과정표(대학요람 중 교육과정표 (2021, 2022학년도)) 및 강의계획서(강의계획서 예시)에 교과목 교육목표와 성취수준(5단계기준)을 기반으로 시험성적, 과제 및 출결상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적절하게 평가함 (입증자료 7) - 특히,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경우 평가계획서에 학생이 성취해야할 구체적인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를 통해 직무능력 성취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입증자료 8) <성적평가 규정 지침> - 우리대학은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교육목표 및 성적평가)에 의거하여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분포 비율은 A+ ~ A° 40% 이하, B+ ~ B° 40% 이하 및 A, B등급이 80% 이하로 제한함 - 현장실습, 자격증 교과목 등 학과의 특성이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제외가 인정되는 경우 결재를 득한 후 절대평가를 할 수 있어 성적평가의 공정함과 신뢰성을 준수함 - 출석평가, 출결관리는 학칙과 출석조건표에 의한 출결점수 반영을 의무화하고 개선된 성적처리지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성적평가 기준을 준수함 <성적평가 시행> - '학칙 제9장 성적평가 및 졸업, 학칙 시행규칙 제4장 시험과 성적평가'에 의거하여 객관적인 성적 평가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계획서에 제시된 평가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를 시행함 - 성적 입력은 우리대학 역량중심 교육지원시스템(J-CESS)을 통하여 실시되며, 과정평가 및 중간, 기말평가 시 교과목 프로파일에서 설정한 능력단위에 따라 평가 결과를 각각 입력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어 과목에서 성취해야 할 능력별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입증자료 9) |

b) 학업 성취도 평가의 타당성 확인

- 우리대학의 학생은 '학칙 시행규칙 제4장 제28조(성적열람 및 정정)'에 의해 성적열람을 할 수 있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정요청을 할 수 있음
- '학칙'과 '학업성적처리규정,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이의신청 및 처리)'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함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학생에게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성과 부진 학생을 관리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성적 및 학점 부여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학생의 성적 열람 및 이의 제기 기회 제공 등 절차 준수 확인 c) 학습성과 부진 학생에 대한 관리 노력(실적 포함)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학칙 시행규칙 (제정 2011.3., 개정 2022.2.17.) 제28조(성적정정) 2. 학업성적 처리규정(제정 2002.3.1., 개정 2022.8.30.), 제8조(성적열람 및 정정) 3.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제정 2005.3.1., 개정 2020.3.23.), 제6조(이의신청 및 처리) 4. 학생성적 공지/열람, 성적정정 이의신청 절차 안내문 5. 성적처리지침(제정 2016.5.1. 개정 2022.6.20.) 6. 학기별 재학생 학업성적 결과보고서(내부결재) (2021, 2022학년도) 7.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성적 및 학점 부여 관련 규정 및 준수 - 우리 대학은 학생의 성적 열람 및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관련 내용을 ‘학칙 시행규칙 제4장 제28조(성적정정)’에 의해 성적열람을 할 수 있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음 (입증자료 1) - 위 규정과 ‘학업성적처리규정 제8조(성적열람 및 정정),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이의신청 및 처리)’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함 (입증자료 2, 3) b) 학생의 성적 열람 및 이의 제기 기회 제공 등 절차 준수 - 성적 이의제기는 성적열람 및 정정 규정에 의해 정정기간을 통해 정정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을 공지하여 학생들이 열람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함 (입증자료 4) - 성적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성적입력기간 및 성적 입력 유의사항 안내 /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공지 (교무처) → 성적 및 정정기간 확인 / 성적 정정기간 내 성적이의제기 / 성적 정정기간 이후 성적 정정신청서 작성 (학생) → 이의제기 확인 및 성적정정(교원) → 성적정정 후 교무처 제출(교원) → 성적 부여 적합성 검토 / 총장승인 후 성적 최종 확정(교무처) -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이후 성적평가 이의제기에 의한 정정은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생이 성적정정신청서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담당교수는 성적처리지침을 참조하여 정정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시험답안지, 성적표 사본, 기타 성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통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성적정정이 이루어짐 (입증자료 5) - 2021년에는 9건(성적전산입력오류 7건, 성적평가정정 2건)이었으며, 2022년 성적이의신청 및 정정건수는 총19건(성적전산입력오류 15건, 출석점수 기재오류 1건, 과제점수 미반영 3건)이었음 (입증자료 6) c) 학습성과 부진 학생에 대한 관리 노력 - 교무처에서는 당해학기 성적처리가 마감 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각 학과 및 관련부서에 학사경고자 명단을 통보하여 지도관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수강신청 및 강의내용, 학습방법, 수업태도 등 학생과의 상담을 통하여 특별지도를 함 (입증자료 6) - 매 학기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학습태도, 학습동기 강화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대학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학사경고자 대상 밀착관리 프로그램인 전화상담은 총233건 진행되었음(1학기 121명, 2학기 112명). 1학기 전화상담 후 2학기 등록율은 36.4%, 경고 탈출 비율은 48%임 (입증자료 |

7)

- 2022년 학사경고자 전화상담은 총 462건 진행되었음(1학기 119명, 2학기 155명). 1학기 전화상담 후 2학기 등록율은 41.2%, 경고탈출 비율은 47%로 비슷한 양상을 보임 (입증자료 7)
- 이와 같은 개입의 효과와는 별도로 재학생 충원율은 2021년 76.4%에서 2022년 65.2%로 소폭 하락함

3.1.5 원격수업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원격수업 운영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원격수업 지원 추진 체제 확인 c) 원격수업을 위한 시스템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정 2010.7.1. 개정 2022.1.1.2022.8.30.) 2.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1.4.1. 개정 2022.8.30.) 3.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1.5.1. 규정 2022.8.30) 4.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제정 2019.8.1. 개정 2023.3.2.) 5. 「CDL서포터즈 운영지침」 (제정 2011.8.1. 개정 2019.8.1.) 6. K-MOOC 이수강좌 학점인정 지침 (제정 2021.10.6.) 7.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대학간 공동 협약서 (2020.12.30. 2021.06.24. 2022.12.15. 2022.3.28.) 8. 수도권역 원격수업 학점교류 기안 (2021 2학기, 2022 1학기, 2학기) 9.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인프라 구축 완료 보고서 10. 수도권역 내 전문대학 대학원격교육협의회 위원 명단 11. K-MOOC 협의회 이사회 증빙 자료 (2021 전국대학협의회 현황, 173p) (2022 전국대학협의회 현황, 166p) 12. LMS 학습관리시스템 보유 현황 자료 (2021,2022학년도) 13. 원격수업 스튜디오 시스템 구축 현황 14. 장비 대여 관리 내역 15. 원격지원센터 지원조직 및 업무분장 (2021, 2022학년도) 16. 센터 운영위원회 및 수업관리위원회 위촉 기안 17.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18. 원격수업 운영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19.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20. 원격수업 운영자 선정(2021, 2022학년도) 21. 원격교육지원센터 부서발전계획서 22. 원격수업 최종결과 보고(2021, 2022학년도) 23. 원격교육지원센터 최종 결과보고 (2021, 2022학년도) 24. K-MOOC 학점 취득 자료 25. K-MOOC 모니터링 관련 자료 26. 원격수업 모니터링 자료(2021, 2022학년도) 27.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학점교류 28. 2021학년도 교수학습개발센터 부서발전계획서 29. 교무처 학과별 비대면 수업운영여부조사 2021년 1학기, 2021년 2학기 30. 원격교육 비교과 운영 협조문(2021, 2022학년도) 31. 정보정보보안 자료 32.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결과보고서 예시 33. 이러닝 강의계획서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원격수업 운영 관련 규정 및 준수</p> <p>－ 우리대학은 「원격수업운영규정」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원격수업 콘텐츠개발 운영지침」 을 마련하여 원격수업 시 이를 준수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p> <p>· 2021년 3월 31일까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함</p> |

- 2021년 4월 1일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을 공포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함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으로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전면 및 일부 개정을 시행함
 -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을 두어 원격수업의 콘텐츠 개발, 콘텐츠 활용 강의의 개설과 운영,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함
 - 원격교육 콘텐츠 품질 관리를 위한 「C.D.L.(Center for Distance Learning) 서포터즈 운영지침」을 두어 원격 수업 콘텐츠 개발을 지원함 (입증자료 5)
 - 원격수업 운영규정, 원격지원센터 운영규정 등을 두어 상위법인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2021.2.15.)」을 준수하고 있음
 - 원격수업의 분류 및 개설기준은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2조(용어 정의), 제4조(강의개설과 운영)에 규정함
 - 원격수업의 개설 운영, 학점인정은 「원격수업 운영규정」에 규정하여 준수함
 - 원격수업의 출석, 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입증자료 「1.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4조(강의개설과 운영), 제5조(수강신청), 제6조(출석관리), 제7조(학점인정), 제8조(학점평가), 제13조(강의자 선정과 철회), 제16조(강의과목 수의 제한))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운영위원회)에 의거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8조(관리위원회)에 의거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규정하여 운영함
 - K-MOOC, 원격수업 학점교류는 외부 콘텐츠는 이리닝으로 규정하여 학점을 인정 함(입증자료 1.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2조(용어정의) 2항)
 - 「K-MOOC 이수강좌 학점인정 지침」을 개설하여 준수함 (입증자료 6)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관리규정」에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LMS가 포함된 대학서버 로그인 시 스마트폰 2차 인증 시스템 (R-OTP) 설치, 세션타임아웃 보안을 적용을 하고 있음 (입증자료 31. 개인정보보안자료-장안대학교 서버보안시스템, 개인정보보안자료-개인정보관리규정,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제14조(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 b) 원격수업 지원 추진 체제
- <원격수업 지원 조직(원격교육지원센터 등) 및 업무분장>
- 우리대학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센터장 1인, 연구교수 1인, 조교 3인으로 구성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하였음 (입증자료 15, 21)
 - 우리대학은 2019년부터 K-MOOC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비대면 교육의 강화와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게 되었음
 - 2021년 4월 1일 원격교육지원센터가 개관하여 원격수업지원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운영함
 - 우리대학은 5인 내외로 구성된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원격교육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입증자료 2.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운영위원회), 16, 17)
 - 우리대학은 학생 3~4명, 교직원 3명을 포함한 11명 내외로 구성된 ‘원격수업 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관리 및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입증자료 2.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관리위원회), 2.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별표1), 4p 원격교육지원체제도, 21. 원격교육지원센터 부서발전계획서 5p 조직도)
 - 우리대학은 각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원격수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입증자료 15)
- 교무처 : 총괄
 - 원격교육지원센터 : 원격수업 개발 및 운영, K-MOOC 운영, 만족도 조사, 예산 계획 및 집행
 - 교무팀 : 원격수업 운영 지원
 - 정보지원센터 : 서버, DB, 하드웨어 관리, 시스템 백업, LMS 기능 개선 및 교내 타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 관리
 -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수·학습의 통합적 지원, 교육과정 개발,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 자문
 - 교육혁신지원센터 : 비교과 수업운영,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 자문

<외부 기관 원격교육지원 협조 체계>

- 우리대학은 2019년부터 K-MOOC사업에 선정되어 원격교육 콘텐츠 연구지원을 받음
- K-MOOC 협의회 이사교로 등록 하여 K-MOOC사업에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입증자료 11)
- 우리대학은 수도권역 대학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 협력을 협약하여 공동활용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음 (입증자료 7, 9)
-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 학점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2021년 2학기 37명, 2022년 1학기 38명, 2022년 2학기 49명 학점 교류 시행함 (입증자료 8)
- 수도권역 전문대학원격교육 협의회 위원으로 인프라 제공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입증자료 10)

<원격교육지원센터 위원회 활동>

- '원격수업 운영위원회'는 원격수업 교과목 및 운영자 선정 심사와 원격수업 연구개발비 지급 심의, 원격수업 개발 및 운영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의함 (입증자료 17)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원격수업 부서발전 계획 및 예산 편성안 논의, 원격수업관련 규정 변경, 관리위원회 구성 건, K-MOOC 운영현안 관련에 대한 활동을 함 (입증자료 18)
-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원격 수업 운영 조사, 모니터링, 타 학교 원격수업 운영 질관리 시스템에 관한 조사 등 교육 품질 관리에 관한 활동을 함 (입증자료 19)

c) 원격수업을 위한 시스템

<원격수업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 2021년 자체 원격수업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net System, LMS)인 E-CAMPUS에서 J-CAMPUS로 교체
 - 학습관리시스템과 J-Campus 통합한 시스템 개발로 콘텐츠 관리와 출결 연동 관리기능탑재 (입증자료 23. 원격교육지원센터 최종 결과보고 2021, 10p)
 - CDN서비스 도입으로 코로나 기간 안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앱지원, 온라인 시험 기능, 동시접속 5,000명 구축
 - 수업 운영 관리(50분 이상 구성시 작동) 시스템 구축
- 원격수업을 위한 이러닝 스튜디오 5개를 구축하여 운영함 (입증자료 13)
 -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라이브 스튜디오 구축
 -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공동활용 셀프 스튜디오 구축
 - 배경 합성이 가능한 크로마키 스튜디오 2개 구축
 - 조종실 스튜디오 1개
- 이러닝 수업을 위한 기자재 장비 대여
 - 인공지능 AI 카메라 22대, 웹캠 180대, 무선마이크 6개, 스마트패드 18대 등 대여용 기자재 지원 (입증자료 14)
- 본인인증 및 보안은 대학 홈페이지 로그인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2차 인증시스템(R-OTP)을 적용하고 있음 (입증자료 31)

<원격수업 지원(행·재정적) 실적>

- 원격수업 운영비 지원 (입증자료 23)
 -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비로 288,004,979원을 지원하였음.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로 40,924,779원,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비 2,505,000원, CTK서포터즈 운영비 865,000원, 전문대학 비대면 콘텐츠 개발지원금으로 108,069,780원, K-MOOC 개별강좌 재운영 22,818,580원, K-MOOC 묶음강좌 재운영 328,380,000원을 지원함
 - 2022학년도 원격수업 운영비로 121,086,569원을 지원하였음.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로 40,924,779원, 조직체계화 776,000원, K-MOOC 개별강좌 재운영 13,500,000원, K-MOOC 묶음강좌 재운영 65,885,790원을 지원함(입증자료 23)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원격수업에 관한 학사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수업을 관리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원격수업 출결 관리 체계 확인 b) 원격수업 평가 관리 체계 확인 c) 원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 체계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정 2010.7.1. 개정 2022.1.1.2022.8.30.) 2.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1.4.1. 개정 2022.8.30.) 3.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1.5.1. 규정 2022.8.30) 4.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제정 2019.8.1. 개정 2023.3.2.) 5. 「CDL서포터즈 운영지침」 (제정 2011.8.1. 개정 2019.8.1.) 6. K-MOOC 이수강좌 학점인정 지침 (제정 2021.10.6.) 7.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대학간 공동 협약서 (2020.12.30. 2021.06.24. 2022.12.15. 2022.3.28.) 8. 수도권역 원격수업 학점교류 기안 (2021 2학기, 2022 1학기, 2학기) 9.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인프라 구축 완료 보고서 10. 수도권역 내 전문대학 대학원격교육협의회 위원 명단 11. K-MOOC 협의회 이사회 증빙 자료 (2021 전국대학협의회 현황, 173p) (2022 전국대학협의회 현황, 166p) 12. LMS 학습관리시스템 보유 현황 자료 (2021,2022학년도) 13. 원격수업 스튜디오 시스템 구축 현황 14. 장비 대여 관리 내역 15. 원격지원센터 지원조직 및 업무분장 (2021, 2022학년도) 16. 센터 운영위원회 및 수업관리위원회 위촉 기안 17.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18. 원격수업 운영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19.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20. 원격수업 운영자 선정(2021, 2022학년도) 21. 원격교육지원센터 부서발전계획서 22. 원격수업 최종결과 보고(2021, 2022학년도) 23. 원격교육지원센터 최종 결과보고 (2021, 2022학년도) 24. K-MOOC 학점 취득 자료 25. K-MOOC 모니터링 관련 자료 26. 원격수업 모니터링 자료(2021, 2022학년도) 27.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학점교류 28. 2021학년도 교수학습개발센터 부서발전계획서 39. 교무처 학과별 비대면 수업운영여부조사 2021년 1학기, 2021년 2학기 30. 원격교육 비교과 운영 협조문(2021, 2022학년도) 31. 정보정보보안 자료 32.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결과보고서 예시 33. 이러닝 강의계획서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원격수업 출결 관리 체계</p> <p><원격수업 출결 관리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원격수업 출결관리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입증자료 1. 원격수업운영규정 제6조(출석관리), 제9조(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 신규 LCMS J-CAMPUS 구축으로 학습관리시스템과 통합하여 전자출결 자동 연동 운영함 · 주차별 학습시간내에 시청하고, 학습활동(과제물, 퀴즈, 토론 등)으로 함께 50분 수강시 출석 |

으로 인정됨

- 실시간 기반 원격수업은 담당교수가 매 시간마다 실시간 출석을 기재함
- 원격수업의 출결,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음 (입증자료 33. 이러닝 강의계획서 1~7p)

<원격수업 강좌 현황>

- 원격수업 신규 콘텐츠 개발 현황 (입증자료 22)
 - 2021학년도 : 화물운송론, 체육측정평가, 스포츠영양학, TOEIC(4), 환경독성학
 - 2022학년도 : 물류 ERP(1),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패션 스타일리스트
- 교내 LMS로 운영한 원격수업 강의 활용 현황 (입증자료 22, 23)
 - 2021학년도 1학기 : 학생수 573명, 이러닝 재운영(7과목), K-MOOC 콘텐츠 활용(2과목), 신규운영(1과목)
 - 2021학년도 2학기 : 학생수 889명, 이러닝 재운영(7과목), K-MOOC 콘텐츠 활용(4과목), 신규운영(4과목)
 - 2022학년도 1학기 : 학생수 471명, 이러닝 재운영(5과목), K-MOOC 콘텐츠 활용(4과목), 신규운영(1과목)
 - 2022학년도 2학기 : 학생수 644명, 이러닝 재운영(7과목), K-MOOC 콘텐츠 활용(3과목), 신규운영(2과목)
- 플립러닝 운영 현황 (입증자료 23)
 - 2021학년도 1학기 : 학생수 425명, 신규개발 6과목
 - 2021학년도 2학기 : 학생수 526명, 신규개발 6과목
 - 2022학년도 1학기 : 학생수 227명, 신규개발 4과목
 - 2022학년도 2학기 : 학생수 251명, 신규개발 4과목
- 원격교육(LMS)을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입증자료 30)
 - 2021학년도 식품영양학과 자격증특강, 창업특강 등 8회 원격교육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함
 - 2022학년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등 17회 비교과 원격교육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함
- K-MOOC 이수강좌 학점인정 현황(1학점 인정, 성적 평가 P 부여) (입증자료 24)
 - 2021학년도 1학기 7명, 2학기 3명 / 2022학년도 1학기 5명, 2학기 7명 이수
- 수도권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학점교류(1학점 인정, 성적 평가 P 부여) (입증자료 8)
 - 2021학년도 2학기 37명 / 2022학년도 1학기 38명, 2학기 50명 이수
- COVID-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강좌 운영 (입증자료 29)
 - 2021학년도 1학기 : 대면강좌 714과목, 동영상콘텐츠 강좌 467과목, 실시간 온라인 강좌 70과목, 혼합형 강좌 240과목을 운영
 - 2021학년도 2학기 : 대면강좌 411과목, 동영상콘텐츠 강좌 366과목, 실시간 온라인 강좌 106과목, 혼합형 강좌 590과목을 운영
 - 2022년 이후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함

b) 원격수업 평가 관리 체계

<원격수업 강의계획서 및 관리 체계>

- 「원격수업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제4조(원격수업의개설)」에 의하여 과목 개설 전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며 제출하며, 심의를 통하여 운영 대상 과목을 선정함
-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강신청, 재수강, 성적평가, 출석 관련 사항은 출석수업과목과 동일하게 적용함 (입증자료 1.원격수업 운영규정 제5~8조)
- 우리대학은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는 대면 수업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음
- 강의계획서내에 주차별 강의 계획, 평가 기준, 평가 내용을 명시함 (입증자료 33. 이러닝 강의계획서)
- 출결은 J-CAMPUS(LMS)시스템상 출석 관리가 가능하며 교내 출결시스템과 자동 연동하여 관리함 (입증자료 32.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결과보고서 예시, 출석 17-19p)
- 우리대학은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 학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함 (입증자료 23. 원격교육지원센터 최종 결과보고 2021 2022, 학생만족도조사 3p, 내부평가

8p)

- 담당교수는 제출 과제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하고, 피드백을 학생에게 제시함. (입증자료 32.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결과보고서 예시, 14-15p)
- 교과목 운영결과보고서에 운영결과, 과제출제, 시험퀴즈, 팀 프로젝트 등 학습활동내역을 작성함 (입증자료 32.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결과보고서 예시, 온라인학습활동 제시 내역, 14p)

c) 원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 체계

<원격수업 콘텐츠 질 관리>

- 우리대학은 원격수업 질관리에 대한 규정과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갖추고, 규정에 의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음
 - 신규 개발 원격수업 교과목은 사전 신청 후 원격수업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교과목을 선정함 (입증자료 4.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운영지침 (제4조 원격수업의 개설)-2항, 20. 원격수업 운영자 선정 2p 평가표, 2021. 2022, 18. 원격수업 운영위원회 회의록)
 - 학생 및 교직원, 교수로 구성된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에서 원격수업 모니터링(1-15주차 전체)을 시행 후 결과 및 보완사항을 담당 교수에게 전달함 (입증자료 26. 모니터링 자료 2021 2022, 19. 원격수업 관리위원회회의록)
 - 1학점당 콘텐츠 학습 25분과 퀴즈 토론 등 상호작용 시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시간을 규정하며, LMS에 50분 이상 수업 구성시만 수업 공개가 되도록 설정함. 또한,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수업시간 준수에 대하여 모니터링함 (입증자료 1. 원격수업 운영규정 (제9조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26. 원격수업 모니터링 자료)
- 우리대학에서 제작한 K-MOOC는 모니터링단(교수) 및 프렌즈(학생)모니터링 단을 통하여 검수를 시행함(입증자료 25. K-MOOC 모니터링 검수서, 25. K-MOOC 모니터링 지급)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우리대학은 2010년 원격수업 운영체제 구축 후, 매년 원격수업 강의와 플립러닝 콘텐츠를 개발하였음(입증자료 23. 원격교육지원센터 최종 결과보고 2021 2022, 2p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 신규 이러닝 콘텐츠 개발은 2021학년도 5과목(화물운송론, 체육측정평가, 스포츠영양학, TOEIC(4), 환경독성학), 2022학년도 3과목(물류 ERP(1),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패션 스타일리스트)을 지원함
 - 신규 플립러닝 콘텐츠는 2021학년도 1학기 6과목, 2021학년도 2학기 6과목, 2022학년도 1학기 4과목, 2022학년도 2학기 4과목을 개발하였음
- 교외 연계 원격수업으로 K-MOOC,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 학점교류 교과목을 제공함
 - 2021년 K-MOOC 개별강좌 2과목, 묶음강좌 2강좌(10과목), 2022년 K-MOOC 개별강좌 1과목, 묶음강좌 1강좌(5과목), 수도권역 대학원격교육 학점교류 2과목의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함

<원격수업 및 콘텐츠 개발·확보 지원실적>

- 우리학교는 2021년 원격수업 운영비로 288,004,979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원격수업 운영비로 121,086,569원을 지원하였음 (입증자료 23. 원격교육지원센터 최종 결과보고 2021, 2022)
- 교비, K-MOOC 지원비, 전문대학 비대면 콘텐츠 개발지원금으로 자원 확보함
- 2022년 수도권역 원격교육지원센터 지원으로 스튜디오 구축함 (입증자료 9. 수도권원격교육지원센터 인프라 구축 완료보고서)

3.2 교수학습

3.2.1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교수학습지원 추진 체제 확인 b)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수, 학생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내용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제정 2011.5.1, 개정 2022.8.30.) 2.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침(제정 2009.1.1, 개정 2022.8.1.) 3. 교수학습개발센터 업무분장 (2021, 2022) 4.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시행 기안 및 회의록(2021, 2022) 5.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예산 편성 자료(2021, 2022) 6.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2021, 2022) 7.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지원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의견수렴 수요조사 관련 자료(2021, 2022) 8.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및 부서발전 계획서(2021, 2022) 9. 기타 기관 교수법 교육 안내 협조문(교수학습-557호),(교수학습-690호)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교수학습지원 추진 체제 - 교수학습 지원 조직 및 업무분장 (입증자료 3) · 우리대학은 교무처 산하의 부속기관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두고,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향상과 학습증진 목표달성, 교수자의 교수역량 향상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전담인력(센터장1명, 직원1명, 조교1명)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1학년도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는 강○○, 김○○, 이○○, 선○○, 성○○로 구성 · 2022학년도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는 양○○, 배○○, 김○○, 김○○, 이○○로 구성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결과, 교육연수자 선정을 심의하고 있음 (입증자료 4) -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규정(또는 지침)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에 센터장, 운영위원회, 전문 인력의 임기, 역할, 운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음 (입증자료 1) ·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수지원프로그램, 학생지원 프로그램, 교수·학생 공동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운영기간, 운영절차, 지원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준거하여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실행,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짐 (입증자료 2) - 교수학습 지원 계획(서) ·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매년 각 프로그램마다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5) ·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매년 각 프로그램마다 사업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고 논의 및 제고사항 등 차 연도에 환류계획으로 반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6) b)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수, 학생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내용 - 교수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수요 조사 관련 자료 · 우리대학은 학년도 초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분석과 개별 프로그 |

램 종료 후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 분석을 실시함 (입증자료 7)

- 교수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분석 후, 중요도에 대한 고려와 학내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평가·환류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교수의 교수역량 향상을 위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2021년 5,361,400원, 2022년 5,455,4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수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
 - 편성된 예산 중 수요조사 결과, 특강 주제를 선별하여 교수법 특강(2021년 1,701,600원, 2022년 2,098,200원)을 진행함
 - 교원의 교육기관 다양화 요구조사에 따라 2022학년도 2회 타 대학 및 교육부 연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수법 교육을 지원함

-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수요 조사 관련 자료 (입증자료 8)

- 우리대학은 학년도 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분석과 개별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 분석을 실시함
-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분석 후, 중요도에 대한 고려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연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평가·환류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학습동기 서비스를 제공함
- 학생의 학습역량 향상을 위해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2021년 35,476,600원, 2022년 23,799,5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
 - 편성된 예산 중 수요조사 결과, 특강 주제를 선별하여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학습법 특강(2021년 1,034,000원, 2022년 1,200,000원)를 지원함
 - 학생의 요구도 수렴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특강 참여 시간을 늘일수 있도록 학습법 특강을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함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학생의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개선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 지원 실적 확인 b) 학습역량 강화 지원 실적 확인 c) 학습역량 강화 지원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제정 2011.5.1, 개정 2022.8.30.), 제 4조 2.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침(제정 2009.1.1, 개정 2022.8.1.), pp.16 3. 장안 역량중심 교육지원 시스템 사용 설명서, pp.76~85 4. 2021학년도 학습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부분), pp.19~27 5. 2022학년도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결과보고 6. 학습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2021, 2022) 7.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관련 자료(2021, 2022) pp.13~19, pp.~28~33 8. 평가 결과의 환류(개선)실적 자료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기초학습능력 진단 및 향상 지원 실적 -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내용 · 우리대학은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신입생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고 전공기초능력 향상의 일환으로 비교과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함 (입증자료 1, 2) · 신입생은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J-CESS(역량 중심 교육지원시스템)를 활용하여, 국어, 영어, 수학, 수학(공학)에 대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향상도 체크 후 결과를 통해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지원함 (입증자료 3) ·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J-CESS(역량 중심 교육지원시스템)의 체계적인 결과 분석을 통해 차년도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반영함 -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및 교육 운영 관련 실적 (입증자료 4, 5) · J-CESS(역량 중심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초학습능력 사전평가를 실시하며 국어 55점 이하, 영어, 수학, 수학(공학) 40점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 온라인강의(10주차)를 지원함 · 기초학습향상 사전평가 실시 후 기준점수 하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별로 학과장 수강지도계획을 받아 학과차원에서의 학습지도관리가 이뤄짐 · 기초학습향상 21학년도 성과지표 참여학과 32개 학과 / 실적 32개 학과 목표달성함 · 기초학습향상 22학년도 성과지표 참여학과 37개 학과 / 실적 37개 학과 목표달성함 · 2021학년도 전체 신입생 1,300명이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초학습향상 대상자 301명이 이수하였음 · 2022학년도 전체 신입생 1,156명이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초학습향상 대상자 489명이 이수하였음 · 평가 대상 기간인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790명이 기초학습능력을 수료함 b) 학습역량 강화 지원 실적 (입증자료 6) - 학습역량강화 지원 실적(행재정적 지원 내용 포함) · (행정적)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장안튜터링, 학습법특강, 학습컨설팅, SMART 프레젠테이션 아카데미, JCC(Jangan CTL Contest) 프로그램을 갖추어 운영되어지고 있음 · (행정적)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고 학습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 (행정적) 소수집단을 위한 학습역량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을 위한 학습권 보장 포스터 제작, 유학생 및 만학도를 위한 발자국 튜터링 신규개설을 통하여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도모함

- (재정적) 2021학년도 교비 집행금액 35,476,600원으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 (재정적) 2022학년도 교비 집행금액 23,799,500원으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 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계획 대비 실적

- 2021학년도 목표계획 10개 프로그램 1,882명 참여 / 실적 10개 프로그램 4,043명 참여함
- 2022학년도 목표계획 06개 프로그램 1,540명 참여 / 실적 06개 프로그램 1,668명 참여함

－ 성과지표 참여자 및 수료자 수 지표만 포함

－ 2022학년도 학생의 참여율이 감소하였지만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하여 2022학년도부터 국어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 기존에 진행했던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다져 6개 프로그램으로 축소하여 운영 방안이 밀도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함

·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기초학습분야 특징을 살려 자기주도학습법, 리포트작성법, 집중력학습법 등과 같은 학습법특강을 제공하여 기초학습동기부여 및 학습법에 대한 제고를 높이고 지원함

· 재학생들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핵심역량 기반으로 자기주도학습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습력 증진을 지원함

c)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지원 평가 및 개선 실적 (입증자료 7, 8)

－ 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평가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학습지원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각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결과보고를 작성하고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난 연도 평가 결과에 제시된 환류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차년도 환류계획을 세움

· 결과보고서의 ‘프로그램 우수사항’과 ‘프로그램 개선사항’ 항목은 각 프로그램 진행 후 실시된 만족도 평가 설문지의 주관식 항목인 ‘본 프로그램에서 도움이 된 사항’과 ‘아쉬운 사항’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취합하여 프로그램 담당자의 의견과 함께 반영함

－ 평가 결과의 환류(개선) 실적

· 소수집단(장애학생, 외국인유학생, 만학도,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학습역량 지원을 위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규기획하여 학습증진을 도모함

－ 장안튜터링- ‘발자국 튜터링’ -소수집단 대상 튜터링 신규기획

－ 학습법특강- ‘소수집단을 위한 학습권보장 포스터 제작’ 신규제작

· 공모전 및 우수사례 축적과 확산을 위하여 SNS 홍보

－ 교수학습개발센터 인스타그램 신규 개설

－ 전공모아 앱, 장안대학교 유튜브 등 홍보 방안 확대

· 학생상담센터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프로그램을 연계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도모함

－ 학습컨설팅- 학사경고자 연계를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PT경진대회’를 기획하고 자율 주제로 참여자들에게 사회역량 개발 및 스피치 노하우를 제공함

－ SMART프레젠테이션- ‘PT 경진대회’ 기획 후 참여자 확대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은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개선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강의평가 규정 및 실시 확인 b)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 확인 c)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 지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제정 2006.3.1, 개정 2022.10.7.) 제 6조 2. 비대면 수업관련 교무위원회 회의록(2021.2.18.),(2021.8.24.) 3. 비대면 수업 운영여부 조사 협조문(교무팀-842호),(교무팀-1599호) 4. 비대면 수업 운영 결과보고서 양식 및 보고서 5. 강의평가 문항 및 실시 자료(2021,2022) 6. 강의평가 결과보고 기안 및 개선계획 관련 자료(2021,2022) 7.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제정 2006.3.1, 개정 2022.10.7.) 제 3조 8. 교수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2021, 2022) 9.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제정 2011.5.1, 개정 2022.8.30.) 제 4조 10.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침(제정 2009.1.1, 개정 2022.8.1.), pp.1~8 1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21, 2022) 12. 교수지원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2021, 2022) 13.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관련 자료(2021, 2022) pp.8~12, pp.25~27 14. 2022학년도 교수학습연구대회 관련 자료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강의평가 규정 및 실시 - 강의 평가 규정(또는 지침) · 우리 대학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 6조에 따라 대학홈페이지의 웹지원 시스템을 통해 강의평가를 실시함 (입증자료 1) - 강의평가 실시 현황 · 2021학년도 강의평가 총 6건(1학기 2회, 2학기 2회, 여름 계절학기1회, 겨울 계절학기 1회) 실시함 (입증자료 5) · 2021학년도는 COVID-19 상황에 따라, 1학기에는 비대면강의, 2학기에는 대면과 비대면강의 병행으로 수업강의평가 체계를 대면과 비대면 수업 운영에 부합하도록 변경·운영하였으며, 강의평가 항목은 ‘학생자기평가’, ‘수업준비’, ‘수업내용’, ‘수업평가’, ‘교과목 만족’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된 문항을 활용함 (입증자료 2, 3, 4) - 2021학년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수업에 대한 교수자 스스로의 성찰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자가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비대면 수업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의 개선에 활용하도록 지원함 · 2022학년도 강의평가 총 6건(1학기 2회, 2학기 2회, 여름 계절학기 1회, 겨울 계절학기 1회) 실시함 - 2022학년도 강의평가 항목은 ‘학생자기평가’, ‘강의준비’, ‘수업운영(내용·방법·평가)’, ‘출결관리’, ‘수업평가’, ‘교과목만족’ 여섯 영역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 b)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 - 강의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활동 (입증자료 6) · 2021학년도에 실시된 강의평가 결과는 1학기 89.5점, 2학기는 88.7점으로 나타남 · 2022학년도에 실시된 강의평가 결과는 1학기 : 89.9점, 2학기 : 89.1점으로 나타남 - 2022학년도의 경우 2021학년도 강의평가보다 다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됨 ‘강의 준비’, ‘수업 운영’, ‘출결관리’ 등의 강의평가 항목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대학의 교수자들이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운영하였으며 매주 철저한 출결 관리와 휴/결강 시 철저한 보강이 이루어지는 양질의 수업을 운영하였음을 나타냄 |

- (행정적) 강의평가 이후 교수자는 우리대학 웹지원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강의평가 내용을 소속 학과 및 학부의 평균과 비교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강의에 대한 수준 점검과 함께 이를 강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행정적) 학기별 실시되는 1차 강의평가는 교수자에게 수업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 강의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행정적) 우리대학에서는 강의평가 결과를 교수법 교육 및 교원업적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입증자료 7)
 - (행정적) 2021학년도 경우 강의개선이 요구되는 중복인원 제외한 6명의 전임교수 중 3명이 강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함
 - 교수법 특강, 교육연수, 티칭과워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0%의 참여율을 달성함
 - (행정적) 2022학년도 경우 강의개선이 요구되는 6명의 전임교수 중 5명이 강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참여함
 - 교수법 특강, 교육연수, 전달연수, 교수학습연구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83%의 참여율을 보임
 - (재정적) 2021학년도 교비 집행금액 5,361,400원으로 교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 (재정적) 2022학년도 교비 집행금액 5,455,400원으로 교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 교수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 실적
 - 2021학년도 목표계획 04개 프로그램 458명 참여 / 실적 04개 프로그램 304명 참여함
 - 2022학년도 목표계획 04개 프로그램 472명 참여 / 실적 04개 프로그램 526명 참여함
 - 5개의 교수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티칭과워업 프로그램, 교수법 특강 및 세미나, 교원학습공동체, 교수학습연구대회, 교육연수)을 운영하고 있음
 - 2021학년도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수자의 강의역량 향상프로그램 86.8%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5,361,400원을 지원함
 - 2022학년도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수자의 강의역량 향상프로그램 90.6%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5,455,400을 지원함
- c)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 지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 교수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 평가 (입증자료 8, 11, 12, 13, 14)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교수지원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참여자 만족도는 80%~90%대의 수준을 보임 (입증자료 9, 10)
 - 티칭과워업 프로그램 : (21년) 800,000원 집행, 4개 학과 4명 참여, 운영목표 80% 달성 / (22년) 460,000원 집행, 5명 참여, 운영목표 100% 달성
 - 교수법 특강 및 세미나 (21년) 1,701,600원 집행, 32개 학과 281명 참여, 운영목표 65.3% 달성 / (22년) 2,098,200원 집행, 491명 참여 운영목표 114.2% 달성
 - 교원학습공동체 : (21년) 959,800원 집행, 9개 학과 16명 참여, 운영목표 89% 달성 / (22년) 897,200원 집행, 4팀 25명 참여, 운영목표 100% 달성
 - 교수학습연구대회 : (21년 교내) 1,600,000원 집행, 3개 학과 3명 참여, (최우수/우수/장려) 각 1명 / (22년) 2,000,000원 집행, 5명 참여, (최우수1/우수1/장려2)
 - Teaching Tips 발간 : (21년) 300,000원 집행, 150부
 - 각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결과 보고를 작성하고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난 연도 평가 결과에 제시된 환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차년도 환류 계획을 세움
 - 결과보고서의 ‘프로그램 우수사항’과 ‘프로그램 개선사항’ 항목은 각 프로그램 진행 후 실시된 만족도 평가 설문지의 주관식 항목인 ‘본 프로그램에서 도움이 된 사항’과 ‘아쉬운 사항’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취합하여 프로그램 담당자의 의견과 함께 반영함
 - 교수 강의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선 실적
 - 프로그램 대상자 축적과 교육 확산
 - 교원학습공동체- 겸임·초빙 교원까지 참여자 확대, 타학과 교수님과 연계하여 교육내용 확대 21년 9개 학과 16명 참여
 - 교수법특강 주제선정 및 교육방법 의견수렴

- 교수법특강 및 세미나
- 수요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주제선정 및 온라인/오프라인특강 병행, 21년 32개 학과, 281명 참석, 만족도 82%
 - 혁신적인 교수법 연구 확대
 - 2022학년도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게임컨텐츠과 정00 교수학습혁신대회 연계 출품
 - 2022학년도 연구대회 원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플립러닝 프로그램 관광경영과 이00 연계 출품
 - 2022학년도 연구대회 항공관광과 강00, 유00 팀티칭 활용한 교수법 활용 등 출품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4.1 산학협력

4.1.1 산학협력활동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산학협력활동 지원 관련 규정 확인 b) 산학협력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c)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노력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제규정(제정 2013.9.1., 개정 2022.8.3.),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3조(조직) 2.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21.1.4.), 제1장(총칙), 제2장(조직 및 운영) 3.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16.4.1., 개정 2021.1.4.), 제1장(총칙), 제2장(조직 및 운영) 4.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21.8.1.) 제1장(총칙), 제2장(조직 및 운영) 5.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운영규정(제정 2020.9.3., 개정 2021.8.24.), 제1장(총칙), 제2장(조직 및 운영) 6.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제정 2010.12.1., 개정 2022.5.13.), 제1장(총칙), 제2장(조직) 7. 산학협력단 관련 조직 업무분장 문서(2021, 2022년 부서발전계획서), 2021년 pp. 2~3 8. 산학협력 전문성 강화 관련 문서(2021, 2022년 예산편성지침 2.2.3.1 산업체 견학 지도비) 9. 산학협력단 운영규정(2021, 2022년)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운영위원회, 제4장 산학협력추진위원회 10.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2021, 2022년) 11.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규정, 산학협력 중점교원 임용규정(제정 2012.3.1., 개정 2017.5.1.) 12. 교수업적평가규정(제정 2006.3.1., 개정 2019.3.1.), 제1장 제1조(목적), 제2장 제4조(평가의 영역) 13.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제정 2006.3.1. 개정 2022.10.7.) 제1장 총칙, 제2조(평가영역), 제3조(평가영역별 점수 배분) 14. 장안대학교 현장(제정 2005.3.1. 개정 2013.9.1.)] 15.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1.21.) 제4조, 제5조, 제6조 16. 장안대학교 학칙(제정 2001.9.17. 개정 2023.5.30.) 제11조(산학협력단 설치), 제 90조(부설기관)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산학협력활동 지원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대학교는 2004년 3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발족하였으며, 장안대학교 현장,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장안대학교 학칙 제11조(산학협력단 설치), 제90조(부설기관)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운영함 (입증자료 1) - 장안대학교는 직제규정의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3조(조직)에 의거하여 대학본부 내 산학협력처를 두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산학협력단(개정 2022.02.13.)을 두고 있음 - 장안대학교는 원활한 산학협력활동 운영 및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을 위해 산학협력처 산하 취·창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4개 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센터별 운영규정을 정비함 (입증자료 2, 3, 4, 5) - 2022년 5월 13일 ‘산학협력단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규정, 산학협력추진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의 실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음 (입증자료 6) |

b) 산학협력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 산학협력처(단)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 추진위원회,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를 두고 대학의 교무처 교무팀, 학생지원처 경력개발지원팀 등과 협업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입증자료 7, 8, 9, 10)

· 산학협력처 내 취창업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2022.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전환), 현장실습지원센터,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국제교류센터(2022.5.13. 국제교류원으로 직제변경)는 부서별 운영계획에 따라 산업체 연계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산학협력단 산하에는 산업기술연구소,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장안서비스카지노 아카데미, 관광교육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두어 산학협력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부서와 연계하여 산업체 연계 및 협력활동 업무를 수행함

- 산학협력처(단)은 원활한 산학협력 활동을 위해 부서 내 4명의 전담인력 (2021. 6. 기준 업무분장)을 구성하여 업무분장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학협력처 연계 4개 센터_취창업지원센터(센터장 1인, 조교 1인), 대학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1인, 직원 1인, 컨설턴트 4인), 현장실습지원센터(센터장 1인, 조교 1인), 일학습공동훈련센터(센터장 1인, 전문컨설턴트 2인)는 각각 내부 전담인력을 두고 적절한 업무를 수행함

c)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노력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 노력

· 산업체 경력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규정을 마련함 (입증자료 11)

·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함

- 교원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 지원 노력

·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2장(업적평가) 제4조, 교수업적평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교원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음 (입증자료 12, 13)

· 전문위원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함 : 2021년 ~ 2022년 산업체 경력을 보유, 겸임교수(유통경영과 김O백) 1인

· 내부적으로 산학협력 전담인력 확대를 위해 국책사업추진 준비 및 유치장려를 위한 TF, 'LINC 3.0 진입 추진 준비단 T/F' 를 조직 및 운영하였으며, 인센티브로 420만 원을 지원함

· 산업체 연계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주제로 포럼 행사를 2021년 12월, 2022년 8월에 개최하였으며 각 20,975,910원 예산을 지원함

- 산학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행정조직 개편, 전담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노력 등

· 산학협력지원 활동 전문성 강화 및 원활한 협업을 위해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취창업지원센터를 산학협력처 산하 조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함(2021.4.1.) (입증자료 14, 15, 16)

· 회계인력 1인 채용을 통해 사업운영 및 지원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노력을 꾀함(2022.8.1.~)

· 산학협력처(단) 전문인력의 직무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산학협력 연구 및 사업집행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함 (총 8회, 960,000원)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산학협력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산학협력활동 운영계획 및 실적 확인 b) 산학협력활동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학협력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관련 문서(2021년, 2022년) 2.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 문서(2021년, 2022년) 3. 교직원의 산학협력 활동 관련 문서(2021년, 2022년) 4. 산학협력추진위원회 모니터링 관련 문서(2021년) 5. 산학협력 성과발표회 관련 문서(2021년, 2022년) 6. 산학협력 활동(지원)계획서(2021년, 2022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산학협력활동 운영계획 및 실적 (입증자료 1, 2,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처(단)은 부서별 부서발전계획서에 따라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과별 산학협력 활동 심의를 통해 결과를 학과에 통보하여 차년도 학과별 산학협력활동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산학협력 MOU체결, 산학협약 체결, 산관학네트워킹데이, 가족회사 운영 등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와 MOU 체결(2022년)을 통해 관광공사 온라인 교육과정을 우리 대학 관광, 호텔조리, 항공분야 전공 학과와 연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장안대학교 기관맞춤과정 강좌개설, 지역상생 관광서포터즈 운영, 관광기업 전문가 초청특강 2회 개최)을 운영함 · 산학협력 MOU 체결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화성시, 화홍병원 등(2021년)과 관학 협약 체결 · 가족회사 협약 체결 : 산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가족회사 협약 체결 [21년 11개 신규업체(누적 259개), 22년 11개 신규업체(누적 270개)] · 산학협약 체결 : 산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반협약 기준 21년 365개 업체, 22년 273개 업체와 산학협약을 체결함 ·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활동 : 경기도 및 화성시 관내 업체 및 기관, 지자체, 대학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위해 산관학네트워킹데이를 2회 개최하였으며(21년 12월 9일, 22년 8월 23일) 21년에는 10개 업체 및 기관, 22년 15개 업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함 · 교직원 대상 외부 특강 및 포럼은 교내 혁신포럼 및 산관학네트워킹데이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으며, 21년 1회(참석인원 19명), 22년 2회(참석인원 38명) 개최하였음 <p>b) 산학협력활동 평가 및 개선 실적 (입증자료 4, 5,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처(단)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원 대상 외부사업 및 교내 사업 및 특별교육과정운영 등의 적정성을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운영 및 특별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만족도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코로나 19의 엔데믹화에 대비하여 외부 기관 및 기업체와의 특별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산학협력활동 홍보 강화, 대학의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한 부서별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함 - 산학협력처(단) 사업별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서 성과보고서 작성 후, 개선사항을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사항에 따라 산학협력처(단) 내 회계부서 전담직원 1명(계약직 1명)을 채용, 기관과의 업무협약식 체결을 통해 관련 산업분야 최신교육과정을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e-콘텐츠 활용, 산업분야 전문가 초청특강 등)의 확대를 반영하여 차년도 신규사업에 포함함 - 매년 초 산학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 부서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협업 부서간 공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처 추진위원회를 통해 각 학과별 산학협력 성과 및 개선보고서를 받아 결과를 종합 |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2022년)

4.1.2 취창업 지원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취·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취·창업활동 지원 규정 확인 b) 취·창업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담당인력, 업무분장 등) 확인 c) 취·창업 인프라 구축 노력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21.1.4.)」 2. 「취업지원활동규정(제정 2010.5.1., 개정 2023.2.23.)」 3. 「창업지원규정(제정 2017.7.1., 개정 2021.1.4.)」 4. 「취업동아리 운영규정(제정 2010.12.1., 개정 2015.9.1.)」 5. 「창업동아리 운영규정(제정 2014.9.1., 개정 2021.1.4.)」 6. 취·창업지원센터 업무분장 관련 서류(협조문, 업무분장표) 7. 「취업지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2014.9.1., 개정 2015.3.1.)」 8. 「지도교수제운영규정(제정 2010.3.1., 개정 2020.3.23.)」, 제2조(지도교수제), 제5조(지도내용) 9. 「현장실습운영규정(제정 1999.3.1., 개정 2023.5.13.)」 10.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제정 2011.5.1., 개정 2016.4.1.)」 11. 「학생지도 및 상담 규정(제정 2014.11.1., 개정 2021.1.4.)」, 제5조(지도교수의 임무) 12. 취업지도위원회 회의 기안 및 결과보고(2021.2022학년도) 13. 취·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14. 취·창업지원 프로그램(학과별 맞춤형 창업특강, 창업동아리,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취창업 졸업생 멘토링, 창업캠프, G-HOP경기남부 대학연합 창업지원사업 등) 관련 결과보고서(2021, 2022학년도) 15. 교원 취·창업자격증 취득사업(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_2021, 2022) 16. G-HOP경기남부 대학연합 창업지원사업(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_2022) 17.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류 제출 관련 서류(2022) 18. 창업캠프(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_2021), 취창업캠프(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_2022) 19. 2021, 2022년도 경력개발지원팀 내부감사자료 제출 협조문 20. 경력개발지원팀 업무분장표 제출 협조문 21. 2021, 2022학년도 취업간담회 운영 결과 보고 기안 22. 2021~2022학년도 산관학 협력 협약 체결 기안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취·창업활동 지원 규정</p> <p>– 우리대학은 ‘취업지원활동규정’과 ‘취·창업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취·창업지원 활동을 위한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창업지원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취업지원활동규정, 창업지원규정, 취업동아리 운영규정, 창업동아리 운영규정 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5)</p> <p>b) 취·창업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p> <p>– 취·창업지원센터는 업무를 총괄하는 취·창업지원센터장과 행정조교 1인 및 업무 전문에 관한 운영 관리를 지원하는 전문위원 2인(2021학년도)으로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6)</p> <p>– 진로취업지원팀은 취업통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직원 2명과 취업전담 컨설턴트 4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20)</p> <p>– 취·창업 지원 조직 및 추진 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부서 : 진로취업지원팀, 취·창업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협력처 · 취·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 외에도 교무팀, 총무팀, 기획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 각종 위원회 : 취업지도위원회, 취·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등 (입증자료 12, 13)
- 취·창업 전담인력은 2021학년도에는 4명, 2022학년도에는 2명으로 학생 수와 업무량 대비 충분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별 담당 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진로취업지원팀의 전담 직원2인과 취업컨설턴트 2명이 함께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생활, 취업,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취·창업 지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조직-운영-환류 3가지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함
- 지원 조직 : 진로취업지원팀, 취·창업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협력처 및 각종 위원회(취업지도위원회, 취·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등) (입증자료 12, 13)
- 운영 관련 : 직제규정, 사무관리규정, 취업지원활동규정, 취업지도위원회 운영 규정, 지도교수제규정, 현장실습운영규정,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창업지원규정, 학생상담센터 규정 등 (입증자료 1, 2, 3, 7, 8, 9, 10, 11)
- 평가 및 환류 : 취·창업지원 프로그램(학과별 맞춤형 창업특강, 창업동아리,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취창업 졸업생 멘토링, 창업캠프, G-HOP 경기남부 대학연합 창업지원사업 등) 결과보고서 내 만족도 조사 결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한 환류·개선사항을 작성하여 차년도 반영 (입증자료 14)

c) 취·창업 인프라 구축 노력

- 취·창업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 취·창업지원센터는 내부 인적 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원대상 취업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하여 2021학년도는 총 18명, 2022학년도에는 총 20명이 취득하였음 (입증자료 15)
- 취·창업지원센터는 외부 인프라 확충 차원으로 경기남부지역 대학연합 취창업지원사업 G-HOP 운영에 참여하여 대학 연합의 취창업스쿨 교육, 취업 캠프, 대학 연합 경진대회로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아이디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입증자료 16)
- 취·창업지원센터는 공공 인프라 연계차원으로, 국가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균형인사제도의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으로 식품영양과 학생 1명을 추천하여 취업하였음 (입증자료 17)
- 대학일자리센터와 취·창업지원센터가 사업을 연계하여 일부 재정을 지원받음으로써 취·창업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음(창업캠프, 교원 취·창업 자격증 취득지원 등) (입증자료 15, 18)
- 대학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여 학생의 교내 학습과 교외 현장 직무 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취·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취·창업 지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취·창업 지원 운영 계획 및 실적 확인 b) 취·창업 지원 활동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지원활동규정(제정 2010.5.1., 개정 2023.2.23.)」 2.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21.1.4.)」 3. 「창업지원규정(제정 2017.7.1., 개정 2021.1.4.)」 4. 취·창업지원센터 부서발전계획서(2021, 2022) 5. 취·창업지원센터 성과평가보고서(2021, 2022) 6. 학과별 맞춤형 창업특강(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_2021, 2022) 7. 창업동아리 사업(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_2021, 2022) 8.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_2021, 2022) 9. 취창업 졸업생 멘토링(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_2022) 10. 창업캠프(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_2021), 취창업캠프(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_2022) 11. 학생생활연구(2021, 2022) 12. G-HOP경기남부 대학연합 창업지원사업(기안, 협조문, 결과보고서_2022) 13. 2021, 2022학년도 경력개발지원팀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협조문 14.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결과 및 운영계획 기안문(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취·창업 지원 운영 계획 및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취업지원활동규정과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센터-학과-지도교수가 학생들의 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대비 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 우리대학은 취·창업지원활동을 위한 취업지원활동규정, 취·창업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창업지원규정에 근거하여 산업동향 및 기업분석, 학생 요구를 적극 반영한 연차별 부서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취업지원계획과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부서발전계획서에 명시된 연간 취·창업 지원계획 이행 후 환류계획을 명시하여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함 (입증자료 1, 2, 3, 4, 5) - 취·창업활동 행·재정적 지원 실적 (입증자료 6, 7, 8,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J-CAP 장안경력개발시스템 (이하'J-CAP')'을 통해 진로이력관리, 구직카드 관리, 자격·면허 이력관리, 경력관리, 외국어 능력관리, 희망직종직무관리, 자기소개서 관리, 취업 및 진로 상담 관리 등 학생들의 취업분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2년 J-CAP시스템에서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워크넷 API적용(심리검사, 직업정보, 기업정보, 채용정보), 부서별 상담 연계 기능 추가, 시스템 사용 현황 개선 등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취·창업지원활동으로 2021년에 88,574,648원, 2022년에 82,577,790원 예산을 집행하여 재정 지원 하였음.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기반으로 2021학년도 446,229천 원, 2022학년도 222,431천원을 지원함 - 우리 대학은 취·창업지원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으로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높은 취·창업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계획 수립(취·창업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신입생 및 재학생 수요조사, 산업체 설문조사 등의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진로취업지원팀 및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 운영계획에 따른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연 단위 운영계획 기반, 취업 역량 강화 및 창업역량 향상) →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운영성과 점검 및 분석) → 취·창업지원계획안 수립에 반영(개선안 검토 및 심의,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 시 운영결과 및 개선안 도출)하여 PDCA 기반의 환류체계를 통해 취·창 |

업지원 프로그램의 선순환적 개선을 지속하고, 비교과통합위원회를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의 통합적 환류체계를 구축함

· 모든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결과보고에는 반드시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창업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출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한 뒤, 추가 요구사항이나 미비사항 등을 중점 파악하여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실무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협약 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과 취·창업지원 계획에 의하여 학생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매년 6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교원의 취창업 능력향상을 위한 취·창업지도사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학과별 맞춤형 창업특강, 창업동아리,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취·창업 졸업생 멘토링, 창업 캠프 등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6, 7, 8, 9, 10)

– 우리 대학은 G-HOP경기남부대학 연합사업에 참여하여 취창업스쿨 교육, 취업 캠프, 대학 연합 경진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음 (입증자료 12)

b) 취·창업 지원 활동 평가 및 개선 실적

– 진로취업지원팀은 매년 취업지원 부서발전계획서 수립 및 취업지원사업 운영 결과 내용을 ‘취업지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취업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여 취업지원사업 개선에 반영함

– 취·창업지원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실적

· 취·창업지원계획 수립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장안대학교 전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안대학교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취·창업활동 지원 부서사업계획에 반영함 (입증자료 4)

· 취·창업지원 협력부서인 학생상담센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전수조사 후 분석 발간하여 학과, 학부 및 행정부서에 배포하는 ‘학생생활연구’결과를 분석 활용하여 취업 부서사업계획에 반영함 (입증자료 11)

· 2021학년도 조사 결과, 학교에 바라는 점에서 취업자료 제공(39.4%), 진로지도(22.5%), 취업교육(18.7%)의 순으로 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지원팀 인지(56.5%), 취업지원팀 방문(12.3%), Job카페 방문(25.6%)으로 나타남

· 2022학년도 조사 결과, 취업자료 제공(36%), 진로 지도(20%), 취업 관련 교육(18%)의 순으로 2021학년도에 비해 개선된 결과가 도출되었고, 취업지원팀 인지(51%), 취업지원팀 방문(9%), Job카페 방문(21%)으로 2021학년도에 비해 취업관련 부설기관의 홍보와 안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위의 결과를 반영하여 취·창업지원센터는 센터 홈페이지 제작과 홍보 관리, 센터 홍보 현수막 및 배너를 설치하였고, 진로취업지원팀의 취업커설턴트의 찾아가는 취업특강을 통해 취업교육 및 취업 자료 제공을 강화하였음. 또한, Job카페의 내부 인테리어 및 학생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환류 사항을 반영하였음 (입증자료 5, 13)

– 취·창업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의 환류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입증자료 14)

· 창업동아리 운영결과, 창업동아리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높은 만족도와 확대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2022년 부서발전계획서의 창업동아리 운영계획은 총 10개 동아리였으나 20개의 창업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게 되어 재학생을 위한 창업문화 확산에 이바지함 (입증자료 7)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현실적 사업화 계획평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 회사에 의한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많은 학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개선 요구를 수렴하여, 채점방식과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음 (입증자료 8)

· 창업캠프는 창업캠프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4.58로 매우 높았으며, 1박 2일 프로그램을 2박 3일로 확대 개편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총 2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음 (입증자료 10)

· 경기남부지역대학 12개교가 취·창업사업(G-HOP)으로 연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각 대학 경진대회 우수팀을 대표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학교 대표가 2위를 수상하였음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충족 : 평가기간 내 평균 건강보험및국세DB연계취업률 60% 이상(전체), 또는 예체능계 취업률 46% 이상이고 예체능계를 제외한 기타계열 취업률이 62% 이상 b) 보완 :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c) 미충족 : 보완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붙임2) 정량지표 현황 양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 우리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2021학년도 61.4%, 2022학년도 64.9%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60.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4.2 현장실습

4.2.1 현장실습 지원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현장실습 지원 관련 규정 확인 b) 현장실습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c) 현장실습 학생 안전지원 체제 구축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개정 2021.4.28.)」, 제4장 제15조(학기), 제8장 제34조(교육과정), 제35조(교과이수 단위), 제36조(학점인정) 2. 「학칙 시행규칙(개정 2021.4.28.)」, 제3장 제13조(현장실습) 3. 「현장실습 운영규정(제정 1999.3.1., 전부개정 2022.5.13.)」, 제11조(운영절차) 4.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16.4.1., 개정 2021.1.4.)」, 제1장 제3조(운영), 제4조(업무) 5.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지침(제정 2019.1.7., 전부개정 2022.6.5.)」, 제9조(현장실습 운영절차) 6. 「직제규정(개정 2020.12.22.)」, 제2장 제3조, 3. 부속기관 7. 「사무관리규정(개정 2020.1.21.)」, 제5절 제10조(산학협력처) 8. 현장실습지원센터 조직도 9. 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분장표 작성자료 제출 협조문(2021.12.13.) 및 업무분장표 10.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기안(2021, 2022학년도) 11.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2021, 2022학년도) 12. 학과별 현장실습 전담교수 선정 요청 협조문(2021, 2022학년도) 13. 학과별 현장실습 전담교수 선정 명단(2021, 2022학년도) 14. 현장실습 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협조문(2021, 2022학년도) 15. 장안대학교 산관학 네트워킹 데이 참석 요청 협조문(산학 제1353호, 2021.12.6.)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발표 자료 16.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사례집 발간 사업 시행 기안(2021, 2022학년도) 17.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장학금 지출결의서(2021, 2022학년도) 18.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원본(2021, 2022학년도) 19.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서발전계획서(2021, 2022학년도) 20. 현장실습 결과보고서(2021, 2022학년도) 21. 역량중심 현장실습지원시스템(J-WESS), http://hj.jangan.ac.kr/ 22.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시행 기안(2021, 2022학년도) 23. 역량중심 현장실습지원시스템(J-WESS) 입력 교육 관련 협조문(2021.5.27.) 24. 역량중심 현장실습지원시스템(J-WESS) 매뉴얼(학생용, 지도교수용, 실습기관용) 25. 역량중심 현장실습지원시스템(J-WESS) 매뉴얼 PDF 파일 배포 협조문(2021.5.28.) 26. 현장실습 학과별 수요조사 협조문(2021, 2022학년도) 27. 현장실습 학과별 수요조사 결과표(2021, 2022학년도) 28. 현장실습 학과 간담회 시행 기안(2021, 2022학년도) 29. 현장실습 학과 간담회 결과보고(2021, 2022학년도) 30. 현장실습 학과 간담회 배포 자료, PPT발표 자료(2021, 2022학년도) 31. 「현장실습 운영규정(제정 1999.3.1., 전부개정 2022.5.13.)」, 제22조(학생 보호), 제28조(국가재난 등 상황에 따른 현장실습) 32.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지침(제정 2019.1.7., 전부개정 2022.6.5.)」, 제9조(현장실습 운영절차), 제10조(실습생 준수사항), 제11조(순회지도) 33. 현장실습 신규실습기관 서면점검서(2021, 2022학년도) |

| | |
|--|--|
| | <p>34. 현장실습 순회지도 지출결의서 및 결과보고서(중간점검 보고서)(2021, 2022학년도)</p> <p>35. 학과별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지출결의서(2021, 2022학년도)</p> <p>36. 현장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증빙(2021, 2022학년도)</p> <p>37.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행 기안 및 협조문(2021, 2022학년도)</p> <p>38. 현장실습 사전교육 결과보고(2021, 2022학년도)</p> <p>39.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사전교육 교육자료(현장실습 J-WESS시스템 교육,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감염병 예방 교육 등) (2021, 2022학년도)</p> <p>40. 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 동영상 탑재 및 강좌 개설 협조문(2021, 2022학년도)</p> <p>41. 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 J-CAMPUS 개설 증빙 자료(2021, 2022학년도)</p> <p>42. 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증 증빙자료(2021, 2022학년도)</p> <p>43. 학과별 현장실습 사전교육 증빙자료(2021, 2022학년도)</p> |
| <p>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p> | <p>a) 현장실습 지원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은 「학칙 제4장 제15조(학기), 제8장 제34조(교육과정),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36조(학점인정)」, 「학칙시행규칙 제3장 제13조(현장실습)」,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1조(운영절차)」,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장 제3조(운영), 제4조(업무)」,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지침 제9조(현장실습 운영절차)」에 근거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5) - 「학칙 제4장 제15조(학기), 제8장 제34조(교육과정), 제35조(교과이수단위), 제36조(학점인정)」에서 현장실습 실시 근거와 학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운영규정」의 세부적 방침에 의거 현장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1, 3) <p>b) 현장실습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지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처 산하에 행정전담조직인 현장실습지원센터(센터장 1명, 조교 1명)를 구성하여 주요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의 기본방침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입증자료 6, 7, 8, 9, 10, 11) - 대학 본부의 현장실습 지원 조직 외에 현장실습 시행 학과별 전담교수(23개학과 25명(2021학년도), 19개 학과 20명(2022학년도))를 선정하여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12, 13) - 현장실습 교과목의 개설과 수강신청,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교무처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산관학 네트워킹데이’ 프로그램 등 산학협력처의 산업체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처의 지원을 받고 있음. 또한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장학금 수여와 관련하여 학생지원처 산하 학생지원팀, 총무처 산하 총무팀의 지원을 받고 있음 (입증자료 14, 15, 16, 17, 18)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매 학년도 부서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학과 간담회 개최, 현장실습기관 모집, 현장실습 사전교육, 순회지도 관리 등을 통해 현장실습의 교육품질을 확보하고 있음 (입증자료 19) - 우리대학 현장실습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20) -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2021-19호)과 우리대학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반영된 ‘역량중심 현장실습지원시스템(J-WESS)’으로 현장실습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참여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실습 학과 간담회 및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21, 22, 23, 24, 25, 30, 39)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 전 현장실습 학과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장실습 참여학과를 확정하고 현장실습 참여학과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습 운영 안내 및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운영계획과 규정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입증자료 26, 27, 28, 29, 30) <p>c) 현장실습 학생 안전지원 체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의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22조(학생 보호), 제28조(국가재난 등 상황에 따른 현장실 |

습)」,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지침 제9조(현장실습 운영절차), 제10조 (실습생 준수사항), 제 11조 (순회지도)」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입증자료 31, 32)

- 현장실습 학생 안전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신규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교수의 순회지도를 통하여 현장실습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정책에 따라 오프라인 순회지도가 어려운 경우에도 온라인 순회지도를 통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입증자료 33, 34)
- 현장실습 시행 전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원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학년도 동계 현장실습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을 제외한 모든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을 완료함 (입증자료 35, 36)
-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행동요령 교육,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교육, 현장실습 성희롱 예방 교육, 감염병 예방 수칙 교육, 지진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동계 및 하계 현장실습 이전에 실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37, 38, 39)
-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와 참여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J-Campus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사전교육 실시 후 사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 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부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대면 집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음. 대면 교육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학생에게도 J-Campus에서 비대면으로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 (입증자료 40, 41, 42)
-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사전 교육 외에도 현장실습 시행 학과 특성에 따라 필요시 학과별 사전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전공 맞춤형 실습 유의사항 및 안전 지도 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학과별 현장실습 결과보고서에 이와 관련하여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입증자료 43)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실적 확인 b) 현장실습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운영 P-D-C-A 체계표 2.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서발전계획서(2021, 2022학년도)3.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서 성과평가보고서(2021, 2022학년도) 4. 현장실습 결과보고서(2021, 2022학년도) 5. 현장실습 학과별 결과보고서(2021, 2022학년도) 6. 역량중심 현장실습 교육품질 관리보고서(2021, 2022학년도) 7.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 2016.4.1., 개정 2021.1.4.)」, 제9조(자체 성과평가회) 8.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결과보고(2021, 2022학년도) 9. 현장실습 관련학과 수요조사 협조문(2021, 2022학년도) 10. 현장실습 관련학과 수요조사 결과표(2021, 2022학년도) 11. 역량중심 현장실습 학과 간담회 시행 기안(2021, 2022학년도) 12. 역량중심 현장실습 학과 간담회 결과보고, 배포자료 및 발표 자료(2021, 2022학년도) 13. 학과별 현장실습 시행 기안, 현장실습계획서(2021, 2022학년도) 14. 현장실습 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협조문(2021, 2022학년도) 15. 현장실습 참여학생 및 교류업체 현황 리스트(2021, 2022학년도) 16.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자료(2021, 2022학년도) 17.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제7조(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보고) 18.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협조문(2022.4.11.) 19.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분석 자료(2021, 2022학년도) 20. 현장실습 학과 평가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21. 현장실습 학과 평가회 결과보고(2021, 2022학년도) 22. 현장실습 기관평가회 결과보고(2021, 2022학년도) 23. 현장실습 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2021, 2022학년도) 24. 현장실습 품질 평가와 개선 연구 보고서(2021, 2022학년도) 25.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2021, 2022학년도) 26. 현장실습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 사업(2021, 2022학년도) 27. 현장실습 질 제고 시스템 구축 사업(2021, 2022학년도) 28. 현장실습 관련 예산 내역(2021, 2022학년도) 29. 현장실습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운영표 30.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사례집 발간 사업 시행 기안 및 협조문(2021, 2022학년도) 31.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장학금 지출결의서(2021, 2022학년도) 32.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사례집 발간 결과보고서(2021, 2022학년도) 33.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원본(2021, 2022학년도) 34. 장안대학교 자체평가 보고서 현장실습지원부분(2021년) 35. 현장실습 성과보고를 위한 취업 현황 조사 협조문(2021, 2022학년도) 36. 현장실습 운영개선사업 관련자료(2021학년도) 37.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결과(2021, 2022학년도) 38.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시행기안(2021, 2022학년도) 39.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지출결의서(2021, 2022학년도) 40. 현장실습 교육품질 제고 프로그램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결과(2021, 2022학년도) 41. 역량중심 현장실습지원시스템(J-WESS), http://hj.jangan.ac.kr/ 42.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시행 기안(2021, 2022학년도) |

| | |
|--|---|
| | <p>43.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지출결의서(2021, 2022학년도)</p> <p>44. 기관평가회 설문조사 중 산업체 요구사항(2021, 2022학년도)</p> <p>45. 취업연계 현장실습 산학 프로그램 결과보고(2022학년도)</p> |
| <p>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p> | <p>a)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P-D-C-A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의 계획, 운영, 평가 및 환류과정을 관리하고 학과는 현장실습 결과보고서와 역량중심 현장실습 품질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년도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음 (입증자료 1, 5, 6) - 매 학년도 초에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서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 교육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자체 성과평가회)에 의거 센터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회 내용을 부서 성과평가 보고서에 담아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위원회를 통하여 각 사업의 시행 여부와 시행 결과, 환류사항 등을 점검하고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2, 3, 7, 8)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장실습 제규정 제정 및 개정,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운영 결과 평가,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입증자료 8) - 현장실습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을 제외하고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행 전 현장실습 관련학과 수요 조사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 규모를 파악하고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함 (입증자료 9, 10) - 현장실습 관련학과 수요조사 결과 확정된 현장실습 참여 학과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학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습 운영 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학과의 의견과 문의사항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입증자료 11, 12) - 현장실습 시행 전 현장실습 참여 학과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실습기간, 실습기관에 대한 내용 및 학과별 사전교육과 순회지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실습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 현장실습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전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준수함 (입증자료 13, 14) -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부터 ‘역량중심 현장실습지원시스템(J-WESS)’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해 왔으며 현장실습 시행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입증자료 41) - 2021학년도 동계 현장실습부터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실습을 시행하였으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4, 5) - 현장실습 실적 (입증자료 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하계 : 신청학생 403명, 이수학생 387명(일반학과 현장실습(7개 학과, 30명, 호텔경영과 복학생 2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4개 학과 355명)), 실습기관 245개 업체 · 2021학년도 동계 : 신청학생 63명, 이수학생 58명(표준현장실습학기제(2개학과 6명), 자율현장실습학기제(4개 학과 13명, 호텔조리과 복학생 1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2개 학과 36명, 식품영양학과 복학생 2명)), 실습기관 39개 업체 · 2022학년도 하계 : 신청학생 422명, 이수학생 395명(표준현장실습학기제(6개 학과 41명), 자율현장실습학기제(5개 학과 24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4개 학과 324명, 사회복지과 복학생 1명, 식품영양학과 복학생 3명), 호텔경영과 복학생 2명), 실습기관 231개 업체 · 2022학년도 동계 : 신청학생 43명, 이수학생 40명(표준현장실습학기제(2개 학과 8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1개 학과 32명)), 실습기관 31개 업체 <p>b) 현장실습 평가 및 개선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현장실습에 대하여 현장실습 참여학생, 현장실습 운영학과 지도교수, 현장실습 참여기관으로 나누어 주체별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입증자료 16) -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는 우리대학 「교육만족도 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부서별 발표 및 공유하며 차년도 부서발전계획 및 운영 계획에 반영함 (입증자료 17, 18, 19)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현장실습 목표, 기대효과, 만족도 조사 분석, 환류 계획 등을 통 |

해 학과별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량중심 교육품질 관리보고서에서는 NCS 기반 현장실습 교육과정 계획, 직무능력 수행평가,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학과별 현장실습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5, 6)

-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운영학과 전임교수 주관 학과 평가회를 실시하여 학과별로 현장실습 운영 결과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하여 차년도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입증자료 20, 21)
- 매 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평가회를 개최하여 실습기관 중 우수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우수실습기관 감사장'을 수여하고 실습기관 담당자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실습의 지속적 품질개선을 하고 있음 (입증자료 22)
- 우리 대학은 현장실습 사전교육, 교육품질제고프로그램, 취업연계 현장실습 산학프로그램 등 모든 현장실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선 및 환류 결과를 도출하고 차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지속적 질 개선을 시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23)
- 당해 년도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품질 평가 및 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차년도 현장실습 운영 방향성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현장실습 운영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2022학년도에는 최근3년간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당해 년도 현장실습 운영 평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음 (입증자료 24)
-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학과 간담회, 순회지도 지원, 현장실습생 지원비 지원, 역량중심 현장실습 지원시스템(J-WESS) 유지와 보수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입증자료 25)
- 현장실습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장실습 품질평가와 개선 연구, 산학 현장실습 공동 프로그램, 현장실습 학과 평가회, 실습기관 평가회,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사례집 발간, 취업연계 현장실습 산학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26)
- 현장실습 질 제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현장실습 사전교육 사업, 교육품질 제고 프로그램, 역량중심 현장실습 교육품질 관리보고서 등의 제도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27)
- 현장실습 관련 예산은 크게 체계적 운영 지원, 현장실습 개선 및 환류 체계 구축, 현장실습 질 제고 시스템 구축으로 나누어 집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에 총 62,576,200원, 2022학년도에는 63,020,480원이 집행되었음 (입증자료 28)
-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현장실습 시행학과의 협업관리를 통한 현장실습의 품질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학과별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질 관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화를 추구함 (입증자료 29)
- 현장실습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실현하는 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으로 총 2,550,000원을 수여하고 있음. 또한 수상자들의 수기와 현장실습 2개 기관 소개글을 모아 현장실습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교내뿐 아니라 현장실습기관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음 (입증자료 30, 31, 32, 33)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1년도에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 현장실습 지원 개선 환류사항의 일환으로 2021학년도부터 현장실습 시행 학과 대상 현장실습-취업연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현장실습-취업연계 성과 관리 및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입증자료 34, 35)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할 신규 기관 모집 및 발굴,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방안 공유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개선사업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21학년도에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2개 학과 이수학생 6명의 실적에서 2022학년도 6개 학과 이수학생 49명의 실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남 (입증자료 36, 37)
- 현장실습 참여 확대와 독려,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실습현장에서 필요한 명찰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이수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실습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음(본 실습비는 대학공시자료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음). 실습지원비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21학년도 이수 학생 1인당 6만원에서 2022학년도 1인당 7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증액하였음 (입증자료 38, 39)
- 현장실습 중도포기 학생 대상 교육품질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졸업 후 직장 적응력을 제고시키는 등 현장실습 종료 후의 사후 교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실습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프로그램의 특강 내용과 주제를 보강한 결과 참여 학생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5점 척도 기준 2021학년도 4.2에서 2022학년도 4.78로 만족도 상승의 성과가 나타남 (입증자료 40)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학년도 역량중심 현장실습지원시스템(J-WESS) 업그레이드 작업에 6,600,000원을 집행하여 개선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매 학년도 2,400,000원을 집행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41, 42, 43)

-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실습기관 평가회 때 실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습 후 취업으로의 연계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온 점에 대해 개선·환류 차원에서 2022학년도 취업연계 현장실습 산학 프로그램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기획하여 운영하였음. 프로그램 참여학생 중에서 호텔경영과 2명의 학생이 포포인즈 바이 쉐라톤 호텔 채용에 1차 서류합격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으며 항공관광과 1명의 학생이 파크하얏트에 최종 합격하여 채용되는 등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이 직접 연계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함 (입증자료 44, 45)

4.3 평생교육체제

4.3.1 평생교육 지원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평생교육 운영 관련 규정 확인 b) 평생교육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c)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제정 1998.3.2. 개정 2018.3.1.), 제2장(조직), 제4조(원장), 제5조(교직원), 제5조의2(전문위원), 제3장(운영위원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정(제정 2011.7.1. 개정 2015.9.1.), 제2조(목표), 제4조(과목선정기준), 제6조(주요내용), 제7조(개발방법) 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 규정(제정 2015.1.1. 개정 2022.1.1.), 제1조(목적), 제2조(장학생 선발 및 지급상황), 제3조(장학금 지급 대상 및 내용) 평생교육원 업무분장표(2021, 2022학년도) 평생교육사 자격증(김0숙, 자격증취득 2016.8.31. 근무기간 2022.2.1. ~ 현재) 평생교육원 수강생 현황 관련 문서(2021, 2022학년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봉사내용, 교육내용, 시설활용)관련 문서(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평생교육원 운영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대학은 평생교육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정’, ‘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평생교육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규정이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정’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개발 내용의 질 향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 규정’은 평생교육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지역사회 주민과 우리대학 구성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p>b) 평생교육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대학은 평생교육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평생교육원(원장 1명, 직원 2명, 조교 2명)을 구성하고 있으며, 원장은 대외협력업무 및 부서업무를 총괄하고 일반과정 담당, 자격증과정 담당, 수강생 담당별로 교직원을 두며 지휘 감독함 (입증자료 4)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직업교육 전문성 극대화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 사업, 학점은행제 및 중고등 진로교육사업 담당/ 일반강좌 및 자격증 강좌/ 홍보기획 및 시설 유지 보수/ 수강생 상담 및 등록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 전담 사업별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분장표(2023.3.1. 업무분장 기준)를 근거로 전담직원 및 업무를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 평생교육과정 운영 및 상담에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 (입증자료 5) <p>c)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 협력 내용 (입증자료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진로교육사업에 대학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기꿈의대학 협력대학으로 선정됨(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2개년 누적강좌가 경기남부 5개 대학 중 가장 많은 44개 강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 1학기 12강좌, 2학기 10강좌 |

- 2022학년도 : 1학기 6강좌, 2학기 16강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화성 자유학년제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청소년 진로교육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기부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됨
 - 2021년 : 서연고등학교(2명, 1개 과정, 17시간 교육), 봉담고등학교(35명, 7개 과정, 119시간 교육), 나루고등학교(10명, 6개 과정, 102시간 교육)
 - 대학 연계 교육현장 소통 운영 정책협의회 및 화성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가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및 활동 계획을 구축하고 있음
 - 2022년 : 경기꿈의대학 협약기관 업무 담당자 정책협의회 참석, 2022년 제4차 화성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참석
 -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용기관 등록 및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되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2022년 :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 사용기관 등록,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 교육 협력 내용
- 화성시 지자체가 공모하는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여 대학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통한 지역주민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2022년 : 4060 화성인생학교 프로그램 2개 강좌, 120시간 운영, 31명 수료함
 - 일반강좌 수강생의 90% 이상이 지역 거주자로 골프연습 교육장과 테니스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학교교육 시설 및 기자재를 제공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음. 댄스 스포츠, 한국무용, 기구 필라테스, 색소폰 연주과정, 사진예술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 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노래지도사 1급, 와인소믈리에, 쉬운경매투자, 동물매개 활동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교육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직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2021년 : 6개 강좌, 470시간 운영, 116명 수료함
 - 2022년 : 2개 강좌, 120시간 운영, 31명 수료함
 - 수강생의 강좌 사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통로 마련에 기여하고 있음
 - 2022년 : 단체전 2회, 사진 공모전 수상 3회 및 입상 화환 2회 지원
- 시설 활용 협력 내용
- 청소년진로교육사업(자유학기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강의실, 도서관, 학부모 대기실, 휴게실, 잡카페 등 무료 개방(2021, 2022년 지역고등학교 3개, 총 49명에게 시설 개방)
 - 화성시 요청으로 화성시 지역주민 대상 교육 사업 2개 과정을 진행하면서 주차장 무료이용, 학술정보관, 강의실, 상담실 등 무료 개방(2022년 2개과정 총 31명에게 시설 개방)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크리스토퍼 평생교육원 화성지부 리더쉽 강좌 강의실 1년 대관(2022.6 ~ 2023.7.) 주차장 무료이용, 학술정보관, 강의실, 상담실 등 무료 개방
 - 지역주민 수강생이 자유롭게 골프 개인연습이 가능하도록 수업시간 외 및 휴일 골프연습장 무료 개방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평생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평생교육 운영계획 및 실적 확인 b)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원 증장기 발전을 위한 TF 회의록(평생교육원-5365,2021.12.29., 평생교육원-6441, 평생교육원-6090, 2022.2.11., 평생교육원-5845,2022.1.27.평생교육원-5749, 2022.1.21.) 2. 평생교육원 증장기발전계획서(2022학년도) 3. 평생교육원 부서발전계획서(2021, 2022학년도) 4.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5. 평생교육원 개설 강좌 관련 문서(2021, 2022학년도.) 6. 수요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2021, 2022학년도) 7. 프로그램 홍보 및 모집 관련 문서(2021, 2022 학년도) 8.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제정 1998.3.2. 개정 2018.3.1.) 제3장 운영위원회 9. 경기꿈의대학 추진위원단 회의록(2022학년도) 10. 프로그램 평가 및 향후 운영계획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2021, 2022 학년도) 11.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2021, 2022학년도) 12. 평생교육원 개선 실적 자료(2021, 2022학년도) 13. 경기꿈의대학 간담회 회의록(2021, 2022 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평생교육 운영계획 및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표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22년 평생교육원 증장기 발전을 위한 TF 를 구성하여 ‘평생교육원 증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 (입증자료 1, 2, 3) - 대학 증장기 발전 전략과제에 맞게 평생교육원 부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 조사 결과 및 증장기 발전 계획의 연차별 운영 내용에 따라 강좌를 기획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 (입증자료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 봄학기 13개 강좌 229명, 가을학기 11개 강좌 310명 운영 · 2022학년도 : 봄학기 14개 강좌 409명, 가을학기 13개 강좌 453명 운영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설계)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수요 조사 결과와 타 평생교육기관 벤치마킹 및 학과 전공분야 전임교수의 제안을 토대로 우리대학 평생 직업교육 특성화에 적합하고 수요를 반영한 혁신형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함 (입증자료 6) - 평생교육원 운영 과정의 PDCA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요 조사와 만족도 조사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설문조사 양식을 개편하여 신규강좌 수요 조사지 양식을 개발함. 수요조사 실시 대상자 DB(기존 10년간 일반강좌 및 학점은행제 강좌 수강 이수자 1,000여명)를 생성하여 수요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높였으며 수요 조사 결과는 취합하여 보고서로 남김 - 프로그램의 홍보 및 모집은 ‘학기별 수강생 모집 계획’을 통해 지역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학기 시작 전에 실시함. SNS 홍보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7) -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에 의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5인~7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생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함.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부서 발전 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사업 계획과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학습 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 (입증자료 8) - 경기도 교육청 주관 ‘경기꿈의대학’ 진로교육사업은 ‘경기꿈의대학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경기꿈의대학 운영위원단’을 구성하여 강좌의 기획부터 운영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입증자료 9) |

b)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평가 (입증자료 10, 11, 12, 13)

·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환류는 프로그램별 목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에 의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논의한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교육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매 학기 프로그램 종료 시 수강생들에게 수강한 강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음. 2022년 가을학기부터 만족도 조사 항목을 개선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내용은 강의 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행정실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봄, 가을 학기별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함

- 2021학년도 : 봄학기 만족도 57%, 가을학기 73%

- 2022학년도 : 봄학기 만족도 67%, 가을학기 84%

·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과 교육 질 관리를 위해 다수의 전공분야 전임 교수진을 통해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테니스 강좌, 와인소물리에 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침'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개발(설계) 및 모집 계획, 프로그램 모집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개선의 운영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행됨

-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 실적

·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골프연습장의 낙후된 시설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 보수를 진행함(골프연습장 전자 출입문 설치, 골프망 와이어 보수, 골프공 수거기 제작 설치, 선풍기 교체, 포충기 설치, LED 조명 교체, 고객 소리함 구매, 타석대 거울 설치, 야자 매트 설치, 출입문 천막 설치)

· 골프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 수강생이 많은 과밀반 수강생들의 연습 시간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강좌 중 평일 오후(14:30~16:30) 화목도 골프과정 1개 반을 폐강하고, 해당 수업 시간대를 자유연습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수강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킴

· 댄스스포츠 강좌에서 수업 레벨이 다양한 수강생이 혼재되어 있어 수강생들의 개별 지도 시간 부족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토요일에 오후 2시 ~ 5시 중상급반을 추가 개설하여 수업 수준별로 수강생을 분리하여 지도함으로써 수강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킴

- 2022학년도 봄학기 댄스스포츠(4과정) -> 가을학기 댄스스포츠(5개과정)

·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 수요 조사 결과 반영을 위해 신규 교육과정 개설함(2022학년도 테니스와 와인소물리에 과정 2개)

· 경기꿈의대학은 매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수강생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함. 만족도 조사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강좌 종료 후에는 꿈의대학 운영위원회(총장, 보직교수)와 꿈의대학 추진위원단, 강좌 진행강사가 간담회를 진행하여 강좌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심의하고 다음 학기 강좌 운영 계획 및 강좌개 발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음

- 2022년도 2학기 경기꿈의대학 전체 강좌 만족도(5점 만점) 조사 결과는 평균 4.02로 2022년도 1학기 전체 강좌 만족도 평균 3.48보다 향상되었음

- 2022년도 2학기 운영강좌는 총 16개 강좌 182명으로 이수율 83%를 나타내고 2022년도 1학기 이수율 78%보다 향상되었음

5. 학생

5.1 학생복지

5.1.1 학생복지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학생복지 지원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학생복지 관련 규정 확인 b) 학생복지 관련 학생 의견 수렴 및 복지지원 계획 수립 확인 c) 학생복지 지원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만족도 관리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3.23.)」, 제8조(교육만족도 결과 개선) 2. 「장학금지급규정(제정 1980.3.6., 개정 2020.1.22.)」, 제2장(장학금의 종류) 3. 「학생지원서비스 운영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1.1.4.)」, 제14조(학생 복지지원) 4. 「학술정보관 운영규정(제정 1979.6.1., 개정 2020.3.23.)」, 제1장 제3조(업무) 5. 「복지위원회규정(제정 2011.5.1., 개정 2015.9.1.)」, 제6조(위원회의 기능) 6. 「건강관리실 운영지침(제정 2016.4.1., 개정 2016.4.1.)」, 제4조(업무) 7. 「생활관 운영지침(제정 2012.2., 개정 2021.1.7.)」, I(일반사항) 8. 학생지원처 업무분장(학생 제240호, (2021. 4. 13.), 학생 제413호, (2022. 5. 9.)) 9. 학생생활연구 보고(만족도)(2021학년도, 2022학년도) 10. 학생지도위원회 자료(2021학년도, 2022학년도) 11. 학생 서비스 개선 실적철 12. 수리요구서철 13. 학생서비스 Q&A민원 14. 성적우수 장학제도 이외에 장학금 지급내역 15. 학교경영배상책임보험(2021학년도, 2022학년도) 16.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조사 시행 및 결과(2021학년도,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학생복지 관련 규정</p> <p>– 우리 대학은 학생의 학습동기를 촉진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정된 대학생활 및 학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장학금지급규정, 학생지원서비스 운영규정, 학술정보관 운영규정, 복지위원회규정, 건강관리실 운영지침 및 생활관 운영지침 등을 기반으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 및 장학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5, 6,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만족도 관리규정: 주기적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고, 우리대학의 교육환경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우수한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장학금지급규정: 재학생(신입생 포함)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진작시킴을 목적으로 규정함.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 구성,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 학술정보관 운영규정: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술연구조사 및 대학교육활동을 위한 자료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학술정보관의 조직과 자료의 구입, 보관, 열람, 관외대출, 자료복사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건강관리실 운영지침: 본 대학 학생 및 교육생,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실 업무, 조직, 재정, 이용시간을 규정함 · 생활관 운영지침: 학생들에게 생활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 생활수칙 및 징계관련 사항, 이용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 <p>– 우리대학의 복지정책은 학생지원처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복지에 관한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복지시설 지원, 편의시설 지원, 건강의료시설 지원, 일반학생 행사지원, 총학생회 행사지</p> |

원, 언론행사 지원, 통학 지원, 장애학생 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정책별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음

· 복지시설 지원: 총무팀, 학술정보관, 정보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관리팀, 학생지원팀, 경력개발지원팀, 평생교육원

· 편의시설 지원: 학생지원팀, 총무팀, 재무팀

· 건강의료시설 지원: 건강관리실, 총무팀

· 일반학생 행사지원: 학생지원팀, 교무팀

· 총학생회 행사지원: 학생지원팀

· 언론행사 지원: 학생지원팀

· 통학(스쿨버스) 지원: 학생지원팀, 총무팀

· 장애학생지원: 학생지원팀, 관리팀

- 학생지원팀에서 2022. 4. 1.기준으로 학생활동 지원, 민원업무, 장학금 등의 학생복지 관련 업무를 계장 1명, 주임 2명, 조교 2명이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함 (입증자료 8)

- 학생지원처에서 학생지원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 등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생복지 제도(학생지원시설, 학교경영배상책임보험, 장학, 생활관 지원 등)를 갖추고 있음 (입증자료 9)

· 2021학년도 만족도 조사 실시 : 1학년(대학에 기대하는 부분 중 교육시설/복지 19.8%,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32.6%), 2학년(대학 추천이유 중 서비스/복지 11%, 장학제도 11.7%,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42%)

· 2022학년도 만족도 조사 실시 : 1학년(대학에 기대하는 부분 중 교육시설/복지 20%,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24%), 2학년(대학 추천이유 중 서비스/복지 8%, 장학제도 8%,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46%)

b) 학생복지 관련 학생 의견 수렴 및 복지지원 계획 수립

- 복지관련 학생의견 수렴현황 및 학생의견 수렴실적으로는 학생생활연구보고, 수리요구서철, 학생서비스 Q&A민원 등이 있음

·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며 복지정책의 시행 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입증자료 5, 10, 11)

· 학생지원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학생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년도 서비스 계획 및 개선에 활용하여 지속적인 개선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입증자료 16)

· 학생지원 서비스의 평가결과는 '부서발전 계획서'에 반영되어 세부과제를 도출함

·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서비스 Q&A게시판을 통해 학생서비스에 대한 질문과 요구를 매일 확인 후 즉각 대응 (입증자료 13)

- 학생자치회 의견수렴 및 반영 (입증자료 10)

· 학과위원회, 과대표 등을 통하여 상시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반영 및 조치하고 있음

· 2022학년도 개선사항 : 2022학년도 학교축제 지원예산을 15,720,000원에서 27,720,000원으로 1,200만원 추가 편성

c) 학생복지 지원 실적

- 성적우수 장학제도 이외의 다양한 장학제도 및 학생복지 지원 실적 (입증자료 14)

·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지원실적: 축제 및 간담회 관련하여 학생자치회를 지원, 스쿨버스 수원역(오목천역) 무료 운행, 코로나19 등 재난피해 학생지원 재난 장학금 지급(2021학년도 209명 20,700,000원), 장애우 학생 지원 장학금 지급(2021학년도 총6명 총6,371,600원, 2022학년도 총4명 총4,000,000원), 다문화 가정 학생지원 장학금 지급(2021학년도 총8명 총5,000,000원, 2022학년도 총6명 총4,000,000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등록금 전액지원(복지장학금)하고 있음(2021학년도 201명, 106,552,200원)

· 성적우수 장학제도 이외에 봉사장학금(2021학년도 총1,706명 총615,311,480원, 2022학년도 총751명 총247,540,240원), 면학장학금(2022학년도 199명 98,584,000원), 근로장학금(2021학년도 201명 28,893,832명, 2022학년도 221명 31,358,408명), 가족장학금(2021학년도 50명

24,265,600원, 2022학년도 18명 9,000,000원), 학부모장학금(2021학년도 32명 39,500,000원, 2022학년도 17명 20,000,000원), 취업역량우수장학금(2021학년도 403명 86,300,000원, 2022학년도 228명 44,100,000원), 복지장학금(2021학년도 201명, 106,552,200원), 총장특별장학금(2022학년도 1,340명 297,984,000원), 교직원자녀 장학금(2021학년도 2명 6,273,000원, 2022학년도 4명 9,846,000원), 지역사회기여장학금(2021학년도 76명 21,600,000원, 2022학년도 42명 11,500,000원), 국가보훈장학금(2021학년도 16명 25,102,000원, 2022학년도 12명 18,454,000원), 모범장학금(2021학년도 2,808명 768,823,600원 2022학년도 564명 317,418,000원), 다문화가정장학금(2021학년도 총8명 총5,000,000원, 2022학년도 총6명 총4,000,000원), 전공심화 학사학위 장학금(2021학년도 588명 885,133,000원, 2022학년도 556명 833,120,000원), 곰두리장학금(2021학년도 총6명 총6,371,600원, 2022학년도 총4명 총4,000,000원) 등을 지급하고 있음

· 복지장학금으로 소득구간 심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하였고, 2022학년도는 국가장학금 인상으로 복지장학금 지급실적이 없음(2021학년도 201명, 106,552,200원)
-복지정책을 위한 시설

· 복지정책을 위한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복지시설로는 매점, cafe 멀티미디어라운지, 학생상담센터, 식당, 기숙사, 비전홀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휴대폰 충전기, 자동증명발급기, 현금인출자동지급기가 있고 건강·의료 시설로는 건강관리실과 체력단련실을 구비하고 있음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보건실 운영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보건실 관련 규정 확인 b) 유(有)자격 인력 배치 및 보건실 운영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건강관리실 운영지침(제정 2016.4.1., 개정 2016.4.1.)」, 제3조(자격) 2. 「학생지원서비스 운영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1.1.4.)」, 제5조(학생지원 조직 운영) 3. 「직원인사규정(제정 1987.3.1., 개정 2018.7.1.)」, 제2장 제10조(자격) 4. 「학생생활 안전관리 규정(제정 2016.7.1., 개정 2020.3.23.)」, 제6조(사고발생시 담당 부서별 역할 및 조치사항) 5. 건강관리실 인력 전문 자격증 (손O숙, 전O실, 이O숙, 노O지) 6. 건강관리실 운영현황(2021, 2022학년도) 7. 보건 관련 프로그램(건강증진한마당, 헌혈캠페인, 결핵검진) 실시문서(2021, 2022학년도) 8. 코로나19 대응 매뉴얼·구성원 행동지침(2021, 2022학년도) 9.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품구매 내역(2021, 2022학년도) 10.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내역(2022학년도) 11. 응급처치 매뉴얼 12. 건강관리실 업무분장표 13. 코로나 감염 예방 홍보 자료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보건실 관련 규정 - 구성원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응급상황 대비 및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관리실 운영지침'을 두고 있으며, 업무, 자격, 이용 시간 등을 명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1, 3) - 학생지원서비스 운영규정, 학생생활 안전관리 규정 내에는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환자 투약 및 처치, 의약품 및 소모품 관리, 교내 사고환자 보험처리, 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음 (입증자료 2, 4) b) 유(有)자격 인력 배치 및 보건실 운영 실적 (입증자료 5, 6) - 건강관리실 운영을 준수하기 위하여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음 · 건강관리실 담당자(손O숙, 교내 대체자로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평생교육원 이O숙 계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응급환자 관리, 투약 및 처치, 건강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학교 내에서의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응급처치에 관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음 · 건강관리실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약품수불 및 방문자 내역을 관리하여 결과보고를 실시하고 있음 ·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헌혈캠페인, 결핵검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구성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TFT 구성 및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입증자료 7, 8, 9, 10, 11, 12, 13) ·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대응전략 및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방역관리에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대응 매뉴얼 구축, 방역물품 확보 및 비치, 감염예방 교육 및 홍보 등)하고 있음 |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충족 : 10.0% 이상 b) 미충족 :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붙임2) 정량지표 현황 양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 우리대학의 장학금지급률은 2020회계연도 17.3%, 2021회계연도 16.0%로 전문대학기관평가 인증 기준인 10.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5.1.2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 준수 확인 b) 학생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자치회활동규정(제정 1989.3.1., 개정 2022.1.1.)」, 제1장 제7조(활동) 2. 「학생지도위원회규정(제정 1972.3.1., 개정 2022.1.1.)」, 제5조(기능) 3. 「동아리 운영규정(제정 2011.3.1., 개정 2022.1.1.)」, 제1조(목적) 4. 「교육방송국 운영규정(제정 1984.4.30., 개정 2016.2.1.)」, 제1장(총칙) 5. 「학보사 운영규정(제정 1981.3.1., 개정 2016.2.1.)」, 제1장(총칙) 6. 학생지원처 업무분장 7. 학생자치회명단(2021, 2022학년도) 8. 학생지원처 소관 학생지도위원회 구성 9. 교육방송국 계획서, 자체평가 회의록(2021학년도) 10. 학보사 계획서, 자체평가 회의록(2021, 2022학년도) 11. 기타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실적 자료(2021, 2022학년도) 12. 동아리 간부학생 동아리 장학금 지원(2021, 2022학년도) 13. 학생자치회 임원에게 봉사장학금 지원(2021, 2022학년도) 14.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록(축제 추가 지원) 15. 복지위원회 회의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달성,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지원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학생복지, 건강 증진, 장학제도 및 학생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 준수하여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5) · 학생자치회활동규정: 총칙, 학생총회, 총학생회, 학과위원회, 재정, 졸업준비위원회 등 · 동아리 운영규정: 목적, 정의 자격 및 구성, 등록요건, 등록절차 및 승인, 구비서류, 임원선출, 지도교수의 권리와 의무, 재정, 등록취소 등 · 교육방송국 운영규정: 목적, 적용, 방침, 소재, 기구, 임원, 정기회의, 방송운영위원회 등 · 학보사 운영규정: 총칙, 임원 및 조직, 운영위원회, 편집회의, 징계 및 포상, 회계 등 <p>b) 학생활동 지원조직 및 추진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 학과위원회, 교육방송국, 학보사,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 학보사 운영위원회, 방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입증자료 7, 8) ·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 후 7개 집행부 부서의 부장을 총학생회장의 임명으로 구성되며, 학보사 운영위원회, 방송운영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을 포함한 부처장급 이상의 보직교수로 구성되고, 학생지도위원회는 전임교수 전체로 구성됨 ·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조직 및 편제,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및 결산 등 학생자치회 활동 전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학보사운영위원회는 학보사 운영 관한 내용, 방송운영위원회는 방송국운영, 예산·결산 등 방송국 활동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음 (입증자료 9, 10) · 학생지원처는 학생지원팀, 진로취업지원팀(경력개발지원팀), 건강관리실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 부속기관인 학생상담센터, 인권·성평등센터(성평등센터)와 연계하여 학생활동 지원조직을 운영함 (입증자료 6) · 학생자치활동 담당 부서인 학생지원팀 외에 진로취업지원팀에서 취업동아리,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동아리, 기획처에서 JUST(온라인홍보단) 등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음 |

- 2021학년도에 복지위원회 회의를 2회 실시하여 학생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과 복지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복지위원회 규정과 학생지원서비스 운영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을 심의함. 복지위원회 규정은 학생지원서비스 운영 규정에서 정의한 규정으로 연관된 학생지원서비스 운영 규정과 마찬가지로 조문별 연관된 개별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중복의 개념이 강해 폐지 심의 (입증자료 15)
-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여 학생축제 추가지원 계획을 의결함 (입증자료 14)
- 학생자치활동 지원 현황 (입증자료 11, 12, 13)
 - 동아리 등록은 매년 초에 진행하며, 임원은 소속 동아리에서 회원의 선거로 선출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원활한 학생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아리별 간부학생 동아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제, 체육대회 등 학생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총학생회 활동지원: 축제, 체육대회, 졸업앨범제작지원금 등 행사별 계획에 따라 장소, 비용, 교직원 참석 등 지원
 -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물적 지원으로 총학생회실, 학과위원회실, 동아리실, 학보사, 교육방송국, 자료보관실 등 사무공간을 제공
 - 장학금: 총학생회 회장/부회장/임원, 학과위원회 임원 및 과대표, 동아리 임원, 학보사/교육방송국 소속 학생들에게 봉사장학금 지급(2021학년도 총 1,706명 총 615,311,480원, 2022학년도 총 751명 총 247,540,240원)
 - 학보사 편집국장 및 교육방송국 실무국장에게는 졸업시 공로상(총장상)을 수여하여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지원
 -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우리대학 학보인‘장안대학교 학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음
 -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교육방송국은 정규방송을 운영함. 정규방송은 시간표에 따라 운영되며, 정규방송 시간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유함
- 학생자치활동 참여 학생 면담
 - 학과위원회, 과대표 등을 통하여 상시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반영 및 조치하고 있음
 - 2022학년도 개선사항: 2022학년도 축제 지원을 위해 1,200만원 추가 예산 편성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학생활동 지원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학생활동 지원 연간 운영계획 및 지원 실적 확인 b) 학생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학생자치회 행·재정적 지원 자료(2021, 2022학년도) 2. 학생지도위원회 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3. 기타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실적 자료(2021, 2022학년도) 4. 학생생활연구(2021, 2022학년도) 5. 학생서비스 Q&A 민원 6. 수리요구서철 7. 동아리 사업계획서(2021, 2022학년도) 8. 동아리 봉사 장학금지급(2021, 2022학년도) 9. 동아리 등록 신청서 10. 학생활동 지원 연간 운영계획(2021, 2022학년도) 11. 학생활동 지원 평가 관련 자료(2021, 2022학년도) 12. 서비스 개선 실적철(2022학년도) 13.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조사 시행 및 결과(2021학년도, 2022학년도) 14. 학생자치회, 학생과의 간담회 자료(2021학년도,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학생활동 지원 연간 운영계획 및 지원 실적 - 대학의 역할은 학생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이며, 우리대학에서는 학생회장 선거, 축제,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각종 자치행사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입증자료 1, 2, 3) · 우리대학에서는 학생자치회의 학생자치활동 운영계획을 통해 학생회장 선거, 축제,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각종 자치행사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입증자료 7, 9) ·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물적 지원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함 · 총학생회 활동지원: 축제, 체육대회, 졸업앨범제작지원금 등 행사별 계획에 따라 장소, 비용, 교직원 참석 등 지원 · 2022학년도 학교축제 지원예산을 15,720,000원에서 27,720,000원으로 1,200만원 추가 편성 · 우리 대학은 각 동아리들의 사업계획을 취합 후 검토하고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동아리 봉사장학금: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별 선발된 임원에게 봉사장학금 지급 (2021학년도 총 7명 총 6,500,000원, 2022학년도 총 6명 총 2,700,000원) (입증자료 8) · 학보사 및 교육방송국의 언론활동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함 · 학보 비치대 13개 설치, 2021년 2월 공로상(총장상) 수여, 2022년 2월 공로상(총장상) 수여 · 학보사 및 교육방송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료 대비 지급비율을 달리 하여 전원 봉사장학금을 지급(2021학년도 총 17명 총 25,000,000원, 2022학년도 총 29명 총 26,300,000원) -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연간 서비스계획 수립 및 운영 (입증자료 11) · 학생자치기구, 학회장, 새내기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 및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 장애우 만족도 조사, 학교 홈페이지내 Q&A 게시판, 학생생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지원 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입증자료 5, 6) b) 학생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 연간 학생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학생생활연구, 재학생·졸업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간서비스 계획 수립에 활용함 (입증자료 4, 10, 11, 12, 13, |

14)

· 2021학년도 만족도 조사 실시(학생생활연구): 1학년(대학에 기대하는 부분 중 교육시설/복지 19.8%,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32.6%), 2학년(대학 추천이유 중 서비스/복지 11%, 장학제도 11.7%,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42%)

· 2022학년도 만족도 조사 실시(학생생활연구): 1학년(대학에 기대하는 부분 중 교육시설/복지 20%,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24%), 2학년(대학 추천이유 중 서비스/복지 8%, 장학제도 8%, 학생상담센터 인지도 46%)

- 2021년 재학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실적으로는 스쿨버스 개선을 요구하여 노선별 증차 및 신규노선을 신설 했으며, 학생생활연구조사에서 편의점 판매물품의 종류 및 준비 수량이 부족함을 호소하여 편의점 판매물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대하였고, 수리요구서에서 강의실, 복도 등 전등 수리를 요구하여 노후 전구를 즉시 교체하였으며, Q&A에서 국가장학금지원에 대한 홍보를 요구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종 SNS 및 협조문을 통한 학과홍보를 진행함. 졸업생 만족도 조사에서는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확충을 요구하여 취업멘토링, 진학지원프로그램 분야를 운영함

- 2022년 재학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실적으로는 스쿨버스 개선을 요구하여 신규노선을 신설하였으며, 학생생활 연구조사에서는 편의점 판매물품의 종류 및 수량이 부족함을 호소하여 편의점 판매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대하고, 수리요구서에서는 생활관 벽지 수리를 요구하여 벽지를 교체하였음

-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서비스 Q&A게시판을 통해 학생서비스에 대한 질문과 요구를 매일 확인 후 즉각 대응함. 2021년~2022년에는 학적 관련된 문의사항 처리 71건, 수강신청 및 수업 관련된 문의사항 처리 34건,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사항 처리 7건, 학점 및 출석 관련 문의사항 처리 15건, 장학금 관련 문의 사항 처리 93건, 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사항 처리 8건, 스쿨버스 관련 문의사항 처리 11건, 등록금 관련 문의사항 처리 42건, 국가근로 관련 문의사항 처리 3건, 재수강 및 계절학기 관련 문의사항 처리 7건, 학사 관련 문의사항 5건, 기타 관련 문의사항 처리 128, 총 424건 처리. 개선 내용으로는 교내장학금 신청 방법 전산화 도입하고 문의 및 건의사항은 홈페이지, SNS, 문자서비스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스쿨버스 및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담당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

- 학생의 언론활동과 이를 보장 및 장려하기 위한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

- 학보사와 교육방송국은 매년 초 구성원이 모여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함
- 자체평가회의를 개최, 해당년도의 실시사항을 점검 후 개선사항을 도출함
- 주간의 참가 의무화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평가결과 개선 후 환류
- 활동은 회의결과로 기록하며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서를 작성함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은 학생행사 관련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학생행사 안전관리 관련 규정 확인 b) 학생행사 안전관리 관련 추진체제 확인 c) 학생행사 안전관리 운영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생활 안전관리 규정(제정 2016.7.1., 개정 2020.3.23.)」, 제5조(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및 조치) 2.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3. 학생지원처 업무분장((2021년 학생지원팀 내부감사자료 제출, 2021.4.13.), (2022년 학생지원팀 내부감사자료 제출, 2022.5.9.)) 4. 학과 M.T 지원(2021, 2022학년도) 5. 학교경영배상책임보험 가입(2021, 2022학년도) 6.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교육 실시 7.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결과(2021학년도) 8.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적 자료: 소방안전교육, 온라인 안전교육(2021, 2022학년도) 9. 홈페이지 '건물별 피난안내도' 캡처화면 10. 감염병관리규정,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학생행사 안전관리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학과 M.T, 체육대회, 축제, 동아리활동, 교내 신입생 OT 등 학생행사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생활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 사전준비 및 행사 지도시 철저히 점검함. 특히 집단연수 행사 전에는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배포하여 의무적으로 계획서 제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점검함 (입증자료 1, 2) <p>b) 학생행사 안전관리 관련 추진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 학생지원처에서는 학생행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지원팀, 관리팀, 총무팀, 건강관리실과 연계하여 학생행사 지원조직을 운영함 (입증자료 3) - 사고발생시 담당 부서별 역할 및 조치사항으로 사고자 또는 최초 발견자가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여 학과 사무실 및 학생지원팀에 신고하고 건강관리실은 응급조치 또는 환자를 후송하고 학생지원팀에 사고내용을 보고하며 관리팀에서는 화재, 전기, 가스사고 발생시 안전하게 주변 대피조치를 하고 학생지원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함 <p>c) 학생행사 안전관리 운영 실적 (입증자료 4, 5, 6, 7, 8, 9,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 안전관리 규정을 기반으로 안전관리대책에 의거 차량, 숙소, 보험 등 관련사항 사전 확인 후 행사를 계획하여 진행하도록 지도함 - 학과 M.T, 체육대회, 축제 등 학생행사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생활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 사전준비 및 행사 지도시 철저히 점검함. 특히 집단연수 행사 전에는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배포하여 의무적으로 계획서 제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점검함(2021, 2022학년도) - 경영배상책임보험 가입: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1인당·1사고당 100,000천원, 치료비 특별약관 1인당·1사고당 5,000천원 - 총무처 관리팀에서는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시 대피요령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실험·실습위주학과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12개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상시 대처방안을 숙지하여 연구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함 -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안전문화 개선과 관련 '건물별 |

피난안내도를 공지하여 홍보함

- 매년 국가근로장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학생지원처는 2016년부터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대학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감염병관리규정,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구축함

5.1.3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규정 확인 b)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c) 유(有)자격 전문 상담사 배치 확인 ※ 학생상담(학습상담, 진로지도, 심리상담 등)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제정 2011.5.1., 개정 2016.4.1.) 2. 학생지도 및 상담규정(제정 2014.11.1., 개정 2021.1.4.) 3. 지도교수제 운영규정(제정 2010.3.1., 개정 2020.3.23.) 4. 교수학습지원규정(제정 2011.7.1., 개정 2018.6.1.) 5.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제정 2011.5.1., 개정 2022.8.30.) 6. 창업지원규정(제정 2017.7.1., 개정 2021.1.4.) 7. 취·창업센터 운영규정(제정 2021.1.4., 개정 2021.1.4.) 8. 상담교수 업무지침 9. 학생상담센터 부서발전계획서(2021, 2022학년도) 10. 경력개발센터 부서발전계획서(2021, 2022학년도) 11. 취·창업지원센터 부서 성과평가보고서(2021, 2022학년도) 12. 교수학습개발센터 부서발전계획서(2021, 2022학년도) 13. 교무팀 부서발전계획서(2021, 2022학년도) 14. 학생지원팀 부서발전계획서(2021, 2022학년도) 15.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화성시자살예방센터와의 업무협약서(2016.3.22) 16. 협성대학교와의 업무협약서(2020.12.18.) 17. 용인정신병원과의 업무협약서(2022.2.7.) 18. 립스연구소와의 업무협약서(2018.10.13) 19. 학생상담센터 오픈채팅방 프로그램 결과보고서(2022학년도) 20. 학생상담센터 이력 및 경력, 자격입증 자료 21. 경력개발지원팀 이력 및 경력, 자격입증 자료 22. 학생상담센터 업무지침 및 업무편람(2012.6., 개인상담, 심리검사, 자퇴상담) 23. 진로지도사 2급 취득자 명단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규정</p> <p>– 우리대학은 학생의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반 사항에 대한 운영 규정 및 지침을 갖추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5, 6, 7)</p> <p>·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 지도교수제 운영규정, 학생지도 및 상담규정 등에 따라 재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학습목표 달성,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시행, 평가 및 환류하고 있음</p> <p>· 학생지원처의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경력개발지원팀, 취·창업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학과 지도교수 등은 각 규정에 의거하여 재학생의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매년 각 부서에서는 부서발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심의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차년도 사업에 환류하고 있음</p> <p>· 학생상담센터는 상근 상담사외에 상담교수 업무지침을 통해 심리상담 관련 유자격자인 전임교원을 활용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도 하였음. 다만 2022학년도에는 재학생 정원이 감소하여 학과 내 교원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담교수의 활용은 중단되었음 (입증자료 8)</p> |

- b)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관련 조직 및 추진체제 (입증자료 9, 10, 11, 12, 13, 14)
- 중장기발전계획에 입각,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강화, 학생집중 관리 프로세스 구축, 비교과 프로그램 매칭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관련 부서들이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진로 및 심리상담은 사전조사 → 1차 기초상담 → 2차 전문상담 프로세스로 추진됨
 - 학생상담센터는 사무공간과 상담공간이 복합된 형태이며,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전반적인 마음건강관련 업무, 위기개입, 각종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신입생 포함 재학생의 니즈와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발달 수준 등을 사전 조사하여 그결과를 학생이력시스템(J-CAP)에 탑재하며, 학과 및 행정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공함. 학과 지도교수는 1대1맞춤상담을 진행하며, 고위험군 학생은 2차 전문상담으로 연계함
 - 학생상담센터는 대학생활 실태조사, 적응진단검사(1-2차), 진로발달검사, 적응력 향상 집단프로그램 및 심층 심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 심의 의결함
 - 지역사회 유관기관인 용인정신병원,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협성대학교, 림스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하고 있음 (입증자료 15, 16, 17, 18)
 - 경력개발지원팀은 우리 대학 4개 학부를 전담하는 4명의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학부 및 학과 특성 맞춤형으로 진로 및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상시로 운영함
 - 경력개발지원팀 컨설턴트들은 각 상담실에서 상주하여 취업 정보 제공 및 직업흥미검사, 진로 탐색, 진로설계, 취업상담 등의 개인 진로상담을 운영하며, 각 학부 특성에 맞는 장안 진로직업박람회, 찾아가는 진로특강 등의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함
 - 취·창업지원센터는 사무공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창업상담을 진행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팀에게 전문컨설팅을 지원함
 -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재학생의 기초 학습능력을 진단 평가하여 개선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술정보관 디스커션룸 활용하여 일대일 맞춤 학습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함
 - 학과 지도교수 및 진로지도사 자격 교원은 학생들에게 상담 가능 시간을 고시하고, J-CAP을 활용하여 학생 지도 및 상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지도교수는 J-CAP에 탑재된 학생의 중도탈락위험성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여 그 내용을 개인, 진로, 자퇴, 학업, 휴·복학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록 관리함
 - 대학은 학생지도 및 상담규정에 의거 학과교수의 상담실적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함
- c) 유(有)자격 전문 상담사 배치
- 학생상담센터 전담 조직은 센터장 1명, 전문상담사 1명, 행정조교 1명, 유자격 상담교수 1명 (2021)이 배치되어 있으며, 임상심리학 박사(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학교심리사 1급), 상담심리학 석사(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등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음
 - 경력개발지원팀에서는 전문 컨설턴트 4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음
 - 학과 지도교수 68명은 진로지도사 2급 자격을 소유하고 있음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학생진로 및 심리상담 운영실적에 대해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진로·심리 상담 운영실적 b) 진로·심리 상담 운영 평가 및 개선 실적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 및 이용자 현황 (2021, 2022학년도) 2. 자퇴상담일지(자퇴원서) (2021, 2022학년도) 3. 상담 예약현황(상담시간표) (2021, 2022학년도) 4. 대학생활 실태조사 및 학생생활연구 발간 (2021, 2022학년도) 5. 대학생활 적응검사 (J-CAP답제) 1-2차 및 진로발달검사 결과보고서 (2021, 2022학년도) 6. 학과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1, 2022학년도) 7.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1, 2022학년도) 8. 학생 수요 기반 특강 (2021 대인관계 향상 특강 결과보고서, 2022 인성함양 및 불안관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9. 자기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1, 2022학년도) 10.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프로그램 (2021, 2022학년도) 11. 대학생활적응 토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1학년도) 12. 진로발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1, 2022학년도) 13.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평가 (2021, 2022학년도) 14. 학생상담센터 online 방탈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2학년도) 15. 학생상담센터 오픈채팅방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2학년도) 16.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2학년도) 17. 학교와 전화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2학년도) 18. 장안 멘토링진로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2학년도) 19. 배려학생 전화상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2학년도) 20. 학사경고자 대상 전화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학습컨설팅 연계 요청 (2021, 2022학년도) 21. 찾아가는 마음버스 학생상담센터 홍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2.6.27./2022학년도) 22. 취업컨설팅 운영 문서철 (2021, 2022학년도) 23. 취·창업지원교육센터 창업컨설팅 문서철 (2021, 2022학년도) 24.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문서철 (2021, 2022학년도) 25. J-CAP학생이력관리시스템 지도교수상담이력건수 보고 및 상담운영실적 (2021,2022학년도) 26. 학생상담센터 성과평가보고서 (2021, 2022학년도) 27.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진로·심리 상담 운영실적</p> <p>－ 학생상담센터에서 재학생의 제반 심리적응 및 중도탈락예방과 관련한 심층적 진로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도별 운영실적과 집행금액은 다음과 같음 (입증자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에는 총 12개 프로그램이 운영됨 · 대학생활 실태조사(2,458명, 5,856천원), 적응검사(3,520명, 9,695천원), 학과적응력 PG(787명, 2,476천원), 자살예방 PG(321명, 595천원), 수요맞춤 특강(454명, 685천원), 자기개발프로젝트 PG(4명),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PG(233명, 1,500천원), 중도탈락예방 PG토담(321명, 800천원), 진로발달 PG(103명, 1,400천원),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평가(1031명, 0천원), 자퇴상담(246명), 개인(해석)심리상담(153건) · 2022년에는 총 17개 프로그램이 운영됨 · 기존 프로그램의 실적은 다음과 같음. 대학생활 실태조사(2,600명, 2,000천원), 적응검사(2,932명, 7,371천원), 학과적응력 PG(787명, 6,000천원), 자살예방 PG(758명, 560천원), 수요 |

맞춤 특강(330명, 698천원), 자기개발프로젝트 PG(9명, 367천원),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PG(203명, 1,473천원), 진로발달 PG(85명, 1,000천원),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평가 (1,136명), 자퇴상담(237명), 개인(해석)심리상담(111건)

-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비대면 수업상황이 지속되고 학생정원 감소와 같은 대내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실효성이 낮은 프로그램을 폐지(중도탈락예방프로그램 토담)하고 예산 없이 운영 가능한 PG 포함하여 총 6개 PG 신설을 심의·의결하였음 (입증자료 13)

- 2022년 신설된 6개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Online방탈출게임(85명), 오픈채팅방(16명), 스트레스 관리 PG(6명, 398천원), 학교와 전화상담 PG(34명, 283천원), 장안 진로멘토링 PG(10명, 1,919천원), 배려학생 전화상담 PG(12명, 57천원) (입증자료 14, 15, 16, 17, 18, 19, 20)

- 또한 업무협약 기관인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6명) 홍보 PG를 진행함 (입증자료 21)

- 경력개발지원팀 학생 진로 상담관련 운영 프로그램의 실적과 집행금액은 다음과 같음 (입증자료 22)

- 2021년에는 진로·진학설명회(75명), 장안진로직업박람회(1,057명, 35,000천원), 찾아가는 진로특강(399명), 커리어로드맵 공모전(938명, 129,200천원), 취업상담(1,344명), 구직서류면접클리닉(789명), 취업알선/정보제공(12,136명) 등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22년에는 장안진로직업박람회(678명, 30,000천원), 찾아가는 진로특강(615명), 취업상담(3,425건), 구직서류면접클리닉(1,318건), 취업알선/정보제공(117,846건) 등 총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취업지원센터에서 학생 진로상담 관련 창업컨설팅 실적과 집행금액은 다음과 같음. 2021년 7명, 2,000천원, 2022년 2명, 1,000천원 (입증자료 23)

-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 학습관련 상담 실적 및 집행금액은 다음과 같음 (입증자료 24)

- 2021년 학습컨설팅(10명, 2,000천원), 기초학습향상프로그램(301명, 996천원)

- 2022년 학습컨설팅(5명, 1,000천원), 기초학습향상프로그램(247명, 996천원)

- 학과 지도교수의 J-CAP 상담이력 건수는 다음과 같음 (입증자료 25)

- 2021년 개인상담(2,592건), 자퇴상담(278건), 진로상담(3,124건), 취업상담(2,438건), 학업상담(3,956건), 휴·복학상담(739건)

- 2022년 개인상담(2,116건), 자퇴상담(400건), 진로상담(2,116건), 취업상담(4,233건), 학업상담(3,264건), 휴·복학상담(1,482건)

- 상담 관련 운영일지(상담시간표 등)

- 학생상담센터 센터장은 매주 이용자현황을 포함한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상담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매월 간부회의 및 학과장 회의에 정례적으로 보고함

- 전문 상담사는 1일 8시간을 상근하며, 상담 예약상황에 따라 절차대로 상담을 시행하며 학과 요청 위기 개입의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함

- 상담은 접수→검사→해석 및 개인 상담의 절차로 진행되며, 행정조교는 예약 시간 및 현황을 관리하여 학생들에게 상담센터 방문을 주기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전문상담자가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b) 진로·심리 상담 운영 평가 및 개선 실적

- 우리대학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PDCA 평가·환류체제에 따라 사전 요구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은 개발 운영하며, 사업 결과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환류함

- 적응검사는 신입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목적으로 매년 2회 시행되며, 3월 1차 검사에서 진단된 고위험군의 비율이 5월 2차 검사에서 감소하는지를 분석함. 학생상담센터에서는 고위험군 학생의 결과를 학과로 통보하여 지도교수가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상담과 집단프로그램(학교와 전화상담)을 직접 운영함

- 2021년 적응검사 1차 고위험군 비율 18.2%→ 2차 14.2%로 4.0%p 감소. 2022년 적응검사 1차 고위험군 비율 22.0%→2차 13.5%로 8.5%p 감소.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2021년 86.5% → 2022년 99.2%로 12.7%p 증가

- 진로발달검사의 경우, 2021년 진로미발달 고위험군 13.0% → 2022년 12.2%로 감소. 이는 교내 진로 심리상담 유관 부서에서 각종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한 결과로 판단됨

- 대학생활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학생생활연구로 발간되어 전교직원에게 PDF로 송부됨

- 학생 수요에 기반하여 특강 주제 선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 대인관계향상, 2022년 인성 함양 및 불안관리를 특강의 주제로 선정하여 운영함
- 프로그램 요구 및 평가조사결과,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다양성 2021년 3.25 → 2022년 3.26, 만족도 2021년 3.30 → 2022년 3.25)

- 학생상담센터의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선 및 환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입증자료 26, 27)

- 학과 지도교수의 J-CAP 학생상담 이력 건수는 2021년 총 12,261건, 2022년 총 10,971건이며 2022년 입학정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 지도교수의 지도학생 상담은 내실 있게 운영됨
-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2021년 참가자 321명, 만족도 4.18 → 2022년 참가자 758명, 만족도 4.27로 개선
- MZ세대 트렌드에 적합한 온라인 방식의 홍보 및 온라인 앱 매체 활용 상담 프로그램 신설 운영 등 시의성 있는 양질의 상담제공
 - 예) Online방탈출 게임, 오픈채팅방, 패들렛(Padlet)앱 활용 자기개발 1515프로젝트 운영. 홍보만족도 2021년 3.26 → 2022년 3.29로 개선
-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2021년 상담참여율 47.9%, 실제등록률 42.9% → 2022년 상담참여율 67.7%, 실제등록률 47.6%로 특히 실제등록률이 전년도에 비해 4.7%p 개선됨. 이는 학생상담센터 전문 상담자의 전화상담 개입이 학사경고자의 졸업의지 강화에 유효함을 나타냄
- 학사경고자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컨설팅 프로그램으로 2021년 10명 → 2022년 12명 연계함

- 경력개발지원팀의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영역의 주요 개선 및 환류 실적은 다음과 같음

- 찾아가는 진로특강 2021년 399건 → 2022년 615건, 취업상담 2021년 1,344건 → 2022년 3,425건, 구직 서류 면접 클리닉 2021년 789건 → 2022년 1,318건, 취업알선/정보제공 2021년 12,136건 → 2022년 117,846건. 이러한 대폭 개선은 4개 학부별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재학생에게 문자, 카톡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학과 단위 비교과 통합프로그램을 활성화한 결과임

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p>a)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시행 확인</p> <p>b)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확인</p> <p>c)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현황 및 확대 노력 확인</p> <p>※ 장애학생과 관련된 내용은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결과 확인으로 대체 가능</p> <p>※ 소수집단 학생 : 다문화가족, 외국인, 탈북민 학생 등</p>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학생지원규정(제정 2011.3.1., 개정 2016.3.1.)」, 제2장(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2. 「장학금지급규정(제정 1980.3.6., 개정 2020.1.22.)」, 제2장(장학금의 종류) 3.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2.1.1.)」, 제2장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4. 「외국인 유학생 입학·지도관리 규정(제정 2007.8.1., 개정 2022.5.13.)」, 제1조(목적) 5. 「교육시설 및 물적자원 관리규정(제정 2011.7.1., 개정 2016.1.1.)」, 제8조(학생복지 시설) 6. 「장안대학교 학칙(제정 2001.9.17., 개정 2023.2.13.)」, 제8장 제43조(수강신청) 7. 업무분장(학생지원처) 8. 장애학생 상담일지, 장애학생 다문화 가족 학생 지원 실적(2021, 2022년도) 9. 장애학생복지지원계획(2021, 2022년도) 10. 장애학생 간담회 자료(2021년도) 11. 다문화·탈북 학생지원계획 및 회의 자료 12. 장애학생 인식개선 교육 자료(2021, 2022년도) 13. 곰두리 장학금, 다문화가정 장학금 지급(2021, 2022학년도) 14. 편의시설 관련 증빙자료(2021, 2022학년도) 15.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회의록 16. ‘홈페이지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가지 언어 버전으로 제공’ 캡처화면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장애학생 지원 관련 내용) 반영 및 장애학생 관련 제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안대학교 학칙 제8장 제43조(수강신청)에서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게는 우선 수강신청을 허가하고 수업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규정화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규정」, 「장학금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 소수집단(외국인 포함) 학생 관련 제도, 규정 또는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소수집단(다문화가족, 외국인학생)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규정」, 「외국인 유학생 입학·지도관리 규정」, 「장학금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2, 3, 4) · 외국인유학생 입학·지도관리 규정은 학칙의 적용, 입학자격, 입학전형, 학급편성 등, 교육비 등의 책정, 전과, 학적상실자에 대한 조치, 특별장학금의 지급, 유학생 지도 및 관리 등 외국인유학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화하여 지원하고 있음 (입증자료 4, 6) - 소수집단 및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대학의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학생지원처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담직원이 교내 생활 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전문위원 및 지도교수가 장애학생 상담을 실시(2021학년도 7명 30건, 2022학년도 10명 54건) (입증자료 7, 8, 10) · 전문위원 및 지도교수가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 서비스 제공, 협조문을 통한 곰두리 장학금 지급 학과 홍보, 대학 홈페이지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 각 건물 보행로, 보조손잡이 설치, 운영 |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학칙 제43조 6항, 7항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부서인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이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의 의견을 수렴 (입증자료 9, 10)

·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곰두리 장학금(2021학년도 총 6명 총 6,371,600원, 2022학년도 총 4명 총 4,000,000원)과 다문화가정 장학금(2021학년도 총 8명 총 5,000,000원, 2022학년도 총 6명 총 4,000,000원)을 지급 (입증자료 13)

· 학생지원처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직원이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소수집단 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규정 제4장 제8조(생활정보 및 교육 지원)'에서 소수집단 학생이 교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입증자료 11, 12)

b)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 장애학생지원규정의 제4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총무처장, 총무계장, 관리계장을 위원으로 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임 (입증자료 15)

- 장애학생지원규정의 제5장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장애학생지원서비스, 장애학생 상담,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및 개선,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를 수행함 (입증자료 9)

- 학생지원처 산하의 학생지원팀에서 장애학생 지원 활동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학생지원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임 (입증자료 7)

c)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현황 및 확대 노력 (입증자료 5, 14, 16)

- 장애학생 전용 보행로(5곳), 엘리베이터(7개관), 열람석(18개), 화장실(6개관), 주차장(30개소) 지원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해 홈페이지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가지 언어 버전으로 제공

5.2 교육시설

5.2.1 도서관

| | |
|--------------------------------|--|
| 세부평가요소 | (1) 도서관은 규정 및 추진체제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 확인 b) 도서관 운영 관련 조직 및 추진체제 확인 c) 유(有)자격 전문 인력 배치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장안대학교 학칙(2001.9.17., 2023.2.23.) 제18장 제89조(부속기관) 2. 학술정보관 운영규정(1979.6.1., 2022.2.17.) 3. 부서발전계획서(2021, 2022) 4. 담당자 사서자격증 사본(도서 업무담당자) 5. 직무교육 실적 증빙 (21/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 - 도서관 운영 관련 규정(또는 지침) · ‘장안대학교 학칙’ 제18장 제89조(부속기관) 및 ‘학술정보관 운영규정’에 따라 학술정보관 운영 (입증자료 1, 2) b) 도서관 운영 관련 조직 및 추진체제 - 도서관 전담인력 현황 및 업무 분장 · 부서발전계획서(2021, 2022)의 3. 부서 현황에 조직도, 구성원 현황, 부서업무분장을 명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3) · 우리 대학 학술정보관은 대학의 부속 기관으로 국내외 도서, 자료 등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학술연구 조사 및 대학교육 활동을 위한 자료봉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 및 조직 등의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음 · 학술정보관장이 운영하고 정책 결정 및 관무를 총괄하며, 학술정보관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관장하는 사서를 두고 있음 · 학술정보관은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를 두고 있음 · 학술정보관장은 학술정보관 정책 결정 및 총괄 지휘하며, 학술정보팀장은 학술정보관 기획 및 운영을 총괄 함. 직원(사서)이 자료구입, 연속간행물, 상호대차, 전자도서관 관리, 통계관리 등 행정 실무 및 사서 업무를 담당함. 조교(사서)가 홈페이지 관리, 자료 열람(대출·반납), 자료정리, 기타 행정업무를 보조함 c) 유(有)자격 전문 인력 배치 - 담당자 배치 현황 및 자격증 사본(도서 업무담당자) (입증자료 4) · 학술정보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사서자격증과 다년간의 도서관 근무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 · 2021학년도에는 정사서 1급 자격을 취득한 사서 1명, 정사서 2급 자격을 취득한 사서 1명, 총 2명의 전문인력이 학술정보관에 근무함 · 2022학년도에는 정사서 1급 자격을 취득한 사서 1명, 정사서 2급 자격을 취득한 사서 2명, 총 3명의 전문인력이 학술정보관에 근무함 - 직무교육 실적(21/22학년도) · 학술정보관 사서 및 전문직원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에 참가하여 1인당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함 (입증자료 5) · 2021학년도에는 1인당 41시간 교육 이수함 |

· 2022학년도에는 1인당 28시간 교육 이수함

| | |
|-----------------------|--|
| 세부평가요소 | (2) 도서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도서관 운영계획 및 실적 확인 b) 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부서발전계획서(2021, 2022학년도) 2.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2021, 2022학년도) 3.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회의록(2021, 2022학년도) 4. 학술정보관 이용자 만족도조사 계획서(2021, 2022학년도) 5. 학술정보관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21, 2022학년도) 6. 학술정보관 운영규정(1979.6.1., 2022.2.17.), 제11장 제44조(서비스 평가) 7.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관련 문서(학술정보관-3527(2020.11.16.) 8. 2020 대학도서관 평가 자체진단 보고서 9. 2020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보고서 10. 제페토 메타버스 도서관 캡처 11. 독서주간행사 결과보고서(학술정보관-3496(2022.10.11.)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도서관 운영계획 및 실적 - 도서관 운영계획 · 우리 대학 학술정보관은 연도별 부서발전계획서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계획 및 실행 과제에 따른 진행스케줄이 부서발전계획서에 담겨 있음 (입증자료 1) ·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자료개발 및 확충, 시설 및 환경개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지역사회 연계 및 사회소외계층 서비스에 해당되는 약 13개 항목이며 각 사업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학술정보관 운영의 주요 사항들을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를 두어 심의하고 있음 (입증자료 3) - 도서관 운영 실적 · 우리 대학 학술정보관 운영실적은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에 담겨 있음 (입증자료 2) · 도서관 자료개발 및 확충을 위해 연간 재학생 1인당 1권 이상(21년:1.4권, 22년:1권),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1,600원 이상(21년:39,238원, 22년:38,772원) 달성 ·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협업공간 예약시스템(21년: 예산 1,000,000원) 도입 ·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참여·소통형 문화행사 (21년:5건, 22년:5건) 실시 ·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직원 1인당 직무교육 27시간 이상(21년:35시간, 22년:27시간) 이수 b) 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실적 - 도서관 운영 평가 관련 자료 : 만족도 조사 · 우리 대학은 ‘학술정보관 운영규정 제11장 제44조(서비스 평가)’에 의거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에 관한 평가 및 개선 활동을 실시함 (입증자료 4, 5, 6) · 만족도 조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매년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학술정보관의 서비스 개선과 정책수립에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 도서관 운영 평가 관련 자료 : 대학도서관 평가 (입증자료 7, 8, 9) · 2020학년도에 대학도서관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진단을 목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 평가 대상은 382개 대학도서관이며 평가 지표는 4개 분야, 24개임 · 평가 결과 94점으로 우리대학이 속한 그룹의 평균인 85.2 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그룹내 상위 40%로 분류 되었음 |

- 평가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선 실적 자료 :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
- 연도별 부서발전계획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술정보관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환류함
-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의 확장으로 전자책 구입비(예산 36,000,000원)를 확충하고 제페토에 메타버스 도서관을 개관함 (입증자료 10)
- 2022학년도에는 학술정보관 홍보 활동을 강화(인스타그램 운영: jau_library)하고 교직원도 참여 가능한 행사(다독다독 마음을 전하는 우책통)를 운영함 (참여인원: 학생 101명/교직원 46명) (입증자료 11)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결산)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충족 : 평가기간 내 평균 21.6천원 이상 b) 보완 :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c) 미충족 : 보완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붙임2) 정량지표 현황 양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 우리대학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20회계연도 32.5천 원, 2021회계연도 39.2천 원으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21.6천 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5.2.2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법정 교사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충족 : 교사확보율 100% 이상 b) 보완 :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c) 미충족 : 보완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붙임2) 정량지표 현황 양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 우리대학의 교사확보율은 2021학년도 242.4%, 2022학년도 261.6%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100.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교육시설 관리체제를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관련 규정 확인 b) 교육시설의 관리 및 개선(점검, 개·보수 등) 현황 확인 c)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관리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2.10.7.)」 부서발전계획서(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예산 편성 관련 입증자료)(2021, 2022학년도) 소방계획서 (2021, 2022학년도) 장안대학교 안전관리계획(홈페이지 공지) 시설/미화/청소 용역 계약서(전문인력 배치 입증자료) 시설물관리내역(2021, 2022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관리 업무 접수 처리 대장 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일지(전기시설, 가스시설) 정기점검(자체) 일지(보일러, 저수조) 정기점검(외주) 일지(소방시설, 승강기, 오수정화조, 교환기 및 전화기) 건축물 및 토목시설 점검 대장 계약 관련철(관리업체와 계약관련 입증자료) 전력 열화상 보고서 (2021, 2022학년도) 건축물 안전점검 보고서 (2021, 2022학년도) 여름철, 겨울철, 해빙기 안전관리철 (2021, 2022학년도)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실적 (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교육시설 관리 관련 규정(또는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대학은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대학은 「시설물관리규정」(입증자료 1)에 따라 일반시설, 화재예방 및 소방, 전기 및 통신 등의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절차와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p>b) 교육시설의 관리 및 개선(점검, 개·보수 등)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발전계획’(입증자료 2), ‘소방계획’(입증자료)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시설 및 캠퍼스 환경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안대학교 안전관리계획’(입증자료 4. 장안대학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 대학 시설과 구성원의 안전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5명을 배치(입증자료 5)하여 기계, 전기, 가스, 냉난방시설을 관리(입증자료)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승강기·오수정화조·교환기 및 전화기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업체와 계약(입증자료 7)하여 매월 점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안전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교내 전기 시설, 가스시설 등을 관리(입증자료 6)하고, 시설물 관리내역 또한 매일 작성하여 시설물 관련 민원과 해결내용을 기록 보관(입증자료 6)하고 있음 매년 외부 전문업체에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입증자료 8)하고, 주기적으로 외부 전문업체에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입증자료 9)하여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에 노력하고 있음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2021년 3월 / 2022년 3월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2021년 4월, 12월 / 2022년 6월, 12월 <p>c)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교육시설 안전관리, 유지보수, 개선 등 관련 실적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대학은 여름철, 겨울철, 해빙기에 자연재난 등에 대비 교육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학교 |

구성원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음 (입증자료 10)

- 우리대학은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강의실 환경 개선, 학생 지원시설 향상을 위해 매년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 등 적절한 예산(2021년 2,886,448,517원, 2022년 2,632,644,000원)을 편성(입증자료 2)하여 교내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1·2022학년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호텔경영과 실험·실습실 개선 공사, 운동처방과 실습실 바닥매트 공사 등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편의 향상 : 2021년 9월(입증자료 11.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실적(2021학년도, 34p)
- 노후된 자아실현관 기숙사 도어락 전면 교체를 통해 안전성 향상 및 기숙사 관리 효율성 개선 : 2021년 9월(입증자료 11.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실적(2021학년도, 37p)
- 노후된 외국어전용관 기숙사 내부를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2022년 6월(입증자료 11.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실적(2022학년도, 23p, 24p)
- 학생편의시설인 대학본부G층 잡카페의 벽면누수 보수공사를 통해 편의성을 높임 : 2022년 12월(입증자료 11.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실적(2022학년도, 66p)

5.2.3 정보보안 지원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및 준수 확인 b)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인 c) 행정 기록의 관리, 보관에 대한 안전성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2019.2.1.)」 2. 「개인정보처리방침(2021.12.13.)」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2019.1.1.)」 4. 「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2019.5.1.)」 5. 「보안업무규정(2014.9.1.)」 6.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지침(2019.1.1.)」 7.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기본계획(2022.1.5)」 8.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비상연락망 9. 개인정보보호 교육(2021년, 2022년) 10. 정보보호 용역사업업체 계약서 11.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지침(2021.12.) 12. 장안대학교 재해재난관리 매뉴얼_v1.0 13.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보고서 14. 개인정보보호관리 조직도 15. 정보보안관리규정(제정 2022년10월7일) 16. 정보보안 세부추진계획서 및 지침 2021년1월, 2022년12월 17. 정보보안 세부추진계획서에 따른 점검 및 이행 2021년, 2022년자료 18. 정보보안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2021, 2022학년도) 19. 정보보안 업무 세부추진계획(2021, 2022학년도) 20. 2021~2022년도 정보보안교육 21. 2021~2022년도 용역사업업체 정보보안 교육 22. 사이버·보안진단의날 결과보고(2021, 2022학년도) 23. 비밀번호 암호화 관리 24. 개인정보보호 관리 유지보수 계약서에 출력물 보안관리 솔루션 구매계약포함(2021, 2022학년도) 25. 소산 백업 및 원격 백업자료 26. VPN 신청서 및 접속 매뉴얼 27. 정보보안 지침 제6장 사이버침해 대응,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2021년, 2022년) 28. 사립대 정보보안 수준진단 분석 결과(2021, 2022학년도) 29. 「정보지원센터 전산운영 지침(2021, 2022학년도)」 제3장 접근통제 정책 30.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이행자료(2021, 2022학년도) 31.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 및 이행자료(2021, 2022학년도) 32. 정보보안조직도 및 사업예산(2021, 2022학년도) 33. 정보시스템점검대장 34.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 a)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및 준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또는 지침) |

현황 및
분석결과

- 우리대학은 학내업무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을 체계화하여 규정화하고 관리 규정을 갖추어 사이버 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비롯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5, 6, 11)
- 대학은 정보보안 시스템 보호를 위한 규정 및 지침으로 「정보보호관리규정」, 「정보보호관리지침」이 있으며, 정보보호 세부계획 수립(입증자료 1) 및 이행사항 점검결과보고를 통해 준수하고 있음(입증자료 17)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준수 입증 자료
 - 우리대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의무적 사항으로 대학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조직 책임자/담당자 및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있음(입증자료 8, 18)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화된 세부추진계획으로 정보자산을 보호 및 관리하고 있음(입증자료 7, 19)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입증 자료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이행으로 대학 교원 및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입증자료), 정보보안 교육(입증자료 20.), 용역사업업체 정보보안 교육(입증자료 21)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용역사업업체 계약체결 관리(입증자료 10), PC점검, 사이버·보안진단(입증자료 22), 암호화를 통한 비밀번호관리를 운영하고 있음(입증자료 23)
- b) 개인정보보호 체계
 -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실제 운영 체계
 - 개인정보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위기 대응 절차 매뉴얼(입증자료 11, 12)을 운영하여, 사고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있음
 - 대학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연 1회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계획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고 미비한 사항을 체크하여 보완하고 있음(입증자료 28)
 - 정보화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증자료 29),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입증자료 30), 침해사고 대책 수립 및 운영(입증자료 31), 정보보안 관리규정 및 계획(입증자료 15, 16, 20, 21, 30, 32, 30, 33) 등 관련 지표에 대한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28)
- c) 행정 기록의 관리, 보관에 대한 안전성 관련내용 기술
 - 행정 정보 보호 관련 계획이나 규정
 -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보안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하고 보안담당관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을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 정보보호 세부 계획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백신 및 최신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PC보안을 강화하고 대학 구성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등을 실시함 (입증자료 30)
 - 교내 위협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외부, 내부 네트워크를 실시간 탐지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서버 및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정기점검(매월)을 실시하여 네트워크 보안 사고를 예방함 (입증자료 31, 34)
 - 화재, 해킹 등으로부터의 정보 보호 계획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위기 대응 절차 매뉴얼(입증자료 27)을 운영하고 재해재난발생시 정보보호를 위한 매뉴얼(입증자료 12, 11)을 운영하여 사고 발생시, 침해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있음
 - 우리대학은 출력물 보안관리, 개인정보암호화를 지원하는 정보유출방지솔루션(DLP)을 구축(입증자료 24)하여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있음
 - 대학은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하여 별도의 건물(정보통신관)에 원격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 1회 백업을 실시 하고 있음
 - 백업 대상으로는 행정 및 학사데이터, 그룹웨어(교직원), 가상화시스템, 백업시스템, 홈페이지 데이터 등) (입증자료 25)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행정 시스템은 해킹에 대비하여 대학 내 서비스만 허용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가상사설망 VPN을 통하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입증자료 26)- 대학정보공시자료(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학년도 : 정보보안-보통 / 개인정보보호-우수 / 종합-보통· 2022학년도 : 정보보안-미흡 / 개인정보보호-보통 (입증자료 28) |
|--|---|

6. 교직원

6.1 교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개발

6.1.1 인사관리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교원의 인사관리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p>a) 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p> <p>b) 관련 법령의 준수 확인</p> <p>※ 교원의 범위 (전임, 강사, 비전임 포함)</p> <p>※ 교원 인사관리 (교원 임면, 재임용, 승진, 해임 등)</p>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법인 서립학원 정관」 (제정 1991.1.14., 개정 2022.4.12.), 제39조(임용)~제39조의5 (신규채용), 제10조(교원의 자격)~제18조(임용취소) 2. 「교원인사규정」 (제정 2011.5.1., 개정 2022.3.24.), 제10조(교원의 자격)~제18조(임용취소), 제35조(정년보장 임용대상)~제39조(탈락자에 대한 처리) 3. 「교원인사규정」 (제정 2011.5.1., 개정 2020.3.1.), 제19조(재임용대상)~제24조(재임용 및 해임시기), 제25조(정기승급)~제34조(승급 및 승진제한) 4. 「교원의 선발과 평가규정」 (제정 2011.7.1., 개정 2021.4.28.), 제5조(교원 임명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5.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1.3.1., 개정 2020.3.1.), 제2조(임용자격)~제5조(임용기간), 제6조(재임용)~제7조(임용기간 만료와 권리구제) 6.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1.3.1., 개정 2022.4.15.), 제2조(임용자격)~제5조(임용기간), 제6조(재임용)~제7조(임용기간 만료와 권리구제) 7.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평가규정」 (제정 2011.3.1., 개정 2020.3.1.), 제3장(평가시기 및 절차)~제4장(평가방법·영역 및 활용) 8. 「외국인 강의전담교원 임용규정」 (제정 2013.1.1., 개정 2020.6.1.), 제5조(임용절차 및 기간)~제7조(임용처리), 제8조(재임용기준 및 절차) 9. 「강사임용규정」 (제정 2019.8.1., 개정 2020.6.1.), 제2장(신규임용), 제3장(재임용) 10.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9.8.1., 개정 2022.3.24.), 제2장(신규임용), 제3장(재임용) 11. 「겸임(초빙)교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정 2010.3.1., 개정 2020.3.13.), 제3조(위촉기준)~제5조(겸임(초빙)교원 위촉기간) 12. 「겸임(초빙)교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정 2010.3.1., 개정 2022.1.1.), 제3조(위촉기준)~제5조(겸임(초빙)교원 위촉기간) 13. 「겸임(초빙)교원 재위촉 평가규정」 (제정 2013.9.1., 개정 2020.6.1.), 제3장(평가시기 및 절차)~제4장(평가방법·영역 및 활용) 14. 「겸임(초빙)교원 재위촉 평가규정」 (제정 2013.9.1., 개정 2022.1.1.), 제3장(평가시기 및 절차)~제4장(평가방법·영역 및 활용) 15. 교원 신규 임용(위촉) 평정 기준(교무-5778, 2022.1.21.) 16. 교원 신규 채용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초빙계획 기안문 등(2021, 2022학년도) 17. 교원 재임용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재임용 만료 통지서, 기안문 등(2021, 2022학년도) 18. 교원 승진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기안문 등(2022학년도) 19. 교원 해임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기안문 등(2021, 2022학년도) 20. 강사 신규 채용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채용계획, 기안문 등(2021, 2022학년도) 21. 겸임(초빙)교원 신규 위촉 절차 준수에 관한 자료: 채용계획, 기안문 등(2021, 2022학년도) 22.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목록(2021, 2022학년도)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a) 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준수 (입증자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의 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의 임면에 있어 내부 자체규정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교원인사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외국인강의 전담교원 임용규정」, 「교원의 선발과 평가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연봉제)전환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 및 교원의 신규 임용(위촉)평정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 전임교원 채용 관련 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39조(임용) 내지 제39조의5(신규채용), 교원인사규정 제10조(교원의 자격)~제18조(임용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임용자격)~제5조(임용기간), 외국인강의전담교원 임용규정 제5조(임용절차 및 기간)~제7조(임용처리), 교원의 선발과 평가규정 제5조(교원 임명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명시하고 있음
 - 전임교원 재임용 관련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39조(임용), 교원인사규정 제19조(재임용대상)~제24조(재임용 및 해임시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평가규정 제3장(평가시기 및 절차)~제4장(평가방법·영역 및 활용), 외국인강의전담교원 임용규정 제8조(재임용기준 및 절차), 교원의 선발과 평가규정 제5조(교원 임명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명시하고 있음
 - 전임교원 승진임용 관련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5조(정기승급)~제34조(승급 및 승진제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연봉제)전환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트랙전환)에 명시하고 있음
 - 전임교원 해임 관련 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44조(직위해제 및 면직)에 명시하고 있음
 - 정년보장교원 임용 관련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39조의3(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교원인사규정 제35조(정년보장 임용대상)~제39조(탈락자에 대한 처리)에 명시하고 있음
- 우리 대학 강사 관련 규정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비전임 교원 관련하여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채용, 임용기간 등 규정에 맞게 절차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
- 우리 대학 강사의 임면, 재임용 등에 관하여 내부 자체규정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 우리 대학 강사 임용 관련 규정은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자격)~제16조(면직사유)에 명시하고 있음
 - 우리 대학 강사 재임용 관련 규정은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재임용기간)~제20조(재임용 거부)에 명시하고 있음
- 전임교원 및 강사를 제외한 비전임교원 관련 규정은 「겸임(초빙)교원 위촉에 관한 규정」, 「겸임(초빙)교원 재위촉 평가규정」,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겸임교원, 초빙교원 위촉 관련 규정은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39조(임용), 겸임(초빙)교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겸임교원, 초빙교원 재위촉 관련 규정은 겸임(초빙)교원 재위촉 평가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의 임면, 재임용, 승진임용, 해임, 비전임교원(강사, 겸임(초빙)교원) 임면 등과 관련된 규정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공개 및 공유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소개→정보공개→제규정집에 공지하고 있음

b) 관련 법령의 준수 확인 (입증자료 16, 17, 18, 19, 20, 21, 22)

- 전임교원 신규 임용은 관련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등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2021학년도 신규 임용 2건(정○○, 강○○ 2021년 9월 1일 임용), 2022학년도 신규 임용 1건(손○○, 2022년 10월 1일 임용)의 실적이 있음
 - 신규채용: 채용계획수립→채용계획승인 제청(법인제청 및 법인승인)→채용공고(지원마감일 15일 이상)→심사위원위촉(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심사→임용 제청 후보자 선정→교원인사위원회 심의→임용 제청→이사회 심의 의결→임용→관할청 보고
 -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의 선발과 평가규정 제5조(교

원 임명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

- 신규채용 시 기초 및 전공심사(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하여 학문적 자질과 실무적 자질에 대하여 평가함
- 서류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경력(강의경력, 산업체경력), 연구(연구실적물, 연구경력), 전공적합성(학위논문, 근무경력)등을 심사함
-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교육환경 및 대학에 대한 이해, 교수로서의 교육관, 대학 및 학과 발전을 위한 방안, 교육역량, 산학협력 및 취업지도 방안, 학생지도 방안 등)를 통하여 2021년 9월 1일 및 2022년 10월 1일 최종 대상자를 선발함
-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관련 법령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 11조의4(계약제 임용 등)등에 명시된 절차 및 일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2021학년도 2회(2021년 3월 1일자, 2021년 9월 1일자), 2022학년도 2회(2022년 3월 1일자, 2022년 9월 1일자)의 실적이 있음
- 재임용: 임용기간 만료통보(4개월 전)→재임용 신청(만료통보 후 15일 이내)→교원인사위원회 개최(재임용 심의)→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재임용 결정)→재임용 여부 통보(2개월 전)→재임용→관할청 보고
- 교원의 재임용은 직위 및 직급에 따라 연구, 교육, 학생지도, 산학협력 등에 관하여 재임용 평가 기준을 달리 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재임용에 반영함
- 전임교원의 승진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25조(정기승급)~제34조(승급 및 승진제한)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2022학년도 승진 임용 1건(오○○, 2022년 5월 1일 임용)으로 정해진 절차로 진행함
- 교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소 연수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는 4년, 부교수에서 교수는 5년으로 최소 승진 소요연수, 연구 및 연수실적이 승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승진 대상자로 선정됨
- 승진임용: 승진 계획 수립→승진 대상자 통지→승진심사 신청→승진평가→승진 후보자 선정→교원인사위원회 심의(승진 임용 결정)→제청→승진 발령
- 전임교원의 해임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교원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2021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교원 해임 현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에 따른 재임용 거부로 인한 3건임
- 강사 재임용은 관련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등에 명시된 절차로 진행하였고 2021학년도 2회(2021년 3월 1일자, 2021년 9월 1일자), 2022학년도 2회(2022년 3월 1일자, 2022년 9월 1일자)의 실적이 있음
- 강사 신규 임용은 관련 법령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등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2021학년도 신규 임용자는 49명(1학기 26명, 2학기 23명), 2022학년도 신규임용자는 117명(1학기 45명, 2학기 72명)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함
- 강사 신규 임용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학력, 전공적합성, 강의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연구경력, 산업 연계 교과 지도계획의 독창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함
- 겸임(초빙)교원 재위촉은 2021학년도 2회(2021년 3월 1일자, 2021년 9월 1일자), 2022학년도 2회(2022년 3월 1일자, 2022년 9월 1일자)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해진 절차로 진행함
- 겸임(초빙)교원 신규 위촉은 관련 법령인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2021학년도 3월 신규 위촉자는 10명, 2022학년도 3월 신규 위촉자는 24명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함
- 겸임(초빙)교원 신규 위촉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학력, 전공적합성, 강의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연구경력, 산업체 직무경력을 활용한 교과 지도계획의 독창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기초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로 최종 대상자를 선발함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교원평가 관련 규정을 갖추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교원평가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 b)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적합성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법인 서림학원 정관」 (제정 1991.1.14., 개정 2022.4.12.),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제54조(운영세칙) 2. 「교수업적평가규정」 (제정 2006.3.1., 개정 2019.3.1.), 제1장(총칙)~제4장(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3.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6.3.1., 개정 2020.12.22.), 제1장(총칙)~제5장(봉사영역) 4.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6.3.1., 개정 2022.1.1.), 제1장(총칙)~제5장(봉사영역) 5. 「교원인사규정」 (제정 2011.5.1., 개정 2020.3.1.), 제3장(재임용)~제4장(승급 및 승진) 6. 「교원인사규정」 (제정 2011.5.1., 개정 2022.3.24.), 제3장(재임용)~제4장(승급 및 승진) 7.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위원회 구성(2021학년도) (교무-3310, 2021.9.1.) 8. 교수업적평가 시행 자료: 시행문, 회의록, 결과보고 문서 등(2021년도, 2022년도) 9. 교수업적평가 결과 활용 사례: 2022년 승진 임용 관련 자료, 기안문 등 10.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 목록(2021, 2022학년도) 11. 교원인사위원회 구성(2021, 2022학년도) (교무-1522, 2021.6.8.), (교무-1399, 2022.5.27.), (교무-459, 2023. 3. 29.) 12.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2021, 2022학년도) (교무-1526, 2021.6.8.) 13.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 (제정 2011.5.1., 개정 2016.3.1.), 제2조(구성) 14.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 (제정 2011.5.1., 개정 2022.1.1.), 제2조(구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a) 교원평가에 관한 규정 및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교원의 다양한 책무 이행(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을 제정하여 운영 중임 (입증자료 1, 2, 3, 4) - 교원 평가와 관련하여 「교원인사규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평가규정」 에 의거하여 교원의 재임용, 승진 등 교원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5, 6) - 교수업적평가는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전년도 10월 16일부터 당해연도 10월 15일까지 평가 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수업적평가를 시행함 (입증자료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업적평가에 규정된 항목을 준수하여 교수업적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함 · 전임교원의 업적은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된 종합표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있음 · 교수업적평가 영역은 교육영역, 산학협력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음 · 또한, 교수업적평가 시 실습지도, 취업지도, 기술개발, 산학협력 등 직업교육 활동을 산학협력 영역에 포함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교수업적평가의 절차: 교수업적평가 실시 승인 및 안내→실적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교원별)→실적에 대한 항목별 부서평가(항목별 평가 담당부서)→실적 항목별 부서평가결과 검증 및 배점→교수업적평가 심의(교수업적평가위원회)→개별 교원에게 업적평가점수 통보→이의신청 및 재 |

심사 청구→이의신청 심의(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의신청 심의 결과 통보 및 업적평가 결과보고→승진, 재임용 등 인사 사항 활용

-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심의는 물론 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평가 기구로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위촉 시 계열 안배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수업적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 우리 대학은 교원의 승진, 재임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 임용 시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활용할 것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2022년 5월 1일자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 임용 시 교수업적평가결과 우수자가 승진 임용됨 (입증자료 9)

b)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적합성 (입증자료 10, 11, 12, 13, 14)

- 우리 대학은 학교법인 서립학원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인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학의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4인은 총장이 전임교원으로 위촉함
- 교원인사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총장이 조직하는 위원 중 1인 이상은 여성 전임교원으로 구성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2021년 보직자 1명, 2022년 보직자 2명으로 보직자 비율이 50% 이내가 되도록 구성함
-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
-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간 중복비율은 50% 미만인 되도록 구성함
- 2016. 3. 1.부 시행된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에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 총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2021년에는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겹치되나, 2022. 1. 1.부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장을 교무처장이 아닌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장은 겹치지 않도록 개선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학년도 28건, 2022학년도 35건의 개최 실적이 있음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은 직원의 인사관리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충족(Y) : 50.0% 이상 b) 미충족(N) : 충족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붙임2) 정량지표 현황 양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학생정원 기준 2021학년도 60.4%, 2022학년도 59.6%으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50.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 | |
|--------------------------------|---|
| 세부평가요소 | (4) 대학은 직원의 인사관리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 b) 직원 인사관리 관련 위원회 활동 확인 ※ 직원 인사관리의 범위: 채용, 승진,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 등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법인서립학원 정관 제79조(임용) (제정 1991.1.14., 개정 2022.4.12.), 정관 pp.24 2. 직원인사규정 (제정 1987.3.1., 개정 2018.7.1.) 3. 계약직원 임용규정(제정 2011.5.1., 개정 2018.6.1.) 4. 계약직원 채용 기안문(2021, 2022학년도) 5. 업무분장표 6. 직원근무업적평가 실시 기안문(2021, 2022학년도) 7. 직원 승진임용 제청 기안문(2021학년도) 8. 직원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기안문(2021학년도) *정년퇴직 직원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9. 직원 인사발령 관련 문서(2021, 2022학년도) *전보 10. 직원인사위원회 개최 기안문(2021, 2022학년도) 11. 직원인사위원회 결과 보고(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준수 확인 - 우리 대학은 직원의 채용, 승진, 근무업적평가 등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 직원인사규정 제5조~제11조, 제13조(신규채용), 제14조~제18조(승진), 제20조(전보), 제21조~제25조(신분보장), 제12조(당연퇴직) 등을 마련하여 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업무 분장표를 마련하여 부서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입증자료 5) - 채용, 인사평가 등 관련자료 · (채용)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 전형을 기본으로 하며, 채용절차는 규정과 방침에 의거 채용계획 확정 및 이사장 승인 요청, 채용공고,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및 증빙서류징구, 최종합격자 결정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음, 최종합격자 결정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음 · (근무업적평가) 직원 근무업적평가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1학기, 2학기 영역별로는 근무실적영역, 직무수행능력영역, 직무수행태도영역, 학교발전기여도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6, 7, 8) · (승진) 직원승진은 직원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승진의 원칙, 승진임용의 방법, 승진소요 최저기간, 특별승진,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 직원의 전문성, 경력, 부서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를 배치하며 업무 효율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입증자료 9) b) 직원 인사관리 관련 위원회 활동 -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입증자료 10, 11) · 직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교무위원과 2인의 직원으로 한다는 직원인사위원회 규정을 구성하고 있음 · 2021학년도에는 직원 인사관리 관련 위원회 활동으로 직원 승진 제청건,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022학년도에는 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심의 하였음 |

6.1.2 역량 계발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전임교원 역량계발 관련 규정을 갖추고, 운영·평가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교원 역량계발 관련 규정 확인 b) 교원 역량계발 지원 실적 확인 c) 교원 역량계발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활용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의 역량개발 및 급여·복지에 관한 규정」(제정 2011.7.1., 개정 2020.3.1.), 제5조(교원 역량개발 정책) 2. 「학술회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정 2003.7.1., 2017.5.1.), 제3조(지원금 지급)~제4조(지원금 신청절차) 3. 국내외 학술회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 실적(2021, 2022) 4. 교원 교내·교외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2021, 2022)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교원 역량계발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 역량계발 촉진을 통해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원의 역량개발 및 급여·복지에 관한 규정」, 「학술회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입증자료 1, 2) - 우리 대학은 국내 외 연구·학술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학술회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b) 교원 역량계발 지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은 2021년 3,800천 원, 2022년 475천 원의 실적이 있음(입증자료 3) - 우리 대학은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교원의 역량 개발 및 급여·복지에 관한 규정 제5조(교원의 역량개발 정책)에 교원의 재능과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함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교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입증자료 4) - 교외 교원 단기연수 프로그램 효과 증대 및 교내 전파를 위해 교외 교육연수 참가자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내용을 세미나 형식으로 전달하는 발표회 형식의 내부 연수(전달 연수)를 진행함 - 교원 단기연수 프로그램(교내) 운영 실적은 2021학년도 123명, 2022학년도 388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음 - 교원 단기연수 프로그램(교외) 운영 실적은 2021학년도 42명, 2022학년도 31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음 c) 교원 역량계발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의 역량개발을 지원 후 그 성과에 대하여 매년 교수업적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 교수법, 교육참가의 경우 교수업적평가 교육영역에 반영하고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 매 학년도 강의평가 하위 20% 전임교원에게 강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강의평가 결과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여 전임교원 재임용, 승진임용 평가 시 활용하고 있음 |

| | |
|--------------------------------|---|
| 세부평가요소 | (2) 대학은 16주 이상의 연수 등 장기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충족: 16주 이상의 연구년(연수학기) 시행 기준 이행 b) 보완: 충족기준에는 미달이나 충족기준의 1/2 이상 이행 c) 미충족: 기준의 1/2 미만 이행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교수 국내 외 연수 겸 안식학기에 관한 규정」(제정 1994.9.1., 개정 2022.4.15.), 제1조(목적)~제9조(급여 및 보조금 지급 등) 2. 연구(안식)학기 운영 실적: 시행 기안문 등(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은 재직 중인 교원이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기능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학문의 심화와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교수 국내 외 연수 겸 안식학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6주 이상의 연구(안식)학기를 운영함 - 2022학년도 연구(안식)학기 대상자 선정 범위를 “본 대학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서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확대하여 제도를 보완함 - 연구(안식)학기 대상 교원은 연구(안식)학기 중에도 우리대학 교원 신분을 유지하며, 급여 및 보조금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이후 승진이나 재임용에 필요한 기간에 합산되어 어떠한 인사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우리 대학의 연구(안식)학기 최근 5개년 운영 실적은 2018학년도 1학기 1건(정○○), 2018학년도 2학기 2건(이○○, 김○○), 2019학년도 1학기 2건(박○○, 김○○), 2019학년도 2학기 2건(이○○, 문○○),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는 없으며 2022학년도 1건(김○○)의 실적이 있음 · 교수 국내 외 연수 겸 안식학기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안식학기 종료 후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해당 교원은 결과물을 제출함(논문 1부) - 우리 대학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산업체 현장연수 실적은 없음 |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은 직원의 직무역량 계발 관련 규정을 갖추고, 운영·평가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직원의 직무역량계발 관련 규정 확인 b) 직원의 직무역량계발 지원 실적 확인 c) 직무역량계발 지원에 대한 평가 및 활용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직원 복무규정(제정 1987.3.1., 개정 2020.8.1.) 2. 직원 역량계발규정(제정 2011.7.1., 개정 2014.9.1.) 3. 교육훈련 참여 관련 입증자료 (2021, 2022학년도) 4. 2021, 2022학년도 연수 프로그램 참여 관련 입증자료 추가 5. 연말정산 교육, 공공기관 일반대기환경, 수질환경 기술인 실무교육 등 지원 교육 관련 입증자료 추가(2021, 2022학년도) 6. 직원 여비교통비 예산집행 내역(2021, 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직원의 직무역량계발 관련 규정 - 우리 대학은 직원의 직무역량 계발 및 인성강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제도화하고 있음 - 직원 복무규정 제12조(출장 및 여비), 직원 역량계발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적·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b) 직원의 직무역량계발 지원 실적 (입증자료 3, 4, 5, 6) - 각 부서별로 교육훈련비를 책정하여 담당자별 협의회 주관 교육 및 직무관련 교육에 참석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 14건 6,606천 원, 2022학년도 29건 9,824천 원의 교육훈련 참여 실적이 있음 · 교직원 2021, 2022학년도 연수 프로그램(청탁금지법,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보안교육) 실시함 · 2021년도 청탁금지법은 461명 중 442명이 교육이수하였으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67명 중 265명이 교육 이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549명 중 530명이 교육 이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549명 중 53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 2022년도 청탁금지법은 391명이 교육이수하였으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46명이 교육 이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457명이 교육이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은 469명이 교육이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457명이 교육이수, 보안교육은 45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 기타 사항으로 직무수행능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교육, 공공기관 일반대기환경, 수질환경 기술인 실무교육 등 지원 교육에 대한 결과를 해당 직무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음 c) 직무역량계발 지원에 대한 평가 및 활용 - 직무역량계발 지원에 대한 평가 자료 · 직무역량계발 지원에 대한 평가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교육지원에 대한 기대효과, 기타(느낀 점)를 조사 실시함 |

6.1.3 연구

| | |
|-----------------------|--|
| 세부평가요소 | (1) 대학은 교수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지원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연구 활동 지원 관련 규정 및 준수 확인 b) 연구 활동 지원 실적 확인 c) 연구 활동 성과 평가 및 활용 확인 ※ 연구: 창작 및 기술개발 포함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교수업적평가규정」 (제정 2006.3.1., 개정 2019.3.1.), 제2장(업적평가) 2.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6.3.1., 개정 2022.10.7.), 제1장(총칙)~제5장(봉사영역) 3. 「자체연구비 지원 및 관리규정」 (제정 2011.7.1., 개정 2022.4.13.), 제1조(목적)~제12조(연구결과 보고 및 연구실적물 제출) 4. 「교수 국내 외 연수 겸 안식학기에 관한 규정」 (제정 1994.9.1., 개정 2022.4.15.), 제3조(대상인원)~제9조(급여 및 보조금 지급 등) 5. 「학술회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2003.7.1., 2017.5.1.), 제3조(지원금 지급)~제4조(지원금 신청절차) 6.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1.5.1., 개정 2022.8.30.), 제2조(적용범위)~제4조(업무) 7.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침(개정 2022.8.1.), pp. 8 8. 대학정보공시,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9. 2021학년도 교수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교수학습연구대회 부분), pp.2~5 10. 2022학년도 교수학습연구대회 결과보고 11. 교수학습연구대회 연구비 지원 지출내역(2021, 2022학년도) 12. 2021학년도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pp.7~16, pp.17~22, pp.27~30, 13. 2022학년도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14. 자체연구비 지원 현황(2021, 2022학년도) 15. 연구(안식)학기 운영 실적 시행 기안문 등(2022학년도)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연구 활동 지원 관련 규정 및 준수 -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은 대학 발전계획과 하기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입증자료 1, 2, 3, 4, 5, 6, 7) ·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원의 교육·산학협력·연구·봉사활동에 대한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수 개인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바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전임교원의 연구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의 업적관리·평가기준 수립하여 연구 활동 장려 · 자체연구비 지원 및 관리규정: 전임교원의 연구활동 및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수한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연구비 관리를 규정하기 위함 · 교수 국내 외 연수 겸 안식학기에 관한 규정: 전임교원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학문의 심화와 자기 계발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함 · 학술회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전임교원의 국내외 연구·학술회의의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 전임교원의 교수법 연구, 역량개발, 지원 등의 수행기능 명시 ·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침: 연구대회 대상, 절차, 선정, 성과지표에 대한 기능 명시 b) 연구 활동 지원 실적 (입증자료 8, 9, 10, 11, 12, 13, 14, 15) |

우리대학은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시간적, 재원적, 행정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 (시간적 지원) 교수의 연구활동 장려 및 연구몰입 여건 조성을 위하여 안식학기 제도를 운영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음
- (재원적 지원)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교내자체연구비 지원, 연구(안식)학기 지원금 지급, 학술대회 참가비 지급 등을 통하여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 활동을 장려함
 - 대학의 연구지표 향상 및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연구비 지원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자체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
- (행정적 지원) 교원의 연구활동지원은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원의 연구 역량개발 및 교수법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수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교수학습연구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참여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연구대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원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플립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연구대회에 출품함으로써 원격지원센터 프로그램과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함
 - 교육환경에 맞게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나 토론형식의 세미나 프로그램인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연구 및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함
- (지원실적) 2021학년도 교수연구활동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음
 - ① 연구비 지원
 - (대학정보공시기준) 연구비 수혜실적 72건(교내과제 66건 231,779천 원, 교외과제 6건 87,795천 원)
 - (연구지원실적) 교내 연구대회 연구비 지원 1,200천 원, 자체연구비 지원 102,657천 원 지원 실적이 있음
 - ② 교수 연구활동 지원
 - (학습역량강화)
 - 교수법특강 및 세미나: 5차 실시(온라인J-Campus, 오프라인 특강)
 - 연구대회: 3명 참여(연구대회 및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 교원학습공동체: 3팀(16명) 참여(학습동기유발 및 자유주제를 통한 세미나)
- (지원실적) 2022학년도 교수연구활동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음
 - ① 연구비 지원
 - (대학정보공시기준) 연구비 수혜실적 70건(교내과제 66건 102,630천 원, 교외과제 4건 104,134천 원)
 - (연구지원실적) 교내 연구대회 연구비 지원 1,400천 원, 자체연구비 지원 42,525천 원 지원 실적이 있음
 - ② 교수 연구활동 지원
 - (학습역량강화)
 - 교수법특강 및 세미나 : 6차 실시(온라인J-Campus, 오프라인 특강)
 - 연구대회: 5명 참여(연구대회 및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 교원학습공동체: 4팀(25명) 참여(학습동기유발 및 자유주제를 통한 세미나)
 - 연구(안식)학기 시행: 1명 선발(김○○), 대상학기 2022학년도 2학기(2022.8.29. ~ 2023.2.28.)
- c) 연구 활동 성과 평가 및 활용
 - 교원의 연구 업적을 재임용, 승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 임용 시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활용함
 -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점수를 재임용, 승진 등에 활용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의 장기발전 및 행정업무 혁신에 활용되도록 함

| | |
|--------------------------------|---|
| 세부평가요소 | (2) 교원의 연구실적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충족 : 평가기간 내 평균 연구실적(정보공시자료 기준) 0.2건 이상 또는 전임교원 연구실적 산정표(별첨 양식)에 의한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수 0.2건 이상인 경우 b) 보완 :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c) 미충족 : 보완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붙임2) 정량지표 현황 양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은 2021학년도 0.5건, 2022학년도 0.4건으로 전문대학기 관평가인증 기준인 0.2건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6.2.1 처우 및 복지

| | |
|-----------------------|--|
| 세부평가요소 | (1) 교원의 급여 수준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p><정량평가(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 또는 질적평가></p> <p>a) 충족(Y) : [정량평가] 평가기간 내 평균 30.0% 이상 또는 교직원 인건비 비율 평균 41.0%이상 [질적평가] 질적 평가 우수 또는 개선계획이 우수하면서 개선실적이 있는 경우</p> <p>b) 보완(C) :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개선실적 또는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p> <p>c) 미충족(N) : 보완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p>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붙임2) 정량지표 현황 양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p>– 우리대학의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은 2020회계연도 36.3%, 2021회계연도 42.7%로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30.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p> |

| | |
|--------------------------------|---|
| 세부평가요소 | (2) 직원의 급여 수준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p><정량평가(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 또는 질적평가></p> <p>a) 충족(Y) : [정량평가] 평가기간 내 평균 11.0% 이상 또는 교직원 인건비 비율 평균 41.0% 이상 [질적평가] 질적 평가 우수 또는 개선계획이 우수하면서 개선실적이 있는 경우</p> <p>b) 보완(C) :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개선실적 또는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p> <p>c) 미충족(N) : 보완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p>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붙임2) 정량지표 현황 양식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 우리대학의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은 2020회계연도 17.1%, 2021회계연도 20.6%로 전 문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인 11.0%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 |

| | |
|--------------------------------|--|
| 세부평가요소 | (3) 대학은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정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
| 주요 판단사항 (참고사항) | a) 교·직원의 복지 지원 관련 규정 및 공지 확인 b) 교·직원의 복지 지원 관련 실적 및 개선 노력 확인 |
| 충족여부 | 충족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입증자료 | 1. 교·직원 복지 지원 규정(제정 2001.1.1., 개정 2018.6.1.) 2. 관련 규정 공지 현황(홈페이지-> 공지사항->제규정공지) 3. 교·직원 복지제도 및 현황(교직원 장기근속 포상규정/교직원 정년퇴직자 포상규정) 4. 복리후생 지원 시 관련 문서 메일(장기근속포상/정년퇴직자포상) 5. 교·직원 복지지원 실적(2021, 2022학년도) 6. 기타 관련 입증자료-예산집행내역 |
| 인증심사 대학자체평가 현황 및 분석결과 | a) 교·직원의 복지 지원 관련 규정 및 공지 - 교·직원 복지 관련 규정 (입증자료 1) · 우리 대학은 교직원 복지지원을 위해 교직원 복지지원 규정에 제3조(복지지원 유형)에 의거 경조금, 자녀대학입학축하금 등을 위 3번의 규정 등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 - 관련 규정 공지 현황 (입증자료 2) · 복리후생 지원 시 관련 문서를 메일을 통해 공지하고 신청 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후 지급하고 있음 - 교·직원 복지제도 및 현황 (입증자료 3) · 상기 입증자료 '3. 교·직원 복지제도 및 현황'에 대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재정적 범위내에서 지원 및 포상을 하고 있음 b) 교·직원의 복지 지원 관련 실적 및 개선 노력 - 교·직원 복지지원 실적 (입증자료 4, 5, 6) · 교원 대상 복지제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의 경우 복지지원금(33,500천 원), 경조금(1,400천 원), 장기근속포상/정년퇴직자포상(76,233천 원), 명절휴가비/월동준비수당(294,618천 원), 자녀대학입학축하금(20,000천 원) · 2022년도의 경우 복지지원금(9,065천 원), 경조금(100천 원), 장기근속포상/정년퇴직자포상(17,000천 원), 명절휴가비/월동준비수당(256,117천 원), 자녀대학입학축하금(6,500천 원) · 직원 대상 복지제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의 경우 복지지원금(5,280천 원), 경조금(300천 원), 장기근속포상/정년퇴직자포상(22,552천 원), 명절휴가비/월동준비수당(175,170천 원), 자녀대학입학축하금(해당자 없음) · 2022년도의 경우 복지지원금(1,720천 원), 경조금(300천 원), 장기근속포상/정년퇴직자포상(500천 원), 명절휴가비/월동준비수당(166,628천 원), 자녀대학입학축하금(4,000천 원) |